

2024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안)

2024. 3.

한 국 장 학 재 단
초 중 등 장 학 부

목 차

I.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개요	1
II. 신규 장학생 선발	3
III. 장학생 계속지원 및 사후관리	76
IV. 장학금 지급 · 사용 및 모니터링	109
V. 장학금 반환 관리	124

2024년 신규장학생 선발 관련 주요 사항

구분		2023년	2024년
선발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3,000명 - (꿈 유형) 2,000명 - (SOS 유형) 1,0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3,000명 - (꿈 유형) 1,800명 - (다문화 유형) 200명 - (SOS 유형) 1,000명
선발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꿈 유형) '23. 4월~6월 (SOS 유형) - (1차) '23. 4월~5월 - (2차) '23. 8월~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꿈 유형) '24. 4월~6월 (다문화 유형) '24. 4월~6월 (SOS 유형) '24. 8월~9월
선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국내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 또는 긴급구난사유 해당 학생 - 청소년 지원 사업 취지에 따라 만 24세 이하로 나이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 동일)
추천 방식	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당 2명까지 추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 동일)
	다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당 추천인원 제한 없음 ※ 신청 시 나의 꿈 도전계획서 내 학교장 직인 필수(학교장 추천)
	SOS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당 추천인원 제한 없음 ※ 신청 시 SOS장학금 신청서 내 학교장 직인 필수(학교장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 동일)
성적 기준	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학생) 직전학년 평균 D등급 이상 (고등학생) 직전학년 평균 D등급(절대평가) 이상 또는 7등급(상대평가)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학생) 직전학년 평균 C등급 이상 (고등학생) 직전학년 평균 C등급(절대평가) 이상 또는 7등급(상대평가) 이내
	다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 설) 	
	SO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소 성적기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 동일)
학업계획서 (신규장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학년이 동일 문항의 학업계획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년 수준(중 1, 중 2~3, 고)에 따라 학업계획서 문항 차별화
장학금 카드사용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64개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숙박, OTT, 게임머니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78개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제외) 숙박, OTT, 게임머니 - (추가) 병원, 약국 등 의료 업종

I.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개요

1. 추진 목적 및 근거	1
2. `24년 사업추진 개요	1
3. 지원유형	1
4. 장학금 지원 금액	2
5. 지원기간	2
6.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	2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개요

1. 추진 목적 및 근거

□ 추진 목적

-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우수 중·고생을 발굴,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제도를 통해 교육의 희망사다리 기능 강화

□ 추진 근거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제28조(장학제도)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등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조(국가의 책무) 등

2. `24년도 사업추진 개요

□ (지원인원) '24년도 신규장학생*(3천 명) 및 계속장학생*(약 5천 명)

* '19~'23년에 선발된 장학생 중 `24년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자

3. 지원 유형

유형	선발인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꿈 장학금 (학교 추천 우수자)	1,800명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저소득층** 가정의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학생	매월 장학금 지급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다문화 장학금 (다문화가정 해당자)	200명	꿈 장학금 지원대상 중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학생	매월 장학금 지급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SOS 장학금 (긴급구난사유 해당자)	1,000명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준하는 긴급 위기 상황의 발생으로 학업 지속이 곤란한 학생	한시적(10개월) 장학금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학교에 재학 중인 만 24세 이하의 학생(상세 기준은 p.47 참조)

** 학교 추천일(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 잔여 예산 및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유형별 최종 선발 인원 변경 가능

4. 장학금 지원금액

- 유형 · 학제 기준에 따라 카드포인트 부여 방식으로 장학금 지급
 - (꿈·다문화 장학금) 학제별 차등 지원
 - 중학교 월 25만 원, 고등학교 월 35만 원, 대학교 월 45만 원
 - (SOS장학금) 월 30만 원 균등 지원(10개월 한시 지원)

5. 지원기간

- 꿈·다문화 장학금
 - 매년 계속장학생 정기 · 보완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장학생을 대상으로 진급 · 진학 시 연계 지원
 - 대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의 학제별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가능**
 - * (예시) 2년제 전문대 → 2년 지원, 4년제 → 4년 지원, 6년제 → 6년 지원
 - ** 초과 학기 및 정규 졸업 후 재입학, 대학원 등은 지원 불가(상세 기준은 p.87 참조)
- SOS장학금
 - 선발 후 총 10개월간 한시적 지원
 - 지원 기간 중 학업 중단 시에는 그다음 달부터 장학금 지원이 중단되며, 상급 학년(학교) 미진학 시에는 다음 연도 2월까지만 장학금 지원

6.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 복꿈성장멘토링(1:1멘토링) 및 복꿈나눔멘토링(대학 선배 장학생과의 멘토링)
 - 교사 등 교육 현장 전문가와의 1:1 멘토링 및 장학생 간 멘토링
- 복권기금 꿈사다리 페스티벌(장학증서수여식 및 멘토링 캠프)
 - 교육부 장관명의 장학증서 수여 및 잠재력 개발을 위한 캠프
- 진로역량 개발 컨설팅
 - 진로 · 진학 · 취업 · 창업 등 장학생의 성장상황에 맞춘 컨설팅 지원
- 심리안정 프로그램
 - 장학생의 고민, 심리적 불안감 등에 대한 전문가 심리상담 지원

II. 신규 장학생 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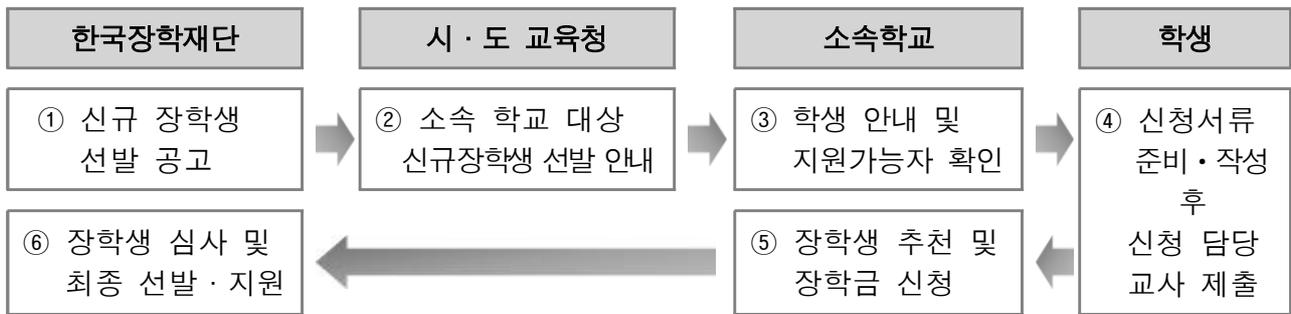
1. 신규 장학생 선발 업무 개요	3
2. 꿈 장학금 선발기준	6
3. 다문화 장학금 선발기준	18
4. SOS 장학금 선발기준	29
[별첨] 참고 및 신청 관련 서식	35

[참고1] 꿈사다리 장학금 신청 관련 중·고등학교 교과목 분류표	35
[참고2] 복꿈 성장 멘토링(1:1멘토링) 관련 사항	39
[참고3] 복지자격 서류 목록(전산확인 불가자용)	41
[참고4]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42
[참고5]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양식	43
[참고6] SOS 장학금 긴급 구난 사유 세부 기준	46
[참고7]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대상 학교 범위	47
[서식1] 신청인 기본 정보(온라인 입력)	48
[서식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학생용)	49
[서식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법정대리인 및 보호자용)	55
[서식4] [꿈장학금] 나의 꿈 도전 계획서(학업계획서) 표지	58
[서식5] [다문화장학금] 나의 꿈 도전 계획서(학업계획서) 표지 ..	59
[서식6~8] [꿈·다문화장학금] 나의 꿈 도전 계획서(학업계획서) .	60
[서식9] 멘토링 활동 계획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정보공개동의서(멘토용)	66
[서식10] [SOS장학금] SOS 장학금 신청서 표지	69
[서식11~13] [SOS장학금] SOS 장학금 신청서	70

II 신규 장학생 선발

1 신규 장학생 선발 업무 개요

1. 선발 체계



※ 한국장학재단은 17개 시·도 교육청에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안내 협조 요청

2. 선발 절차 및 일정

□ 선발절차

유형	장학금 신청	서류 심사	심층 평가	최종 선발
꿈	학교추천 (학교별 2인)	제출 서류 확인·점검, 및 최소 자격 요건 심사	‘나의 꿈 도전 계획서’ 평가	장학생 선발·관리 위원회 의결
다문화	학교추천 (학교별 인원 제한 없음)		‘나의 꿈 도전 계획서’ 평가	장학생 선발·관리 위원회 의결
SOS	학교추천 (학교별 인원 제한 없음)		‘SOS 장학금 신청서’ 평가	(위원회 생략)

□ 선발일정

구 분	꿈·다문화 장학금	SOS 장학금
선발공고	‘24. 3월 중	‘24. 8월 초
장학금 신청	‘24. 4. 1.~4. 26.	‘24. 8. 5.~ 8. 23.
서류심사	‘24. 5월 1주 ~ 5월 3주 ※서류제출 보완기간 1주 포함	‘24. 8월 4주 ~ 9월 1주 ※서류제출 보완기간 1주 포함
심층평가	‘24. 5월 4주 ~ 6월 3주	‘24. 9월 2주 ~ 9월 4주
최종선발	‘24. 6월 말	‘24. 9월 말
장학금 지급	‘24. 7월 초	‘24. 10월 초

※ 업무 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3. `24년 신규장학생 선발 주요 내용

구분	꿈 장학금	다문화 장학금	SOS 장학금	
선발인원	• 1,800명 ※ 사업 잔여 예산 및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유형별 최종 선발인원 변경 가능	• 200명	• 1,000명	
선발 자격	• (공통)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국내 중·고교 재학생(중1~고3) / 만 24세 이하			
	기본 요건	• 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아래 두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① 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지원대상자 ②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 긴급구난 사유 해당하는 학생으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교과	• (성적) C등급 이상 또는 7등급 이내	-	
	비교과	• (출결) 미인정 결석 10일 미만 • (봉사) 10시간 이상	-	
추천방식 및 추천인원	• (공통) 학교 추천 방식 • 학교당 최대 2명 추천	• 추천 인원 제한 없음		
제출 서류	신청 시	• 신청인 기본정보 • 신청인·보호자 동의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 포함,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1인 동의 필수	• 신청인 동의서	
	심층 평가 후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명의) • (수급자격 전산 조회 불가 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	-	
		• 나의 꿈 도전계획서	• SOS 장학금 신청서	
	• 직전 학년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 멘토링 활동 계획서 및 멘토 개인정보동의서 (학교장 직인 포함)	-	-	
심사 · 선발	서류 심사	•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신청 대상자 입력정보 확인(한국장학재단 실무진)		
	심층 평가	• ‘나의 꿈 도전계획서’ 기반 평가(꿈 평가단)	• ‘나의 꿈 도전계획서’ 기반 평가(다문화 평가단)	• ‘SOS장학금 신청서’ 기반 평가(SOS 평가단)
	최종 선발	• 장학생 선발·관리위원회 심의·의결		-

※ 본 장학사업은 복권기금을 통해 지원되며, 대내외 상황에 따라 지원수준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 정책 결정에 따라 계속 지원 장학생에 대한 자격 기준 요구 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학금 신청에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청구 시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장학금과 이자를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학금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작성요령

■ 지원자(이하 학생) 유의사항

1. 학생은 본인의 인적정보, 각종 동의서 및 서류(이하 서식) 등 기재사항을 스스로 작성하고, 본인 확인 서명을 한 후 관련 자료를 멘토(담당교사)에게 제출합니다.
2. [신청서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공지사항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글자크기 11, 줄 간격 160%(조정 가능)) 또는 자필로 작성하며, 자필로 작성할 경우 반드시 흑색 또는 청색 필기도구(연필 제외)를 사용하십시오.
3. 멘토링 활동계획서 및 멘토 개인정보동의서는 멘토에게 작성을 의뢰하십시오.

< 만 14세 미만 학생의 개인정보제공 동의 방법 >

□ 학생이 신청일 기준 만 14세 미만일 경우 [서식2]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학생용) 작성 시 법정대리인 1인 동의 필수

○ 법정대리인의 범위: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관련 법령에 따른 후견인 등

구분	법정대리인 동의 방법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양부모 가정	부모 중 1인 서명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한부모 가정	(이혼) 친권 보유 부모 1인 서명 ※ 공동친권의 경우 부모 2인 서명 필요 (사망) 생존한 부모 1인 서명	• 기본증명서(상세)(학생 본인 기준)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보호시설	미성년후견인 지정 후 보호시설의 장 서명 ※ 국가·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미성년후견인 지정절차 불필요	• 기본증명서(특정-친권·미성년후견)(학생 본인 기준)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본인 기준) • 재원증명서 및 시설신고증
기타	별도 지정된 후견인의 서명 (학생 본인의 기본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자)	• 기본증명서(특정-친권·미성년후견)(학생 본인 기준)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본인 기준)

※ 법정대리인 동의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장학금 선발 및 카드 발급이 불가합니다.

※ 후견인으로 별도 지정되지 않은 조손가정의 조부 또는 조모는 법정대리인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호시설 입소 또는 조손가정의 학생이지만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 또는 모가 기재되어 있으며 후견인이 별도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친권 보유자인 부 또는 모 서명이 필요합니다.(추후 카드 발급을 위해 법정대리인 은행 내방 및 장학금 자격 유지를 위한 인증서 발급 동의 절차 필요)

※ 모든 서류는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며,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신청 담당교사(멘토) 유의사항

★ 멘토는 소속학교 교사 등 교직원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멘토는 장학금 신청업무와 계속 장학생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1. 학생이 기재사항 및 본인 확인서약란을 빠짐없이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2. 담당교사(멘토)는 기재사항을 확인하시고 학자금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하여 주십시오.
3. 온라인 등록 시 성적, 봉사활동 실적, 출결 정보는 지원자에 대한 적격기준 판단 자료가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꿈·다문화 장학금 해당
4. 멘토링 활동 계획서는 학교장 직인 날인 후 제출해 주십시오. ☞ 꿈·다문화 장학금 해당
5. 학교생활기록부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해 주십시오. ☞ 꿈·다문화 장학금 해당

※ 동 자료는 장학생 선발 후 장학생 지도 자료로 활용되며, 비공개 문서로 관리됩니다.

2 꿈 장학금 선발기준

1. 추천 자격요건

□ 신규 선발 자격요건: ① ~ 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

①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으로 만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학교(상세 기준은 [참고기](p.47) 참조)

② (소득 기준) 학교 추천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

* 가구원(본인, 부모, 배우자) 중 1인 이상 수급자격 보유(조손가정의 경우 학생 및 조부모 중 1인 이상 수급자격 보유 시 인정)

* 수급자격 전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명자료 제출 필요(대상자 개별 통보 예정)

③ (교과 기준) 직전학년 성적에 대한 최소 자격요건 충족

대상	최소 교과기준	성적 산출 기준
중1	직전 학년 최소기준 없음	-
중2~고1	직전 학년 평균 C등급 이상	직전 학년(학기 구분 없음) 이수 과목 중 총 6개 과목*을 선택하여 성적 입력하고, 그 평균이 C등급 이상 *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역사 포함), 도덕, 기술·가정, 정보 중에서 과목 선택 ※ 단, 직전 학년이 자유학년(기)제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학년(기)가 PASS일 경우 인정(전 과목 PASS)
고2~고3	직전 학년 평균 7등급 이내 또는 C등급 이상	직전 학년(학기 구분 없음)의 7등급 이내 또는 C등급* 이상인 12단위(학점) 이상 과목**을 선택하여 성적 입력(최대 12과목까지 입력 가능) * 3단계 성취도(A~C) 과목은 B등급 이상 **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한국사, 사회, 제2외국어, 과학계열(전문교과I), 외국어계열(전문교과I) 전문교과II 중에서 과목 선택 ※ 석차등급과 성취도가 모두 산출되는 과목은 석차등급을 기준으로 성적 입력

④ (비교과 기준) 직전학년 출결·봉사활동에 대한 최소 자격요건 충족

대상	출결	봉사
공통	직전 학년 미인정 결석 10일 미만 ※ 「미인정 지각·조퇴·결과」는 합산 3회당 결석 1일로 간주함	직전 학년 봉사활동 실적 10시간 이상

2. 학제 · 학년 · 지역별 선발 인원

□ 총 1,800명 선발

- 학제·학년(중 1, 중 2~3, 고)·지역별 선발 인원은 학제·학년·지역별 신청 비율에 따라 배정 예정

※ 사업 잔여 예산 및 타 유형 선발 결과에 따라 최종 선발 인원 변동 가능

3. 선발 절차

1단계 학교추천	2단계 서류심사	3단계 심층평가	4단계 최종선발
학교별 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 추천 (학교별 최대 2인)	제출서류 확인·점검, 최소 자격요건 심사 (소득·성적·출결·봉사)	「나의 꿈 도전계획서」 평가 (꿈 평가단)	최종 장학생 확정 (장학생 선발·관리위원회)
'24. 4. 1. 9:00 ~ 4. 26. 18:00	'24. 5월 1주~5월 3주	'24. 5월 4주~6월 3주	'24. 6월 말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가. 1단계 학교 추천

- ① (대상자 확인 및 학교 추천) 각 학교는 추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생을 교내 장학생 추천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최대 2인**까지 각 학교별 추천 학생으로 선정

* 학교별 장학생 추천을 위해 기 구성된 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심의 가능

** 특수학교, 대안학교 등에서 중·고 통합으로 학제가 운영되는 학교의 경우 중·고 각 학제별 최대 2인까지 추천 가능

- (추천 기준) 추천 학생의 평소 학교생활 태도 등을 바탕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 및 인성, 장학금 지원 필요성(진로, 학업계획의 구체성, 가치관, 실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천

〈 추천 시 유의사항 〉

- (사회적 물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은 추천에서 제외
 - * ①정학·퇴학 등 징계받은 자, ②형사처벌(처분)을 받은 자, ③「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6호, 제8~9호에 해당하는 자
- (이중수혜) ①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직접 집행·관리하는 ②저소득층 대상 ③학업장려비성의 장학금을 ④계속 수혜 중인 학생의 경우
 - ⇒ ① + ② + ③ + ④의 요건을 모두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추천이 불가하나, 최종 선발일 이후 재단이 통지한 기한 내 타 장학금 포기확인서(해당기관 발급)를 제출할 경우 인정(이중수혜로 판단하는 기준일은 최종 선발일을 기준으로 함)

- ①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 ②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으로 특정되는 경우이며, 보편적 복지 성격은 제외
- ③ 단순 생활비성 장학금(식비, 기숙사, 생활비 무상보조 등),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의 경우 이중수혜 판단 대상에서 제외
- ④ 단순 1회성 장학금이 아닌 특정 기간 정기적으로 지속 지원(2회 이상)받는 장학금을 수혜받는 경우를 의미

- (중복신청) 당해연도 꿈·다문화 장학금 간 중복신청 불가
 - ※ 단, `24년 이전 SOS장학생으로 선발된 이력이 있는 경우 꿈·다문화 장학금으로 신청 가능

- (추천 결과 통지) 학교는 추천 학생에게 추천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멘토 선정 및 신청서류 작성·준비 방법 등을 안내

① 추천 학생의 소속 학교는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원할 수 있는 멘토가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멘토 자격 및 역할) 멘토는 소속 학교에 재직하는 교사 등 교직원을 원칙으로 하며, 신규 장학생 신청 시 신청 교사 역할을 병행

- (멘토 지정) 신청학생과 상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멘토링 지원이 가능한 멘토 지정
 - 담임 또는 상담교사, 교육복지사 등 장학생의 성장 지도가 가능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멘토로 지정(학생의 소속 학교 구성원 지정을 원칙으로 함)

※ 상세 내용은 참고2(복꿈 성장 멘토링(1:1멘토링) 관련 사항) 참조

② 장학금을 추천받은 학생은 소속 학교를 통해 멘토를 안내받은 경우, 원활한 장학금 신청 및 멘토링 진행을 위해 반드시 정중한 태도로 멘토에게 장학금 신청 사유 및 기본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함

▪ 복권기금 꿈사다리 성장 멘토링(1:1 멘토링)

- 「복권기금 꿈 사다리 성장 멘토링」을 통해 장학생의 자존감 향상, 대인관계 증진, 학업 상담 및 진로 탐색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에게 정서적 지원 수행
- 멘토와 장학생은 학기별 2회, 연간 4회 이상 멘토링 활동을 필수 수행 필요
- 계속장학생 정기심사 시 멘토링 활동결과보고서 및 나의 성장기록 제출 필수

▪ 장학금 신청 및 기본 정보 제공

-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후 계속장학생 의무 참여 및 멘토링 활동지원을 위하여 멘토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함

② (장학금 신청) 추천 학생의 기본정보 입력 및 필수서류 제출

○ (신청서류 제출: 학생 → 장학금 신청 교직원(멘토)) 학교의 추천을 받은 학생은 신청서류(1~6)를 작성·준비하여 멘토에게 제출

* 만 14세 미만 학생은 학생 개인정보동의서[서식2]에 법정대리인 1인 동의 필요

* 신청 학년별(중1, 중2~3, 고) 나의 꿈 도전계획서 서식[서식6~8]이 다름에 유의

○ (온라인 신청: 장학금 신청 교직원(멘토) →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https://eduman.kosaf.go.kr>)에서 학생 기본정보 입력 및 신청서류(2~6번) 업로드

〈 꿈 장학금 제출서류(신청·추가 서류) 목록 〉

구분	제출 서류		세부 내용	비고	
신청시 제출 (신청서류)	1	신청인 기본정보	학생 ※ 학생이 작성한 내용을 멘토가 시스템에 입력하는 사항으로 제출 불필요	서식1	
	2	가족관계증명서	법정 대리인 (부모)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서	행정 복지 센터
	3	〈학생〉 개인정보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	학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학생용)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1인 서명 필수	서식2
	4	〈보호자〉 개인정보동의서 및 학부모 동의서	법정 대리인 (부모)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및 학부모 동의서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용)	서식3
	5	나의 꿈 도전계획서 표지(꿈)	학생	학생 기본정보 및 유의사항 확인 등	서식4
	6	나의 꿈 도전계획서	학생	학업 및 진로 희망에 대한 구체적 계획	서식6~8
심층 평가 통과 후 제출* (추가서류)	7	(필요 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법정 차상위 대상자 증명서 (택 1)	기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행정 복지 센터
			한부모	한부모가족 증명서	
			법정 차상위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8	멘토링 활동 계획서 및 멘토개인정보동의서	멘토	멘토가 직접 작성한 멘토링 활동 계획 제출 ※ 학교장 직인 포함	서식9	
9	학교생활기록부	학생	직전 학년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 원본대조필 포함	소속 학교	

※ 모든 서류는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며,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추가서류 제출은 심층평가 통과자에 한하며, 해당 대상자에게는 추가서류 제출을 별도 안내할 예정(반드시 기한 내 추가서류 제출 필요)

○ (신청기간) '24. 4. 1.(월) 9:00 ~ '24. 4. 26.(금) 18:00까지

✓ 신청 시 유의사항 ✓

※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기한 엄수)

※ 서류 미제출, 서류 누락 등은 심사에서 제외되며 온라인 신청 완료 후 작성 내용 및 파일 제출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마감 임박 시 시스템 접속 과다로 통신 장애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자금지원시스템에서 장학금 신청 방법

① 사용자 등록 신청 (장학금 신청 교직원(멘토)→재단)

▪ (EPKI 보유자) 학자금지원시스템 사용자 등록 및 권한 신청



- ① 학자금지원시스템 접속(<https://eduman.kosaf.go.kr>)
- ② 사용자 등록 및 신청 클릭 → 개인정보 기입 후 권한 신청
- ③ 입력된 정보 확인 후, 재단 담당자는 신청 권한 승인
 - ※ 학교명, 권한 분류 등을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 요망
 - ※ 신청시스템 접속 및 사용 매뉴얼 세부내용은 별도 안내

[학자금지원시스템 화면]

▪ (EPKI 미보유자) 인증서 발급 후 학자금지원시스템에서 사용자등록 및 권한신청

- ※ (인증서 발급방법)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https://www.epki.go.kr>)
→ 인증서발급/관리 → 신청 절차 안내
- ※ (권한신청) 권한 신청에서 재단 담당자 승인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행정전자서명인증 또는 권한 승인 절차 사전 준비 필요

② 신청서류 준비 (학생 → 장학금 신청 교직원(멘토))

- 신청 학생은 장학금 신청서류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학교 담당 교사에게 신청서류 제출 및 기재사항 점검

신청
학생
제출서류

- ① 신청인 기본정보(온라인 입력사항)
- ② 가족관계증명서
- ③ 학생개인정보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
- ④ 보호자 개인정보동의서 및 학부모 동의서
- ⑤ 나의 꿈 도전계획서 표지(꿈)
- ⑥ 나의 꿈 도전계획서
 - ※ 저소득가정의 전산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공고일부터 추천일 사이에 발급된 수급 자격 관련 서류 별도 제출 필요(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③ 학자금지원시스템 정보 입력·서류 제출 (장학금 신청 교직원(멘토)→재단)

- 장학금 신청 교직원(멘토)은 학생 신청 기본정보 등을 입력하고 학생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업로드
 - ① 학자금지원시스템 접속 후 로그인(①에서 권한 승인 받은 경우에만 로그인 가능)
 - ② 하단의 접속경로를 따라 신청정보 입력 및 서류 제출(세부내용 별도 안내)

학자금지원시스템 접속경로 ▶ 장학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 장학금 신청관리 > '2024년 1학기 1회차' > 신규 선택 > 꿈 장학금 유형 선택 후 확인 > 신청서 작성

나. 2단계 서류 심사

1] 제출서류 확인

- ① **신청자 학년 정보**(중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 ② **만 14세 미만 신청자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③ **필수 신청서류 5종*** 제출 유무 및 ④ **필수 기입사항**(서명 등) 점검 등

* (필수신청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학생 개인정보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 보호자 개인정보동의서 및 학부모 동의서, 나의 꿈 도전계획서 표지(꿈), 나의 꿈 도전계획서

2] 저소득자격 확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 정보를 연계·활용하여 신청 학생 가정의 저소득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 ① 신청자의 수급자격 유무 관련 연계정보 요청(신청일자(D) 기준)
- ② 관련 연계정보 익일(D+1) 수신
- ③ 대상자별 수급자격 충족 여부 확인

※ 수급자격 미확인 신청자는 수급자격 증빙서류 별도 제출 안내

3] 교과 및 비교과 요건 확인

- **직전 학년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의 영역별 최소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학자금지원시스템 입력사항을 확인하며, 심층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받아 신청 시 기재 사항과 일치 여부 최종 확인

< 교과 영역 최소 자격 기준 >

대상	최소 교과기준	성적 산출 기준
중1	직전 학년 최소기준 없음	-
중2~고1	직전 학년 평균 C등급 이상	직전 학년(학기 구분 없음) 이수 과목 중 총 6개 과목*을 선택하여 성적 입력하고, 그 평균이 C등급 이상 *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역사 포함), 도덕, 기술·가정, 정보 중에서 과목 선택 ※ 단, 직전 학년이 자유학년(기)제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학년(기)가 PASS일 경우 인정(전 과목 PASS)
고2~고3	직전 학년 평균 7등급 이내 또는 C등급 이상	직전 학년(학기 구분 없음)의 7등급 이내 또는 C등급* 이상인 12단위(학점) 이상 과목**을 선택하여 성적 입력(최대 12과목까지 입력 가능) * 3단계 성취도(A~C) 과목은 B등급 이상 **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한국사, 사회, 제2외국어, 과학계열(전문교과I), 외국어계열(전문교과I) 전문교과II 중에서 과목 선택 ※ 석차등급과 성취도가 모두 산출되는 과목은 석차등급을 기준으로 성적 입력

< 비교과 영역 최소 자격 기준 >

대상	출결	봉사
공통	직전 학년 미인정 결석 10일 미만 ※ 「미인정지각·조퇴·결과」는 합산 3회당 결석 1일로 간주함	직전 학년 봉사활동 실적 10시간 이상

< 교과·비교과 최소 자격 기준 예시 >

□ 교과 기준

- (중학교 1학년) 직전 학년(초등학교 6학년) 최소 교과 기준 없음 → 성적 미입력
-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1학년) 직전 학년(학기 구분 없음) 이수과목 중 6개 과목*을 선택하여 성적 입력하고, 그 평균이 C등급 이상
 - *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역사 포함), 도덕, 기술·가정, 정보 중에서 과목 선택
 - * 직전학년 자유학년제 적용 시 1학기 3과목 P, 2학기 3과목 P를 입력하고, 자유학기제 적용 시 자유학기제 적용학기 3과목 P, 자유학기제 미적용 학기 3과목 일반성적 입력

< (예) 현재 중학교 2학년(직전학년이 중학교 1학년)인 경우 성적 입력 >

	학년	학기	교과	과목	등급	이수단위
1	1	1	국어	국어	A	-
2	1	1	영어	영어	B	-
3	1	1	사회	사회	C	-
4	1	2	수학	수학	P	-
5	1	2	과학	과학	P	-
6	1	2	한국사	한국사	P	-

☞ 학자금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입력 시 평균 성적 B로 자동 계산됨

☞ 자유학기 성적은 평균계산 시 제외 및 통과(Pass)여부만 확인

- (고등학교 2~3학년) 직전 학년(학기 구분 없음)의 C등급* 또는 7등급 이내인 12단위(학점) 이상 과목**을 선택하여 성적 입력(최대 12과목까지 입력 가능)
 - * 3단계 성취도(A~C) 과목은 B등급 이상
 - **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한국사, 사회, 제2외국어, 과학계열(전문교과 I), 외국어계열(전문교과 I) 전문교과 II 중에서 과목 선택
 - ※ 석차등급과 성취도가 모두 산출되는 과목은 석차등급을 기준으로 성적 입력

< (예) 현재 고등학교 3학년(직전학년이 고등학교 2학년) 성적 입력 >

학년	학기	교과	과목	등급	이수단위
2	1	국어	국어	7	4
2	1	영어	영어	6	4
2	2	사회	사회	5	4

☞ 학자금지원시스템에 온라인 입력 시 전체 이수 단위 12단위로 자동 계산됨

□ 비교과(출결)기준: 결석 합계 10일 미만 → 학자금지원시스템에서 입력 시 자동 계산

구분	결석	지각	조퇴	결과	결석일수 합계
미인정 일수	1	4	2	5	4

☞ 미인정 지각·조퇴·결과 3회당 1일 결석으로 계산하고 결석일수와 합산하여 결석일수 합계 계산

다. 3단계 심층 평가

① 꿈 평가단 구성

- (구성) 평가 그룹별 총 5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
 - 서류 심사 및 면접 등 관련 분야의 평가 경험이 있는 전문가* 위주로 17개 각 시·도 교육청 등의 추천을 통해 평가위원 구성
 - * 복지·인재개발 전문가, 입학사정관, 교원, 장학사 등 교육·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 (절차) 각 시·도 교육청 등으로 평가위원 추천 요청 → 추천 명단 회신 → 신청학생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평가위원으로 평가위원 구성*
 - * 추천명단으로 구성한 평가위원 Pool에 무작위 순위를 부여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평가위원으로 선정

② 평가 내용 및 방법

- (평가내용) 「나의 꿈 도전계획서(꿈)」에 기술된 학생의 역량, 잠재력 및 발전 가능성,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문항 총 3개, 세부평가항목 총 8개(총 100점 만점)
- (평가방법) 평가그룹별 5인 1조로 구성하고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3인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학제·학년·지역별 배정 인원 범위 내 고득점자순으로 순위 부여
 -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정
- (심층평가 통과자 선정) 한국장학재단은 심층평가 결과에 따라 학제·학년·지역별 배정인원 내 고득점자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심층평가 통과자로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평가항목 중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심층평가 통과자 결정*
 - * 단,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 순위자 발생 시 학제·학년·지역별 인원 등을 고려하여 장학생 선발·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꿈 장학금) 나의 꿈 도전계획서 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 〉

구분		세부내용
① 평가조 구성		학년별 · 학제별 능력 편차를 고려하여 중1 · 중2~3 · 고등으로 구분
② 평가방식		총 5인의 각 평가위원별 총점(100점 만점) 중 최고 · 최저점 제외한 나머지 3인의 점수를 산술평균(절사평균 방식)
③ 평가문항 (배점)		1) 발전가능성 및 향후 계획(30점) 2) 배려, 협력 등 인성 경험을 통한 긍정적 변화와 느낀점(30점) 3) 장학금 활용 계획(40점)
④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문항1 (30점)	가. 목표,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한 노력의 진정성(10점)
		나. 목표,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한 과정의 타당성(10점)
		다. 목표,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한 지속가능성(10점)
	문항2 (30점)	가. 인성 활동을 통한 생활의 긍정적 변화(10점)
		나. 학습 · 경험과 인성 요소의 부합성(10점)
		다. 경험의 진정성(10점)
	문항3 (40점)	가. 장학금 신청의 진정성(20점)
		나. 장학금 활용 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구체성(20점)
	⑤ 동점자 처리기준	

※ 그 외 심층평가 관련 상세내용은 별도 심사계획에 따름

③ 심층 평가 통과 후 추가서류 제출

- (한국장학재단 → 학생, 멘토) 재단이 심층평가 통과자(학생) 및 멘토에게 추가서류 제출 관련 별도 안내
- (학생, 멘토) 추가서류 2종(①멘토링활동계획서 및 멘토개인정보동의서, ②생활기록부) 준비
- (멘토→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에 추가서류 (스캔파일) 2종 업로드

< 심층 평가 통과 후 제출서류 >

구분	추가서류	세부내용		비고
①	멘토링 활동 계획서 및 멘토개인정보동의서	멘토 작성	· 멘토링 활동 계획서: 멘토가 직접 작성 및 서명하고, 장학생 확인서명과 소속학교장 직인(필수)을 받아 제출 · 멘토개인정보동의서: 멘토 본인 동의·서명	서식9
②	학교생활기록부	학생 또는 멘토 발급	직전학년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제출 ※ 원본대조필 포함 필수	소속 학교 및 정부24 (온라인)

< 심층평가 통과 후 추가서류(2종)의 재단시스템 제출 경로 >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https://eduman.kosaf.go.kr>) 접속
- 장학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 장학금 신청관리 → 추가서류 제출 → 년도/학기/회차&상품유형: **2024년/1학기/1회차&꿈 장학금** 선택 후 조회 → 제출대상 여부 확인 →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제출' 버튼 클릭

- (유의사항) 한국장학재단이 통지한 기한 내 추가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후순위자에게 선발 기회 부여
 - 서류 제출 대상 학생 및 장학금 신청 교직원(멘토)은 재단과의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내용 누락* 및 서류 미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제출
 - * 날짜, 성명, 자필서명, 학교장 직인, 원본대조필 누락 등의 사유 발생 시 최종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음

라. 4단계 최종 선발

① 장학생 최종 선발 심의

○ (심의 주체) 장학생 선발·관리위원회

< 장학생 선발·관리위원회 >

- (구성) 교육·장학 등 관련 분야의 내·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총 7인 내외
 - (기능) 장학생 최종 선발 심의·의결 및 제도개선 사항 논의 등
 - (방법) 제적 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 세부사항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장학생 선발·관리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름

○ (선발방법) 17개 지역의 학제·학년별 배정 인원 범위 내에서 심층 평가 고득점자순으로 순위를 부여하며, 추가 서류 제출 결과를 반영하여 장학생 선발·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장학생 심의·의결

< 최종 선발인원 결원 발생 시 >

최종 선발일 이후 최초 장학금 지급일 전까지 선발인원 결원 발생 시, 동일 지역 내 후순위자를 우선 선발하되, 후순위자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타 지역의 후보자를 추가 선발할 수 있음

※ 단,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최종 선발자가 타 기관 장학금을 수혜하고 있는 경우*, 장학금 포기확인서(해당 기관 발급)를 한국장학재단이 통지한 추가 서류 제출 기한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장학생 이중 수혜 기준 p.8 참고

② (선발결과 통보) 장학생 최종 선정 결과 안내

○ 장학생 선발·관리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라 최종 선발된 장학생에게 선정 결과 및 장학금 지원 관련 사항 개별 통보 예정

※ 학자금지원시스템(멘토) 또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결과 개별 조회

3 다문화 장학금 선발기준

1. 추천 자격요건

□ 신규 선발 자격요건: ① ~ 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

①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으로 만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학생으로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학교(상세 기준은 [참고7](p.47) 참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② (소득 기준) 학교 추천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

* 가구원(본인, 부모, 배우자) 중 1인 이상 수급자격 보유(조손가정의 경우 학생 및 조부모 중 1인 이상 수급자격 보유 시 인정)

* 수급자격 전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명자료 제출 필요(대상자 개별 통보 예정)

③ (교과 기준) 직전학년 성적에 대한 최소 자격요건 충족

대상	최소 교과기준	성적 산출 기준
중1	직전 학년 최소기준 없음	-
중2~고1	직전 학년 평균 C등급 이상	직전 학년(학기 구분 없음) 이수 과목 중 총 6개 과목*을 선택하여 성적 입력하고, 그 평균이 C등급 이상 *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역사 포함), 도덕, 기술·가정, 정보 중에서 과목 선택 ※ 단, 직전 학년이 자유학년(기)제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학년(기)가 PASS일 경우 인정(전 과목 PASS)
고2~고3	직전 학년 평균 7등급 이내 또는 C등급 이상	직전 학년(학기 구분 없음)의 7등급 이내 또는 C등급* 이상인 12단위(학점) 이상 과목**을 선택하여 성적 입력(최대 12과목까지 입력 가능) * 3단계 성취도(A~C) 과목은 B등급 이상 **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한국사, 사회, 제2외국어, 과학계열(전문교과I), 외국어계열(전문교과I) 전문교과II 중에서 과목 선택 ※ 석차등급과 성취도가 모두 산출되는 과목은 석차등급을 기준으로 성적 입력

④ (비교과 기준) 직전학년 출결·봉사활동에 대한 최소 자격요건 충족

대상	출결	봉사
공통	직전 학년 미인정 결석 10일 미만 ※ 「미인정 지각·조퇴·결과」는 합산 3회당 결석 1일로 간주함	직전 학년 봉사활동 실적 10시간 이상

2. 학제 · 학년별 선발 인원

□ 총 200명 선발

- 학제·학년별 선발(중 1, 중 2~3, 고) 인원은 학제·학년별 신청 비율에 따라 배정 예정

※ 사업 잔여 예산 및 타 유형 선발 결과에 따라 최종 선발 인원 변동 가능

3. 선발 절차

1단계 학교추천	2단계 서류심사	3단계 심층평가	4단계 최종선발
학교별 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 추천 (학교별 신청 인원 제한 없음)	제출서류 확인·점검, 최소 자격요건 심사 (소득·성적·출결·봉사)	「나의 꿈 도전계획서」 평가 (다문화 평가단)	최종 장학생 확정 (장학생 선발·관리위원회)
'24. 4. 1. 9:00 ~ 4. 26. 18:00	'24. 5월 1주~5월 3주	'24. 5월 4주~6월 3주	'24. 6월 말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가. 1단계 학교 추천

- ① (대상자 확인 및 학교 추천) 각 학교는 추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생을 교내 장학생 추천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학교별 신청 인원 제한 없이 장학생 추천 가능

* 학교별 장학생 추천을 위해 기 구성된 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심의 가능

- (추천 기준) 추천 학생의 평소 학교생활 태도 등을 바탕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 및 인성, 장학금 지원 필요성(진로, 학업계획의 구체성, 가치관, 실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천

- 학생 추천(신청) 시 다문화가정임을 증빙하기 위한 별도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다문화가정 여부는 소속 학교에서 추천한 내용으로 인정(단, 나의 꿈 도전계획서 표지(다문화) 내 소속 학교장 추천 및 직인 필수)

* (예시) 외국인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등

〈 추천 시 유의사항 〉

- (사회적 물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은 추천에서 제외
 - * ①정학·퇴학 등 징계받은 자, ②형사처벌(처분)을 받은 자, ③「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6호, 제8~9호에 해당하는 자
- (이중수혜) ①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직접 집행·관리하는 ②저소득층 대상 ③학업장려비성의 장학금을 ④계속 수혜 중인 학생의 경우
 - ⇒ ① + ② + ③ + ④의 요건을 모두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추천이 불가하나, 최종 선발일 이후 재단이 통지한 기한 내 타 장학금 포기확인서(해당기관 발급)를 제출할 경우 인정(이중수혜로 판단하는 기준일은 최종 선발일을 기준으로 함)

- ①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 ②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으로 특정되는 경우이며, 보편적 복지 성격은 제외
- ③ 단순 생활비성 장학금(식비, 기숙사, 생활비 무상보조 등),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의 경우 이중수혜 판단 대상에서 제외
- ④ 단순 1회성 장학금이 아닌 특정 기간 정기적으로 지속 지원(2회 이상)받는 장학금을 수혜받는 경우를 의미

- (중복신청) 당해연도 꿈·다문화 장학금 간 중복신청 불가
 - ※ 단, `24년 이전 SOS장학생으로 선발된 이력이 있는 경우 꿈·다문화 장학금으로 신청 가능

- (추천 결과 통지) 학교는 추천 학생에게 추천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멘토 선정 및 신청서류 작성·준비 방법 등을 안내

① 추천 학생의 소속 학교는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원할 수 있는 멘토가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멘토 자격 및 역할) 멘토는 소속 학교에 재직하는 교사 등 교직원을 원칙으로 하며, 신규 장학생 신청 시 신청 교사 역할을 병행

- (멘토 지정) 신청학생과 상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멘토링 지원이 가능한 멘토 지정
 - 담임 또는 상담교사, 교육복지사 등 장학생의 성장 지도가 가능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멘토로 지정(학생의 소속 학교 구성원 지정을 원칙으로 함)

※ 상세 내용은 참고2(복꿈 성장 멘토링(1:1멘토링) 관련 사항) 참조

② 장학금을 추천받은 학생은 소속 학교를 통해 멘토를 안내받은 경우, 원활한 장학금 신청 및 멘토링 진행을 위해 반드시 정중한 태도로 멘토에게 장학금 신청 사유 및 기본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함

▪ 복권기금 꿈사다리 성장 멘토링(1:1 멘토링)

- 「복권기금 꿈 사다리 성장 멘토링」을 통해 장학생의 자존감 향상, 대인관계 증진, 학업 상담 및 진로 탐색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에게 정서적 지원 수행
- 멘토와 장학생은 학기별 2회, 연간 4회 이상 멘토링 활동을 필수 수행 필요
- 계속장학생 정기심사 시 멘토링 활동결과보고서 및 나의 성장기록 제출 필수

▪ 장학금 신청 및 기본 정보 제공

-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후 계속장학생 의무 참여 및 멘토링 활동지원을 위하여 멘토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함

② (장학금 신청) 추천 학생의 기본정보 입력 및 필수서류 제출

○ (신청서류 제출: 학생 → 장학금 신청 교직원(멘토)) 학교의 추천을 받은 학생은 신청서류(1~6번)*를 작성·준비하여 멘토에게 제출

* 만 14세 미만 학생은 학생 개인정보동의서[서식2]에 법정대리인 1인 동의 필요

* 신청 학년별(중1, 중2~3, 고) 나의 꿈 도전계획서 서식[서식6~8]이 다름에 유의

○ (온라인 신청: 장학금 신청 교직원(멘토) →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https://eduman.kosaf.go.kr>)에서 학생 기본정보 입력 및 신청서류(2~6번) 업로드

〈 다문화 장학금 제출서류(신청·추가 서류) 목록 〉

구분	제출 서류	세부 내용	비고		
신청서 제출 (신청서류)	1	신청인 기본정보	학생 ※ 학생이 작성한 내용을 멘토가 시스템에 입력하는 사항으로 제출 불필요	서식1	
	2	가족관계증명서	법정 대리인 (부모)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서	행정 복지 센터
	3	〈학생〉 개인정보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	학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학생용)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1인 서명 필수	서식2
	4	〈보호자〉 개인정보동의서 및 학부모 동의서	법정 대리인 (부모)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및 학부모 동의서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용)	서식3
	5	나의 꿈 도전계획서 표지(다문화)	학생	학생 기본정보 및 유의사항 확인 등 ※ 작성 시 소속 학교의 학교장 추천·직인 필수	서식5
	6	나의 꿈 도전계획서	학생	학업 및 진로 희망에 대한 구체적 계획	서식6~8
	7	(필요 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법정 차상위 대상자 증명서 (택 1)	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행정 복지 센터 국민건강 보험공단
	8	멘토링 활동 계획서 및 멘토개인정보동의서	멘토	멘토가 직접 작성한 멘토링 활동 계획 제출 ※ 학교장 직인 포함	서식9
	9	학교생활기록부	학생	직전 학년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 원본대조필 포함	소속 학교

※ 모든 서류는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며,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추가서류 제출은 심층평가 통과자에 한하며, 해당 대상자에게는 추가서류 제출을 별도 안내할 예정(반드시 기한 내 추가서류 제출 필요)

○ (신청기간) '24. 4. 1.(월) 9:00 ~ '24. 4. 26.(금) 18:00까지

✓ 신청 시 유의사항 ✓

※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기한 엄수)

※ 서류 미제출, 서류 누락 등은 심사에서 제외되며 온라인 신청 완료 후 작성 내용 및 파일 제출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마감 임박 시 시스템 접속 과다로 통신 장애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자금지원시스템에서 장학금 신청 방법

① 사용자 등록 신청 (장학금 신청 교직원(멘토)→재단)

▪ (EPKI 보유자) 학자금지원시스템 사용자 등록 및 권한 신청



[학자금지원시스템 화면]

- ① 학자금지원시스템 접속(<https://eduman.kosaf.go.kr>)
- ② 사용자 등록 및 신청 클릭 → 개인정보 기입 후 권한 신청
- ③ 입력된 정보 확인 후, 재단 담당자는 신청 권한 승인
 - ※ 학교명, 권한 분류 등을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 요망
 - ※ 신청시스템 접속 및 사용 매뉴얼 세부내용은 별도 안내

▪ (EPKI 미보유자) 인증서 발급 후 학자금지원시스템에서 사용자등록 및 권한신청

- ※ (인증서 발급방법)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https://www.epki.go.kr>)
→ 인증서발급/관리 → 신청 절차 안내
- ※ (권한신청) 권한 신청에서 재단 담당자 승인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행정전자서명인증 또는 권한 승인 절차 사전 준비 필요

② 신청서류 준비 (학생 → 장학금 신청 교직원(멘토))

- 신청 학생은 장학금 신청서류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학교 담당 교사에게 신청서류 제출 및 기재사항 점검

신청서 학생 제출서류

- ① 신청인 기본정보(온라인 입력사항)
 - ② 가족관계증명서
 - ③ 학생개인정보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
 - ④ 보호자 개인정보동의서 및 학부모 동의서
 - ⑤ 나의 꿈 도전계획서 표지(다문화)
 - ⑥ 나의 꿈 도전계획서
- ※ 저소득가정의 전산 조화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공고일부터 추천일 사이에 발급된 수급 자격 관련 서류 별도 제출 필요(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③ 학자금지원시스템 정보 입력·서류 제출 (장학금 신청 교직원(멘토)→재단)

- 장학금 신청 교직원(멘토)은 학생 신청 기본정보 등을 입력하고 학생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업로드
 - ① 학자금지원시스템 접속 후 로그인(①에서 권한 승인 받은 경우에만 로그인 가능)
 - ② 하단의 접속경로를 따라 신청정보 입력 및 서류 제출(세부내용 별도 안내)

학자금지원시스템 접속경로 ▶ 장학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 장학금 신청관리 > '2024년 1학기 1회차' > 신규 선택 > **다문화 장학금 유형 선택 후 확인** > 신청서 작성

나. 2단계 서류 심사

1. 제출서류 확인

- ①신청자 학년 정보(중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 ②만 14세 미만 신청자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③필수 신청서류 5종* 제출 유무 및 ④필수 기입사항(서명 등) 점검 등

* (필수신청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학생 개인정보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 보호자 개인정보동의서 및 학부모 동의서, 나의 꿈 도전계획서 표지(다문화), 나의 꿈 도전계획서

2. 저소득자격 확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 정보를 연계·활용하여 신청 학생 가정의 저소득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 ① 신청자의 수급자격 유무 관련 연계정보 요청(신청일자(D) 기준)
- ② 관련 연계정보 익일(D+1) 수신
- ③ 대상자별 수급자격 충족 여부 확인

※ 수급자격 미확인 신청자는 수급자격 증빙서류 별도 제출 안내

3. 교과 및 비교과 요건 확인

- 직전 학년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의 영역별 최소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학자금지원시스템 입력사항을 확인하며, 심층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받아 신청 시 기재 사항과 일치 여부 최종 확인

< 교과 영역 최소 자격 기준 >

대상	최소 교과기준	성적 산출 기준
중1	직전 학년 최소기준 없음	-
중2~고1	직전 학년 평균 C등급 이상	직전 학년(학기 구분 없음) 이수 과목 중 총 6개 과목*을 선택하여 성적 입력하고, 그 평균이 C등급 이상 *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역사 포함), 도덕, 기술·가정, 정보 중에서 과목 선택 ※ 단, 직전 학년이 자유학년(기)제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학년(기)가 PASS일 경우 인정(전 과목 PASS)
고2~고3	직전 학년 평균 7등급 이내 또는 C등급 이상	직전 학년(학기 구분 없음)의 7등급 이내 또는 C등급* 이상인 12단위(학점) 이상 과목**을 선택하여 성적 입력(최대 12과목까지 입력 가능) * 3단계 성취도(A~C) 과목은 B등급 이상 **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한국사, 사회, 제2외국어, 과학계열(전문교과 I), 외국어계열(전문교과 I) 전문교과II 중에서 과목 선택 ※ 석차등급과 성취도가 모두 산출되는 과목은 석차등급을 기준으로 성적 입력

※ 교과·비교과 최소 자격 기준 예시는 p.13 참조

< 비교과 영역 최소 자격 기준 >

대상	출결	봉사
공통	직전 학년 미인정 결석 10일 미만 ※ 「미인정지각·조퇴·결과」는 합산 3회당 결석 1일로 간주함	직전 학년 봉사활동 실적 10시간 이상

다. 3단계 심층 평가

① 다문화 평가단 구성

- (구성) 평가 그룹별 총 5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
 - 서류 심사 및 면접 등 관련 분야의 평가 경험이 있는 전문가* 위주로 17개 각 시·도 교육청 등의 추천을 통해 평가위원 구성
- * 복지·인재개발 전문가, 입학사정관, 교원, 장학사 등 교육·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 ※ 꿈 장학금 심층평가 위원 POOL 활용

② 평가 내용 및 방법

- (평가내용) 「나의 꿈 도전계획서(다문화)」에 기술된 학생의 역량, 잠재력 및 발전 가능성,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문항 총 3개, 세부평가항목 총 8개(총 100점 만점)
- (평가방법) 평가그룹별 5인 1조로 구성하고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3인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학제·학년별 배정 인원 범위 내 고득점자순으로 순위 부여
 -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정
- (심층평가 통과자 선정) 한국장학재단은 심층평가 결과에 따라 학제·학년별 배정인원 내 고득점자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심층평가 통과자로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평가항목 중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심층평가 통과자 결정*
- * 단,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 순위자 발생 시 학제·학년별 인원 등을 고려하여 장학생 선발·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다문화 장학금) 나의 꿈 도전계획서 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 >

구분		세부내용
① 평가조 구성		학년별 · 학제별 능력 편차를 고려하여 중1 · 중2~3 · 고등으로 구분
② 평가방식		총 5인의 각 평가위원별 총점(100점 만점) 중 최고 · 최저점 제외한 나머지 3인의 점수를 산술평균(절사평균 방식)
③ 평가문항 (배점)		1) 발전가능성 및 향후 계획(30점) 2) 배려, 협력 등 인성 경험을 통한 긍정적 변화와 느낀점(30점) 3) 장학금 활용 계획(40점)
④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문항1 (30점)	가. 목표,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한 노력의 진정성(10점)
		나. 목표,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한 과정의 타당성(10점)
		다. 목표,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한 지속가능성(10점)
	문항2 (30점)	가. 인성 활동을 통한 생활의 긍정적 변화(10점)
		나. 학습 · 경험과 인성 요소의 부합성(10점)
		다. 경험의 진정성(10점)
	문항3 (40점)	가. 장학금 신청의 진정성(20점)
		나. 장학금 활용 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구체성(20점)
	⑤ 동점자 처리기준	

※ 그 외 심층평가 관련 상세내용은 별도 심사계획에 따름

③ 심층 평가 통과 후 추가서류 제출

- (한국장학재단 → 학생, 멘토) 재단이 심층평가 통과자(학생) 및 멘토에게 추가서류 제출 관련 별도 안내
- (학생, 멘토) 추가서류 2종(①멘토링활동계획서 및 멘토개인정보동의서, ②생활기록부) 준비
- (멘토→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에 추가서류 (스캔파일) 2종 업로드

< 심층 평가 통과 후 제출서류 >

구분	추가서류	세부내용		비고
①	멘토링 활동 계획서 및 멘토개인정보동의서	멘토 작성	· 멘토링 활동 계획서: 멘토가 직접 작성 및 서명하고, 장학생 확인서명과 소속학교장 직인(필수)을 받아 제출 · 멘토개인정보동의서: 멘토 본인 동의·서명	서식9
②	학교생활기록부	학생 또는 멘토 발급	직전학년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제출 ※ 원본대조필 포함 필수	소속 학교 및 정부24 (온라인)

< 심층평가 통과 후 추가서류(2종)의 재단시스템 제출 경로 >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https://eduman.kosaf.go.kr>) 접속
- 장학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 장학금 신청관리 → 추가서류 제출 → 년도/학기/회차&상품유형: **2024년/1학기/1회차&다문화 장학금** 선택 후 조회 → 제출대상 여부 확인 →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제출' 버튼 클릭

- (유의사항) 한국장학재단이 통지한 기한 내 추가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후순위자에게 선발 기회 부여
 - 서류 제출 대상 학생 및 장학금 신청 교직원(멘토)은 재단과의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내용 누락* 및 서류 미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제출
 - * 날짜, 성명, 자필서명, 학교장 직인, 원본대조필 누락 등의 사유 발생 시 최종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음

라. 4단계 최종 선발

1 장학생 최종 선발 심의

○ (심의 주체) 장학생 선발·관리위원회

< 장학생 선발·관리위원회 >

- (구성) 교육·장학 등 관련 분야의 내·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총 7인 내외
- (기능) 장학생 최종 선발 심의·의결 및 제도개선 사항 논의 등
- (방법) 제적 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 세부사항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장학생 선발·관리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름

○ (선발방법) 학제·학년별 배정 인원 범위 내에서 심층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순위를 부여하며, 추가 서류 제출 결과를 반영하여 장학생 선발·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장학생 심의·의결

< 최종 선발인원 결원 발생 시 >

최종 선발일 이후 최초 장학금 지급일 전까지 선발인원 결원 발생 시, 동일 학제·학년 내 후순위자를 우선 선발하되, 후순위자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타 학제·학년의 후보자를 추가 선발할 수 있음

※ 단,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최종 선발자가 타 기관 장학금을 수혜하고 있는 경우*, 장학금 포기확인서(해당 기관 발급)를 한국장학재단이 통지한 추가 서류 제출 기한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장학생 이종 수혜 기준 p.20 참고

2 (선발결과 통보) 장학생 최종 선정 결과 안내

○ 장학생 선발·관리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라 최종 선발된 장학생에게 선정 결과 및 장학금 지원 관련 사항 개별 통보 예정

※ 학자금지원시스템(멘토) 또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결과 개별 조회

4 SOS장학금 선발 기준

1. 추천 자격요건

- 신청 자격 : 아래 요건을 충족하며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에 재학 중인 긴급구난 사유** 해당 학생으로 만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학교(상세 기준은 [참고7](p.47) 참조)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1항~7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이에 준하는 긴급 위기상황(단, 신청일 기준 위기상황이 지속 중인 경우에 한함)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1항~7항

- ① 주소득자(主所得者)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급시설수용으로 인한 소득 상실
- ② 본인 및 가구구성원의 중증질병 및 부상
-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 ④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원만한 가정생활 곤란
- ⑤ 거주지의 화재/재해로 거주지 생활 곤란
- ⑥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폐업/사업장화재로 영업 곤란
- ⑦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 세부 기준 및 사례는 [참고6](p.46) 확인 요망

- 신청 제외 대상(1개라도 해당될 경우 신청 불가)

- (사회적 물의) 학교폭력 가해 이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추천 불가
 - * ①정학·퇴학 등 징계받은 자, ②형사처벌(처분)을 받은 자, ③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6호, 제8~9호에 해당하는 자
- (중복신청) '24년 꿈·다문화 장학금 선발 시 중복신청 불가
- (기 수혜자) 기존 SOS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력이 있는 경우, 재신청 불가

- 각 학교별 장학금 신청 교사*는 신청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 모집·선발 관련 안내 실시

- 상담주간 시 학업 중단 위기 학생 대상이 적극 발굴될 수 있도록 안내
 - * 신청 대상 학생의 담임교사, 장학 담당 교사, 학교 복지사 등

2. 선발인원 및 장학금 지원 방식

□ (선발인원) 총 1,000명

- 학제·학년별 선발(중 1, 중2~3, 고) 인원은 학제·학년별 신청 비율에 따라 배정 예정

※ 사업 잔여 예산 및 별도 재원 확보 등에 따라 최종 선발인원 변동 가능

□ (지원방식) 장학금 카드(포인트 형식)로 매월 30만 원씩 10개월간 지원

※ 지원 기간 중 학업 중단 시 학업 중단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장학금 지원이 중단되며, 상급 학년(학교) 미진학 시에는 다음 연도 2월까지 장학금 지원

3. SOS장학금 선발 절차

1단계 학교추천	2단계 서류심사	3단계 심층평가 및 최종선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생 추천 (학교별 신청 인원 제한 없음)	제출서류 확인·점검, 최소 자격요건 심사	「SOS 장학금 신청서」 평가 (SOS 평가단) 및 최종 장학생 확정 ※ 장학생 선발·관리위원회 생략
'24. 8. 5. 9:00 ~ 8. 23. 18:00	'24. 8월 4주 ~ 9월 1주	'24. 9월 말

※ 학교 폭력 가해 이력 외 소득·성적·출결·봉사 등 모든 자격 심사 제외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가. 1단계 학교 추천

① (대상자 확인 및 학교 추천) 각 학교는 추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생을 발굴하여 학교별 신청 인원 제한 없이 장학생 추천 가능

- 학생 추천(신청) 시 긴급구난 사유를 증빙하기 위한 별도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사유 증빙 여부는 소속 학교에서 추천한 내용으로 인정(단, 장학금 신청서 내 소속 학교 학교장 추천 및 직인 필수)

* (예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진단서, 휴·폐업증명서 등

※ 세부 기준 및 사례는 [참고6](p.46) 확인 요망

② (신청방법) ①제출 서류는 문항별 주체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장학금 신청 및 서류 제출은 ②소속 학교의 신청 담당 교사가 온라인 제출

① 신청 학생은 서류를 작성·준비하여 장학 담당교사*에게 제출

- 학생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만 14세 미만 학생(10년 이후 출생자 중 생일 미도래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드시 법정대리인 1인의 동의 필수
 - SOS 장학금 신청서 작성 시 자필 혹은 타이핑 입력 모두 가능하며, 문항별 작성 주체가 다르고, 신청 학년별(중1, 중2~3, 고) SOS 장학금 신청서 서식[서식 11~13]이 다르므로 작성 시 유의
 - 제출서류의 내용 누락·미비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 및 제출에 유의
- * 신청 대상 학생의 담임교사, 장학 담당 교사, 학교 복지사 등

구분	제출서류	세부내용	비고
신청서 제출 (신청서류)	1 신청인 기본정보	학생 기본정보 ※ 학생이 작성한 내용을 멘토가 시스템에 입력하는 사항으로 제출 불필요	서식1
	2 <학생> 개인정보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학생용) ※ <u>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1인 서명 필수</u>	서식2
	3 SOS 장학금 신청서 표지	학생 기본정보 및 유의사항 확인 등 ※ 신청 시 소속 학교의 학교장 추천·직인 필수	서식10
	4 SOS 장학금 신청서	학업 의지·계획 및 긴급 위기 상황 등 구체적 서술	서식 11~13

② 학교별 장학 담당교사는 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https://eduman.kosaf.go.kr>)에 접속하여 추천 학생의 기초정보 및 신청 관련 제출서류 등을 접수·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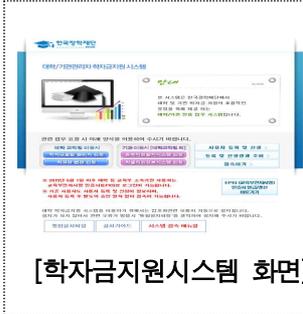
○ (신청 기간) '24년 8월 5일(월) 9:00 ~ 8월 23일(금) 18:00

✓ 신청 유의사항 ✓

- ※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기한 엄수)
- ※ 서류 미제출, 서류 부분 누락 등은 심사에서 제외되오니 온라인 신청 후 작성내용 및 파일 업로드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 마감 임박 시 시스템 접속 과다로 통신 장애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 학자금지원시스템 이용 시, 사전에 접속 권한을 신청해 승인받아야 함
 - 신청 후 승인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반드시 신청 전 시간적 여유를 갖고 권한 신청 및 승인 진행 필요

▪ (EPKI 기보유자) 학자금지원시스템 사용자 등록 및 권한 신청



- ① 학자금지원시스템 접속(<https://eduman.kosaf.go.kr>)
- ② 사용자 등록 및 신청 클릭 → 개인정보 기입 후 권한 신청
- ③ 입력된 정보 확인 후, 재단 담당자는 신청 권한 승인
 - ※ 학교명, 권한 분류 등을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 요망
 - ※ 신청시스템 접속 및 사용 매뉴얼 세부내용은 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에 별도 게시

- (EPKI미보유자) 담당교사는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https://www.epki.go.kr>)에 접속하여 인증서 발급 필요
- ※ (접속경로)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 > 인증서발급/관리 > 신청절차 안내 참고

※ 세부 방법은 본 업무처리기준 p.11 참고

나. 2단계 서류 심사

□ 제출서류 확인

- 신청자 학년 정보(중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 만 14세 미만 신청자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필수 신청서류 3종* 제출 유무 및 필수 기입사항(서명 등) 점검 등
- * 학생 개인정보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 SOS 장학금 신청서 표지, SOS 장학금 신청서

다. 3단계 심층 평가 및 최종 선발

① SOS 평가단 구성

- (구성) 평가 그룹별 총 3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
- 서류심사 및 면접 등 관련 분야의 평가 경험이 있는 전문가* 위주로 17개 각 시·도 교육청 등의 추천을 통해 평가위원 구성
- * 복지·인재개발 전문가, 입학사정관, 교원, 장학사 등 교육·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 ※ 꿈 장학금 심층평가 위원 POOL 활용

② 평가 내용 및 방법

- (평가내용) 「SOS장학금 신청서」에 기술된 학생의 학업의지·계획 및 긴급 위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방법) 3인 1조로 구성하여 온라인 심층평가 진행
 - 평가문항 총 4개, 세부 평가항목 총 10개(총 100점 만점)
 - 3인 각 평가위원의 총점(100점 만점)을 산술평균*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순위 부여
 -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정
 - 동점자 발생 시에는 평가항목 중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SOS 장학금 신청서 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 >

구분		세부내용
①	평가조 구성	학년별·학제별 능력 편차를 고려하여 중1·중2~3·고등으로 구분
②	평가방식	총 3인의 각 평가 위원별 총점(100점 만점)을 산술평균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평가
③	평가문항 (배점)	1) 발전가능성 및 향후 계획(20점) 2) 배려, 협력 등 인성 경험을 통한 긍정적 변화와 느낀점(20점) 3) 장학금 활용 계획(30점) 4) 위기 상황 기술(30점)
④	세부 평가 항목 (배점)	학생 작성 문항1 (20점)
		학생 작성 문항2 (20점)
		학생 작성 문항3 (30점)
		보호자 작성 문항4 (30점)
⑤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 문항3의 점수가 높은 자 (2순위) 문항4의 점수가 높은 자 (3순위) 문항1의 점수가 높은 자 (4순위) 문항2의 점수가 높은 자

※ 그 외 심층평가 관련 상세내용은 별도 심사계획에 따름

③ 최종 장학생 선발

- 한국장학재단은 심층 평가 결과에 따라 학제·학년별 고득점자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최종 장학생을 선발

< 최종 선발인원 결원 발생 시 >

최종 선발일 이후 최초 장학금 지급일 전까지 선발인원 결원 발생 시, 동일 학제·학년 내 후순위자를 우선 선발하되, 후순위자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타 학제·학년의 후보자를 추가 선발할 수 있음

※ 단,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④ (선발결과 통보) 장학생 최종 선정 결과 안내

- 최종 선발된 장학생에게 선정 결과 및 장학금 지원 관련 사항 개별 통보 예정
 - ※ 학자금지원시스템(멘토) 또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결과 개별 조회

별첨 참고 및 신청관련 서식

참고1 꿈사다리 장학금 신청 관련 중·고등학교 교과목 분류표

□ 중학교 교과기준

교과(군)	과목	비고
국어	국어	직전학년(학기 구분 없음) 이수과목 중 총 6개 과목을 선택하여 성적 입력 *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역사 포함), 도덕, 기술·가정, 정보 중에서 과목 선택
사회(역사 포함)/도덕	사회, 역사, 도덕	
수학	수학	
과학/기술·가정/정보	과학, 기술·가정, 정보	
영어	영어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20-248호)에 따른 교과 목록 기준

□ 고등학교 교과기준

○ 보통교과

교과(군)	과목(공통, 선택)
국어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
수학	수학,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본 수학, 실용 수학, 인공지능 수학, 기하, 경제 수학, 수학과제 탐구
영어	영어, 영어 회화, 영어 I,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 II, 기본 영어,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한국사	한국사
사회 (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과학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물리학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물리학 II, 화학 II, 생명과학 II, 지구과학 II, 과학사,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제2외국어	독일어 I, 프랑스어 I, 스페인어 I, 중국어 I, 일본어 I, 러시아어 I, 아랍어 I, 베트남어 I, 독일어 II, 프랑스어 II, 스페인어 II, 중국어 II, 일본어 II, 러시아어 II, 아랍어 II, 베트남어 II,

○ 전문교과 I

교과(군)	과목(공통, 선택)
과학계열 (전문 교과 I)	심화 수학 I, 심화 수학 II, 고급 수학 I, 고급 수학 II,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 고급 생명과학, 고급 지구과학,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정보과학,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생태와 환경,
외국어 계열 (전문교과 I)	심화 영어 회화 I, 심화 영어 회화 II, 심화 영어 I, 심화 영어 II, 심화 영어 독해 I, 심화 영어 독해 II, 심화 영어 작문 I, 심화 영어 작문 II, 전공 기초 독일어, 독일어 회화 I, 독일어 회화 II, 독일어 독해와 작문 I, 독일어 독해와 작문 II, 독일어권 문화, 전공 기초 프랑스어, 프랑스어 회화 I, 프랑스어 회화 II, 프랑스어 독해와 작문 I, 프랑스어 독해와 작문 II, 프랑스어권 문화, 전공 기초 스페인어, 스페인어 회화 I, 스페인어 회화 II, 스페인어 독해와 작문 I, 스페인어 독해와 작문 II, 스페인어권 문화, 전공 기초 중국어, 중국어 회화 I, 중국어 회화 II, 중국어 독해와 작문 I, 중국어 독해와 작문 II, 중국 문화, 전공 기초 일본어, 일본어 회화 I, 일본어 회화 II, 일본어 독해와 작문 I, 일본어 독해와 작문 II, 일본 문화, 전공 기초 러시아어, 러시아어 회화 I, 러시아어 회화 II, 러시아어 독해와 작문 I, 러시아어 독해와 작문 II, 러시아 문화, 전공 기초 아랍어, 아랍어 회화 I, 아랍어 회화 II, 아랍어 독해와 작문 I, 아랍어 독해와 작문 II, 아랍 문화, 전공 기초 베트남어, 베트남어 회화 I, 베트남어 회화 II, 베트남어 독해와 작문 I, 베트남어 독해와 작문 II, 베트남 문화

○ 전문교과Ⅱ

교과(군)	과목(전문공통, 기초, 실무)
경영·금융	성공적인 직업생활, 상업 경제, 기업과 경영, 사무 관리, 회계 원리, 회계 정보 처리 시스템, 기업 자원 통합 관리, 세무 일반, 유통 일반, 국제 상무, 비즈니스 영어, 금융 일반, 보험 일반, 마케팅과 광고, 창업 일반, 커뮤니케이션, 전자 상거래 일반, 총무, 비서, 사무 행정, 회계 실무, 구매 조달, 공정 관리, 공급망 관리, 수출입 관리, 유통 관리, 카드 영업, 무역 금융 업무, 손해 사정, 전자 상거래 실무, 방문 판매, 노무 관리, 인사, 예산·자금, 세무 실무, 자재 관리, 품질 관리, 물류 관리, 원산지 관리, 창구 사무, 증권 거래 업무, 보험 모집, 고객 관리, 매장 판매
보건·복지	인간 발달, 보육 원리와 보육 교사, 보육 과정, 아동 생활 지도, 아동 복지, 보육 실습, 생활 서비스 산업의 이해, 복지 서비스의 기초, 사회 복지 시설의 이해, 공중 보건, 인체 구조와 기능, 간호의 기초, 기초 간호 임상 실무, 보건 간호, 영·유아 놀이 지도, 영·유아 건강·안전·영양 지도, 사회 복지 시설 실무, 영·유아 교수 방법, 대인 복지 서비스
디자인·문화 콘텐츠	디자인 제도, 디자인 일반, 조형, 색채 관리, 컴퓨터 그래픽, 미디어 콘텐츠 일반, 문화 콘텐츠 산업 일반, 영상 제작 기초, 시각 디자인, 실내 디자인, 디지털 디자인, 영화 콘텐츠 제작, 광고 콘텐츠 제작, 게임 디자인,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캐릭터 제작, 제품 디자인, 색채 디자인, 방송 콘텐츠 제작, 음악 콘텐츠 제작, 게임 기획, 게임 프로그래밍, 만화 콘텐츠 제작, 스마트 문화 앱 콘텐츠 제작
미용·관광·레저	미용의 기초, 미용 안전·보건, 관광 일반, 관광 사업, 관광 서비스, 관광 영어, 관광 일본어, 관광 중국어, 헤어 미용, 메이크업, 여행 서비스 실무, 호텔 식음료 서비스 실무, 유원 시설 서비스 실무, 피부 미용, 네일 미용, 호텔 객실 서비스 실무, 카지노 서비스 실무
음식 조리	식품과 영양, 급식 관리, 한국 조리, 중식 조리, 소믈리에, 바텐더, 서양 조리, 일식 조리, 바리스타
건설	공업 일반, 기초 제도, 토목 일반, 토목 도면 해석과 제도, 토목 기초 실습, 건축 일반, 건축 도면 해석과 제도, 건축 기초 실습, 조경, 토공·포장 시공, 지적, 공간 정보 융합 서비스, 건축 도장 시공, 단열·수장 시공, 건축 마감 시공, 조경 시공, 조경 설계, 측량, 공간 정보 구축, 건축 목공 시공, 창호 시공, 철근 콘크리트 시공, 경량 철골 시공, 조경 관리
기계	기계 제도, 기계 기초 공작, 전자 기계 이론, 기계 일반, 자동차 일반, 냉동 공조 일반, 유체 기계, 자동차 기관, 자동차 샤프트, 자동차 전기·전자 제어, 선체 도면 독도와 제도, 선박 이론, 선박 구조, 선박 건조, 항공기 일반, 항공기 실무 기초, 기계요소 설계, 선반 가공, 연삭 가공, 측정, 방전 가공, 워터젯트 가공, 사출 금형 설계, 사출 금형 품질 관리, 프레스 금형 설계, 프레스 금형 품질 관리, 기계 수동 조립, 운반 하역 기계 설치·정비, 섬유 기계 설치·정비, 고무 플라스틱 기계 설치·정비, 승강기 설치·정비, 자전거 정비, 냉동 공조 장치 설치, 냉동 공조 유지·보수 관리, 자동차 전기·전자 장치 정비, 자동차 샤프트 정비, 자동차 도장, 자동차 영업, 선체 가공, 선박 도장, 기장 생산, 선장 생산, 선체 생산 설계, 항공기 엔진·프로펠러 제작, 항공기 기체 정비, 항공기 왕복 엔진 정비, 항공기 계통 정비, 헬리콥터 정비, 소형 무인기 정비, 기계 제어 설계, 밀링 가공, 컴퓨터 활용 생산, 성형 가공, 레이저 가공, 플라스마 가공, 사출 금형 제작, 사출 금형 조립, 프레스 금형 제작, 프레스 금형 조립, 기계 소프트웨어 개발, 건설 광산 기계 설치·정비, 공작 기계 설치·정비, 농업용 기계 설치·정비, 오토바이 정비, 냉동 공조 설계, 보일러 장치 설치, 보일러 설치·정비, 자동차 엔진 정비, 자동차 차체 정비, 자동차 정비 검사, 자동차 튜닝, 선체 조립, 선체 품질 관리, 전장 생산, 선실 의장 생산, 항공기 기체 제작, 항공기 전기·전자 장비 제작, 항공기 가스 터빈 엔진 정비, 항공기 프로펠러 정비, 항공기 전기·전자 장비 정비, 항공기 정비 관리

교과(군)	과목(전문공통, 기초, 실무)
재료	재료 시험, 세라믹 재료, 세라믹 원리·공정, 재료 일반, 산업 설비, 주조, 제강, 금속 재료 가공, 압연, 도금, 광학 재료, 생체 세라믹 재료, 내화물, 도자기, 탄소 제품, 배관 시공,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제선, 금속 열처리, 금속 재료 신뢰성 시험, 비철 금속 제련, 전기·전자 재료, 내열 구조 재료, 유리·법랑, 연삭재, 시멘트, 판금 제관, 피복 아크 용접, 이산화탄소·가스 메탈 아크 용접, 로봇 용접
화학 공업	공업 화학, 제조 화학, 단위 조작, 화학 분석, 화학 공정 유지 운영, 고분자 제품 제조, 기능성 정밀 화학 제품 제조, 플라스틱 제품 제조, 화학 물질 관리, 석유 화학 제품, 무기 공업 화학, 바이오 화학 제품 제조
섬유·의류	섬유 재료, 섬유 공정, 염색·가공 기초, 의류 재료 관리, 패션 디자인의 기초, 의복 구성의 기초, 패션 마케팅, 방직, 제포, 텍스타일 디자인, 생산 현장 관리, 패턴 메이킹, 서양 의복 구성과 생산, 가죽·모피 디자인과 생산, 한국 의복 구성과 생산, 방사·사가공, 염색·가공, 구매 생산 관리, 패션 디자인의 실제, 비주얼 머천다이징, 니트 의류 생산, 패션 소품 디자인과 생산, 패션 상품 유통 관리
전기·전자	전기 회로, 전기 기기, 전기 설비, 자동화 설비, 전기·전자 기초, 전자 회로, 전기·전자 측정, 디지털 논리 회로, 수력 발전 설비 운영, 원자력 발전 설비 운영, 송·변전 배전 설비 운영, 직류 송배전 제어·보호 시스템 설비 제작, 전기 기기 제작, 전기 설비 운영, 외선 공사, 자동 제어 기기 제작, 자동 제어 시스템 운영, 전기 철도 시설물 유지 보수, 철도 신호 제어 시설물 유지 보수, 전자 제품 생산, 전자 부품 생산, 전자 부품 소프트웨어 개발, 전자 제품 영업, 가전 기기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전자 응용 기기 소프트웨어 개발, 가전 기기 기구 개발, 산업용 전자 기기 기구 개발, 전자 응용 기기 기구 개발, 정보 통신 기기 기구 개발, 반도체 개발,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개발, 디스플레이 장비 부품 개발, 로봇 기구 개발, 로봇 지능 개발, 의료 기기 인허가, 의료 기기 연구·개발, 레이저 개발, 3D 프린터 개발, 가상 훈련 시스템 설계·검증, 화력 발전 설비 운영, 원자력 발전 전기 설비 정비, 직류 송배전 전력 변환 설비 제작, 전기 기기 설계, 전기 기기 유지 보수, 내선 공사, 변전 설비 공사, 자동 제어 시스템 유지 정비, 전기 철도 시공, 철도 신호 제어 시공, 전자 제품 기획, 전자 부품 기획, 전자 부품 기구 개발, 전자 제품 설치·정비, 가전 기기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산업용 전자 기기 소프트웨어 개발, 가전 기기 하드웨어 개발, 산업용 전자 기기 하드웨어 개발, 전자 응용 기기 하드웨어 개발, 정보 통신 기기 하드웨어 개발, 정보 통신 기기 소프트웨어 개발, 반도체 제조, 반도체 재료, 디스플레이 생산, 로봇 하드웨어 설계,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로봇 유지 보수, 의료 기기 생산, 광부품 개발, LED 기술 개발, 3D 프린터용 제품 제작, 가상 훈련 구동 엔지니어링
정보·통신	통신 일반, 통신 시스템, 정보 통신, 방송 일반, 정보 처리와 관리, 컴퓨터 구조, 프로그래밍, 자료 구조, 컴퓨터 시스템 일반, 컴퓨터 네트워크, 네트워크 구축, 무선 통신 구축, 방송 제작 시스템 운용, 시스템 관리 및 지원, 시스템 프로그래밍, 응용 프로그래밍 화면 구현, 빅데이터 분석, 정보 보호 관리, 유선 통신 구축, 초고속망 서비스 관리 운용,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컴퓨터 보안, 응용 프로그래밍 개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사물 인터넷 서비스 기획
식품 가공	식품 과학, 식품 위생, 식품 가공 기술, 식품 분석, 곡물 가공, 식품 품질 관리, 면류 식품 가공, 축산 식품 가공, 유제품 가공, 음료·주류 가공, 농산 식품 유통, 제빵, 떡 제조, 수산 식품 가공, 두류 식품 가공, 건강 기능 식품 가공, 김치·반찬 가공, 농산 식품 저장, 제과

교과(군)	과목(전문공통, 기초, 실무)
인쇄·출판 ·공예	인쇄 일반, 디지털 이미지 재현, 출판 일반, 공예 일반, 공예 재료와 도구, 프리프레스, 특수 인쇄, 출판 편집, 도자기 공예, 석공예, 보석 감정, 평판 인쇄, 후가공, 금속 공예, 목공예, 섬유 공예, 귀금속·보석 디자인
환경·안전	환경 화학 기초, 인간과 환경, 산업 안전 보건 기초, 수질 관리, 폐기물 관리, 산업 환경 보건, 기계 안전 관리, 건설 안전 관리, 가스 안전 관리, 대기 관리, 소음 진동 측정, 환경 생태 관리, 전기 안전 관리, 화공 안전 관리
농림·수산 해양	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농업 경영, 재배, 농촌과 농지 개발, 농산물 유통, 농산물 유통 관리, 농산물 거래, 관광 농업, 환경 보전, 친환경 농업, 생명 공학 기술, 농업 정보 관리, 농산 식품 가공, 원예, 생산 자재, 조경 식물 관리, 화훼 장식 기초, 산림 휴양, 산림 자원, 임산 가공, 동물 자원, 반려동물 관리실험 동물과 기타 가축, 농업 기계, 농업 기계 공작, 농업 기계 운전·작업, 농업과 물, 농업 토목 제도·설계, 농업 토목 시공·측량, 해양의 이해, 수산·해운 산업 기초, 해양 생산 일반, 해양 정보 관리, 해양 오염·방제, 전자 통신 기초, 전자 통신 운용, 수산 일반, 수산 생물, 수산 양식 일반, 수산 경영, 수산물 유통, 양식 생물 질병, 해양 환경과 자원, 해양 레저 관광, 요트 조종, 잠수 기술, 수도작 재배, 육종, 종자 유통 보급, 농촌 체험 상품 개발, 농산물 품질 관리, 과수 재배, 화훼 장식, 산림 조성, 임산물 생산, 펄프·종이 제조, 가금 사육, 한우 사육, 말 사육, 사료 생산, 애완동물 미용, 바이오 의약품 제조, 연안 어업, 원양 어업, 염 생산, 어업 환경 개선, 내수면 양식, 수산 생물 질병 관리, 어촌 체험 상품 개발, 일반 잠수, 전특작 재배, 종자 생산, 농업 생산 관리, 농촌 체험 시설 운영, 채소 재배, 화훼 재배, 임업 종묘, 산림 보호, 버섯 재배, 목재 가공, 젓소 사육, 돼지 사육, 종축, 동물 약품 제조, 수의 보조, 농업 생산 환경 조성, 근해 어업, 내수면 어업, 어업 자원 관리, 해면 양식, 수산 종묘 생산, 어촌 체험 시설 운영, 수상 레저 기구 조종, 산업 잠수
선박 운항	항해 기초, 해사 일반, 해사 법규, 선박 운용, 선화 운송, 항만 물류 일반, 해사 영어, 항해사 직무, 해운 일반, 열기관, 선박 보조 기계, 선박 전기·전자, 기관 실무 기초, 기관 직무 일반, 선박 운항 관리, 선박 통신, 선박 기기 운용, 선박 기관 정비, 선박 안전 관리, 선박 갑판 관리, 기관사 직무, 선박 보조기계 정비

※ 위 표에 없는 과목 중 학교 자체적으로 개설한 과목은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개설되었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재단으로 제출 시 인정

참고2

복꿈 성장 멘토링(1:1멘토링) 관련 사항

□ 복꿈 성장 멘토링(교직원 등 교육 현장의 전문가와의 1:1멘토링)

[교육목표] 장학생에게 정서적 지지 제공으로 안정적 성장 도모

- (교육대상) 중고 꿈 장학생 의무 참여
- (교육일정) 연중(학기별 2회 이상, 연간 4회 이상 필수)
- (교육내용) 멘토와 다양한 멘토링 활동(문화활동, 진로·진학 상담, 개인상담 등)

〈 복꿈 성장(1:1) 멘토링 관련 유의사항 〉

- (멘토 지정) 장학생 선발 전, 학생과 상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멘토링 지원이 가능한 멘토의 정보를 입력(필수기입 정보)
 - ※ 장학생 선발 전 ①멘토링 활동 계획서, ②멘토 개인정보동의서, ③계좌정보 제출 필수
 - (자격요건) 멘토는 장학생의 소속학교 교직원을 원칙으로 하며, 신규 장학생 신청 시 신청 교사 역할을 병행
 - ⇒ 장학생의 성장 지도가 가능하며, 결격사유 없는 자*를 멘토로 지정 (학교장 확인 필수) 「복꿈 성장(1:1) 멘토링·멘토 자격 결격 사유」 참고
 - (멘토 변경) 멘토는 학년 단위로 변경 가능*
 - ⇒ 멘토 변경 시에는 ①멘토링 활동 계획서 및 멘토 ②개인정보동의서 ③계좌정보 제출 필수
- 질병·사고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불성실 활동 등의 자격제한 사유 발생에 한하여 소속학교 교직원으로 멘토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장학생(또는 멘토)은 재단에 즉시 연락하여야 함
- ※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 소속 외 담당자로 멘토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재단 승인 필요
- (멘토 지원) 멘토링 활동 지원비*(회차별 10만 원**), 멘토 위촉장(교육부장관 명의) 멘토링 가이드북 등 제공
 - * 학기별 2회(연간 총 4회) 멘토 개인 계좌로 지급
 - ** 장학생의 진학(중→고) 후에도 활동을 지속하는 경우 활동비 10만 원 추가 지급
 - (활동 점검) 장학생과의 멘토링 활동은 정기 심사 시 멘토링 활동 결과 보고서를 통해 점검

〈 복꿈 성장(1:1) 멘토링·멘토 자격 결격 사유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현재 정치활동 중이거나 멘토링 활동 기간 중 정치활동 예정 중인 자
- 특정 이념에 치우친 활동을 진행했거나, 예정 중인 자
- 멘토링 활동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소 권장 멘토링 활동 횟수 미만의 활동을 하였거나, 중도 포기 등 적극적인 활동 의지가 없는 경우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그 밖에 학교장 및 한국장학재단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참고3

복지자격 서류 목록(수급자격 전산확인 불가자용)

◇ 복지자격서류 (복지자격 전산정보 불일치 대상에 한하여 제출)

【복지자격(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범위】

(인정 범위)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장학금 신청일 기준 아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계층으로 판정

* 조손 가정의 경우 학생 및 조부모 중 1인 이상 수급 자격 보유 시 인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권자(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차상위로 분류)

구분	자격명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¹⁾
	기초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²⁾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주거/교육)
	기초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 모든 서류는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1) 지자체별 조례에 따른 차상위선정자 및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자격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류 제출 필요

2) 참고5 참조: 법정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양식

참고4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증명서	명의	발급기관	비고
1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본인 또는 가구원* 명의 * 미혼일 경 우부 또는 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	행정 복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 장애인연금수급자는 '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만 차상위 인정
2 자활근로자 확인서		행정 복지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 자
3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 복지센터	만 18세 미만 발급 (취학 중일 경우 만 22세 미만)
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부양 요건)을 모두 갖춘 자
5 차상위 계층 확인서		행정 복지센터	-
6 수급자 증명서		행정 복지센터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참고5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양식

1.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처리기간
			즉시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세대주성명 (시설명)	세대주와의 관계		
용도			
제출처			
수급자 구분	주장애등급/유형	부장애등급/유형	
	<input type="checkbox"/> 1급 <input type="checkbox"/> 2급 <input type="checkbox"/> 3급 <input type="checkbox"/> 4급 <input type="checkbox"/> 5급 <input type="checkbox"/> 6급 <input type="checkbox"/> 지체 <input type="checkbox"/> 시각 <input type="checkbox"/> 청각 <input type="checkbox"/> 언어 <input type="checkbox"/> 지적 <input type="checkbox"/> 뇌병변 <input type="checkbox"/> 정신 <input type="checkbox"/> 지체성 <input type="checkbox"/> 신장 <input type="checkbox"/> 신장 <input type="checkbox"/> 호흡기 <input type="checkbox"/> 간 <input type="checkbox"/> 안면 <input type="checkbox"/> 장부요우 <input type="checkbox"/> 뇌전증	<input type="checkbox"/> 1급 <input type="checkbox"/> 2급 <input type="checkbox"/> 3급 <input type="checkbox"/> 4급 <input type="checkbox"/> 5급 <input type="checkbox"/> 6급 <input type="checkbox"/> 지체 <input type="checkbox"/> 시각 <input type="checkbox"/> 청각 <input type="checkbox"/> 언어 <input type="checkbox"/> 지적 <input type="checkbox"/> 뇌병변 <input type="checkbox"/> 정신 <input type="checkbox"/> 지체성 <input type="checkbox"/> 신장 <input type="checkbox"/> 신장 <input type="checkbox"/> 호흡기 <input type="checkbox"/> 간 <input type="checkbox"/> 안면 <input type="checkbox"/> 장부요우 <input type="checkbox"/> 뇌전증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연금(<input type="checkbox"/> 기초부가급여 <input type="checkbox"/> 차상위부가급여 <input type="checkbox"/> 차상위초과부가급여) <input type="checkbox"/> 장애수당(<input type="checkbox"/> 기초 <input type="checkbox"/> 차상위) <input type="checkbox"/> 장애아동수당(<input type="checkbox"/> 기초 <input type="checkbox"/> 차상위) * 기초: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 차상위계층 * 차상위초과: 기초 또는 차상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 차상위 및 차상위부가급여 대상자만 차상위계층으로 인정
- ※ 기초 및 기초부가급여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
- ※ 차상위 초과부가급여 대상자의 경우 기초 또는 차상위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인정 불가

2. 자활근로자 확인서

[자활서식 23호] 자활근로자 확인서

자 활 근 로 자 확 인 서			처리기간
			즉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7자리 (외국인등록번호)	000000-0
주소 (소재지)			
세대주성명 (시설명)	세대주와의 관계		
참여구분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 차상위 자활 / 기타()		
사업내용			
용도			
제출처			

3. 한부모 가족증명서

제 호

한부모가족증명서

1. 성명: _____
(생년월일: _____)

2. 세대주 성명(시설명): _____
(세대주와의 관계: _____)

3. 주소(소재지): _____

4. 제출용도:
(용 도)
(제출처)

5. 선정일자: _____

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서식 7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증번호		발급번호	
차 상 위 경 감 대 상 자 확 인 내 역 서				
연번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경감유형	
1				

5. 차상위 계층 확인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 7호서식] <신설 2015.4.20.>

차상위계층 확인서			처리기간
			즉시
성명 (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소재지)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용도			
제출처			
<p>「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6. 수급자 확인서

제 호

수급자 증명서

1. 성명: (생년월일:)

2. 세대주 성명(시설명): (세대주와의 관계:)

3. 주소(소재지):

4. 수급자 구분:

<input type="checkbox"/>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의료급여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주거급여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교육급여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보장시설 수급자

5. 제출용도:

(용도)

(제출처)

- ※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만 차상위계층으로 인정
-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

참고6

SOS 장학금 긴급 구난 사유 세부 기준

긴급구난사유	세부 기준
① 주소득자(主所得者)의 사망/ 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수용으로 인한 소득 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출 및 행방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된 사람 -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 구금시설 :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구금된 경우
② 본인 및 가구 구성원의 중증 질병 및 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중증 질병 또는 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질병, 암질환, 희귀난치질환 포함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④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원만한 가정생활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 : 가구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⑤ 거주지의 화재 /재해로 거주지 생활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 및 자연재해(풍수해 등 자연·사회 재난 포함)
⑥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副所 得者)의 휴업/폐업/ 사업장화재로 영업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업/폐업/사업장 화재 후 1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신청일 기준)
⑦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직 후 1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신청일 기준)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1항~7항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학교장의 판단 및 추천을 통해 신청(단, 신청일 기준 위기 상황이 지속 중인 경우에 한함)

참고7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대상 학교 범위

설치근거법		대분류	중분류	대상	
초중등교육법		초등학교		X	
		중학교		O	
		고등공민학교		O	
		고등학교	일반고		O
			특수목적고*	* 과고, 외고, 마이스터고 등	O
			특성화고*	* 공고, 상고, 대안교육 특성화고, 군특성화고 등	O
			자율고*	* 자사고 등	O
		고등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O	
		특수학교	장애인학교	O	
		각종학교	외국인학교	O	
대안학교	O				
영재교육진흥법	영재학교	영재학교* * 대구과고, 경기과고 등	O		
대안교육기관법	대안교육기관	비인가대안학교	X		
외국 교육 기관법	경제자유 구역법	외국교육기관	(제주 지역 외) 인가된 국제학교* * 대구국제학교, 채드윅송도국제학교, 칼빈매니토국제학교	X	
	제주특별법	국제학교	(제주 지역 내) 인가된 국제학교* *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 노스런던컬리지 에잇스쿨 제주, 브랜섬 홀 아시아, 세인트 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	X	
-	비인가 국제학교	비인가 국제학교	X		
재외국민교육법	재외 한국학교	재외 한국학교* * 재외동포 대상 초중등교육 기관	X		
보호소년법	소년원학교	소년원학교* * 소년원 내 초중등교육 기관	X		
평생교육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X		
공군항공과학 고등학교 설치법	공군항공과학고	공군항공과학고* * 공군부서관 양성 목적	X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해양 학교	해사고등학교* * 선원 양성 목적	O		

서식1

신청인 기본 정보(온라인 입력)

2024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신청인 기본 정보

학생 기본 정보	이름			성별	남 / 여	
	주민등록번호	(예시 020401-3123456)				
	학교 및 학년	학교		학년		
	학생연락처	(집)	(핸드폰)	(이메일)		
	집 주소	(우편번호:)				
	장학금 유형 (택1)	<input type="checkbox"/> 꿈 장학금		<input type="checkbox"/> 다문화 장학금		<input type="checkbox"/> SOS장학금
※ 아래 '보호자정보' 및 '기타정보'는 꿈·다문화 장학금 신청 시에만 작성 요망(SOS장학금 신청 시 '학생 기본정보'만 작성)						
보호자 정보	구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휴대폰 또는 집)	상태	주보호자 여부 (장학금 안내받을 1인에만 'O' 표기)
	부				생존 / 사망 / 행방불명 / 이혼	
	모				생존 / 사망 / 행방불명 / 이혼	
	주보호자 (부모가 아닐 시에만 작성)	(관계) (성명)			동거 / 비동거	
기타 정보	구분	지원기관	장학금명칭	금액(원)	지원기간 (학기단위)	
	타기관 지원현황 (이중수혜 확인용)					
소득구분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수급자		<input type="checkbox"/> 법정 차상위가정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학생은 위 내용을 작성 후 담당 교사에게 제출하고, 담당 교사는 위 내용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https://eduman.kosaf.go.kr>)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학생용)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학생용)

한국장학재단 귀중

□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본인과 의 장학금 지급,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조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15조제2항,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재단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학재단법') 제16조의 사 업 등 아래 내용과 같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 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며 재단이 장학금 등 학자금지원과 관련된 정보(기존 재단 수혜정보 포함)를 본인의 가구원(부모), 법정대리인, 본인 소속 또는 소속예정인 초·중 등·고등교육기관에 제공 및 활용(가구원 상담 포함) 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이 동의서에 근거하여 본인의 행정정보를 활용한 신청인의 장학재단법 제3조에 따른 초·중등·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복학 재입학, 편입 휴학 등 포함)을 위한 신청, 장학금 계속 지원 확인, 변동정보의 관리 등의 업무처리 시에도 본인의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별도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이의가 없는데 동의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2에 따라 재단은 정보 주체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가족관계(부, 모) 확인, 장학대상자 선발·지원·관리 등 ■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중복 지원의 방지 및 중복지원금 환수 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조사, 채권보전 조치, 강제집행 등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자료 제출의 요청 및 제50조의4 자료 요구 및 질문을 위한 업무 수행 ■ 장학재단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 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금융사고 조사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사업수행 ■ 기타 장학재단법 제16조 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수집·이용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식별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소속,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학자금지원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금(재단외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 기타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및 국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본(전산)정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등록금 정보, 초·중등·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학생기록부 정보(내신정보, 학생부정보 등), 고객이 제공한 정보(학생 계좌정보, 보호자 정보 등), 졸업 후 본인의 진로(진학, 취업 등)에 대한 사항, 자원봉사시간 정보 등 <p>※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p>
보유·이용 기간	<p>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교육 프로그램 지원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 및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p>
수집·이용 동의여부	<p>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p>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p> <p style="text-align: 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p>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장학금 신청·선정·지급,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0조의5제2항 각호 등에 따른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행정기관(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과 교육청 등 그 산하기관) ▶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 장학재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본인이 소속 또는 소속 예정) ▶ 금융회사(은행, 카드사) 등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에 관한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하거나 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법인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구센터 포함) ■ 학자금 지원을 위한 기부금 기부처(푸른등대 기부장학금 등)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복공 성장 멘토링(1:1멘토링) 담당 멘토 ■ 업무위탁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업체 : 학자금 지원 관련 안내 및 상담업체, DM 발송업체, 장학생 교육업체, 조사전문업체, 연구용역수행자, 진로 컨설팅 대행업체, 멘토링 캠프(콘서트) 수행(대행)업체 및 관련 운영을 위한 보험업체, 장학증서 수여식 수행(대행)업체 및 관련 운영을 위한 보험업체 등 ▶ 재단은 수탁업체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제공·조회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시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중복 지원의 방지, 제50조의2 자료 제출의 요청, 제50조의4 자료 요구 및 질문 등을 위한 업무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재단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때닐조사 등)의 시행 ■ 장학재단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운영 및 관리 ■ 업무위탁업체에 대한 제공 : 장학사업,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진로 컨설팅 업무, 멘토링 캠프(콘서트) 운영, 장학증서 수여식 운영, 조사·연구, 상담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 법령상 의무이행 등
<p>제공·조회 및 요청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식별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소속,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학자금지원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금(재단외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국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등록금 정보, 초·중·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학생기록부 정보(내신정보, 학생부정보 등), 고객이 제공한 정보(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등 ■ 법적근거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등 ■ 위탁업체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전자정부법」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에 따라 제공·조회되는 정보 <p>※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p>
<p>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p>	<p>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장학재단법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등 장학금 사후관리,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관련 필요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p>
<p>제공·조회 동의 여부</p>	<p>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p>고유식별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p>	<p>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p>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p>	<p>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장학금 신청·선정·지급,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제공·조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p>3. 행정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은 학자금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다음과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만약 행정정보 이용에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에 근거하여 본인의 행정정보를 활용한 신청인의 장학재단법 제3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 포함)을 위한 매학기 신청, 변동정보의 관리 등의 업무처리 시에도 본인의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별도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정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국내거소사실증명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분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차상위 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외이주신고증명서, 해외이주신고증명서, 병적증명서, 건축물대장(총괄) 일반·집합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소득금액증명, 휴·폐업사실증명원, 고용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출입국정보, 자원봉사시간 정보 등 ▶ 행정정보 이용의 목적 및 이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분석,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 장학재단법 제50조의4(자료 요구 및 질문)

▶ 이용기관의 명칭: 한국장학재단

행정정보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

[선택적 동의사항]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위해 귀 재단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행정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학자금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행정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귀 재단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약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행정정보 제공·이용에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행정정보: 주민등록 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차상위 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등록정보 포함), 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등

* 위 사항은 선택적 동의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로 인한 관련 서비스는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하며, 본 내용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학생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동의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아래의 법정대리인 동의 필수
(법정대리인 1인의 서명(동의) 필요, 법정대리인 미동의 또는 법정대리인 본인이 아닌 타인 동의 시 장학생 선발 제한 등 불이익 발생)

동의자(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4. 신청인 동의서(학생)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장학금(이하 "학자금지원") 신청인으로서 신청 및 선정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할 시 장학생 자격 박탈 및 중단 등 학자금지원이 제한되거나 지급 받은 장학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이해하였고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장학생 의무(준수)에 관한 서약

1. 장학생은 학업 기간 중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
2. 장학생은 재단에서 제시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3. 장학생은 연락처, 주소 등 인적 사항 변경 시 재단에 즉시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의 귀책 사유는 장학생에게 있음(※문자 수신 비동의 포함)
4. 장학생은 계속장학금 신청 시 기본(학적)정보,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 장학생 기재 사항을 스스로 작성하고, 필요시 기타 서류 등을 직접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제출해야 함
5. 장학생은 계속장학금 신청 후 수정사항(필수보고서 등) 발생 여부를 재단에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수정사항 미보완으로 인한 자격중단 시 귀책 사유는 장학생에게 있음
6. 장학생은 재단이 매년 실시하는 장학생 성장도 측정조사 및 졸업 이후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진로 추적조사(상급학교 진학 또는 취업 등의 진로정보 조사 등)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함
7. 장학생은 장학금을 생활비 목적이 아닌 학업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카드의 부정 사용이나 목적 외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함
8. 장학생은 국가장학생으로서 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9. 장학생은 재단에서 요청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따라야 함
10. 장학생은 학적 변동 및 장학생의 자격 유지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재단에 신고해야 하며, 필수 서류 등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제출하여야 함

■ 장학금 지원 제한 및 '부정청구 등에 해당하는 학자금 수혜 시 처분 관련 동의

- ① 본인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시행 계획상 장학생 자격 박탈, 중단, 유예 사유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해당 사유 발생 시 장학생 자격이 변동되어 장학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기지급된 장학금이 환수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② 본인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로 재단의 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이익을 얻는 행위) 시, 동법 제6조(부정청구등 금지), 제7조(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받았으며, 이후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지원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학자금지원을 청구하는 행위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학자금지원보다 과다하게 학자금지원을 청구하는 행위
 - 다. 장학재단법, 학자금상환법 및 재단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학자금지원을 사용하는 행위
 - 라. 그 밖에 학자금지원이 잘못 지급된 경우

▶ 지원 제한 유형별 사유 및 조치사항

유형	사유	조치내용
자격 박탈	·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고의에 의한 허위로 판명된 경우	· 향후 신규장학생 신청 불가 · 장학금 지원중단(즉시 사용중단) · 허위청구 시점부터 수혜받은 장학금 (이자·제재 부가금 별도) 및 미사용 잔액 환수
	· ①정학·퇴학 등 징계를 받은 자, ②형사처벌(처분)을 받은 자, ③소속 학교 판단 하에 국가장학생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경우	· 향후 신규장학생 신청 불가 · 장학금 지원중단(즉시 사용중단) · 미사용 잔액 환수
	· 장학금의 장학생 외의 자(학부모 포함)가 개인 용도로 유용한 경우 등	· 향후 신규장학생 신청 불가 · 장학금 지원중단(즉시 사용중단) · 기 지원받은 장학금 중 부정사용 금액(이자·제재부가금 별도) 및 미사용 잔액 환수
	· 장학생이 수혜기간 중 타 장학금을 신청하여 이중수혜 받는 경우	· 향후 신규장학생 신청 불가 · 장학금 지원중단(즉시 사용중단) · 이중수혜 금액 및 미사용 잔액 환수

유형	사유	조치내용									
자격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보완심사 시 소득기준 확인 결과, 자격유예 (최대 3개월) 후에도 수급자격이 미충족하는 경우 · 장학금 부적정 사용횟수가 연 누적 3회인 자 · (중·고생) 자퇴, 휴학, 학년 미진급 등 자격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학업 중단 · (대학생) 자퇴, 제적 등 자격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학업 중단 · (고등학생) 직전 학년 성적 기준에 2회 이상 미달한 자 · (대학생) 직전 학기 이수학점·성적 기준에 2회 이상 미달한 자 · 자격유예 불성실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해당 유예기간이 소멸한 자 · 계속장학생 정기심사 미신청자 및 심사탈락자 · 멘토링 활동 결과보고서 미제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신규장학생 신청 가능 ※ 장학생 선발과 기존 수혜 여부는 무관 · 장학금 지원중단 · 미사용 잔액 환수(단, 지원종료일 기준 당월 말까지 사용 가능) · 계속장학생 정기심사 미신청자 및 심사탈락자, SOS장학생 대학교 미진학자의 경우 당해연도 4월 말까지 미사용 잔액 사용 가능 									
자격 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재지변 전사, 사변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 되어 일시적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 장학생 본인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 (대학생) 휴학으로 인한 학업 중단(군입대 포함) · (고교 졸업생) 고등학교를 졸업한 당해연도의 대학 미진학자로 계속장학생 정기심사를 통과한 자 ※ 유예기간은 졸업 당해연도 3월부터 차년도 신입학 확정 시(2월) 까지로 1회에 한하여 적용 · 계속지원 심사(정기·보완) 시 소득기준 자격 미충족 시 최대 3개월 자격유예 및 수급자격 재점검 · 매년 장학생의 활동 점검 결과, 활동 내용이 불성실한 경우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 rowspan="4">불성실 기준</td> <td>장학생 연락 두절*</td> <td>3개월</td> </tr> <tr> <td>장학금 부정사용 소명 불응</td> <td>3개월</td> </tr> <tr> <td>대학졸업자 보고서 미제출</td> <td>2개월</td> </tr> <tr> <td>사회공헌활동 의무 불이행</td> <td>3개월</td> </tr> </table> <p>* 재단 최초 연락일부터 90일 기준</p>	불성실 기준	장학생 연락 두절*	3개월	장학금 부정사용 소명 불응	3개월	대학졸업자 보고서 미제출	2개월	사회공헌활동 의무 불이행	3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예기간 동안 장학금 지원중단 · 미사용 잔액은 장학금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 가능 · 사유 해소 시 자격복구 ※ 단, 유예기간 중 발생한 미지급 장학금은 소급 지원 불가
불성실 기준	장학생 연락 두절*		3개월								
	장학금 부정사용 소명 불응		3개월								
	대학졸업자 보고서 미제출		2개월								
	사회공헌활동 의무 불이행	3개월									

본인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 상의 모든 내용에 대하여 전부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4년 월 일 학생 성명 : (서명 또는 인)

※ 동의 절차 미완료시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 최종 선발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모든 내용을 확인 후 자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서식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치 동의서 및 학부모 동의서
(법정대리인 및 보호자용)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치 동의서 및 학부모 동의서(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용)

한국장학재단 귀중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학자금 신청인(중고교생)의 학자금지원(장학금지급, 이하 '학자금지원')과 관련하여 본인(본인'이라함은 신청인, 신청인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학재단법') 제50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재단이 신청인의 학자금지원을 위해 장학재단법 제16조 및 제50조의2, 제50조의4에 따라 본인의 학자금지원 자격요건 파악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아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치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이 동의서에 근거하여 본인의 행정정보를 활용한 신청인의 장학재단법 제3조에 따른 초·중등·고등교육 기관에 재학(입학, 복학 재입학, 편입 휴학 등 포함)을 위한 신청, 장학생 계속지원 확인, 변동정보의 관리 등의 업무처리 시에도 본인의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별도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자금지원 의사결정 여부 판단 ■ 학자금지원 신청자와의 가족관계(부, 모, 법정대리인) 확인 ■ 학자금지원 신청자 및 가구원의 저소득자자격정보 파악 및 계속적 학자금지원을 위한 변동정보 관리 ■ 법령상 의무이행, 고객만족도 조사,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 장학재단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장학재단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 분석 ■ 장학재단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 사업관리 ■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기타 장학재단법 제16조, 제50조의2, 제50조의4 업무 수행
수집·이용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식별)정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 번호 등 연락처 ■ 학자금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정보, 자격정보, 주민등록정보 등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동법 시행령 제33조의7 및 기타 자격 확인을 위한 정보 가구원 확인 :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자격정보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장애인정보 등, 차상위자격(자활, 장애인, 한부모, 본인 부담경감대상, 우선돌봄) 정보,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등 학사정보 등 : 학자금 신청인(중고교생)의 초·중등·고등교육기관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학생기록부 정보(내신정보, 학생부정보 등) <p>※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식별정보 외에 학자금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사항 등
보유·이용 기간	<p>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장학재단법 제16조,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p>
수집, 이용 동의 여부	<p>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고유식별 정보 동의 여부	<p>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포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p> <p style="text-align: 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p>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학자금지원 등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학자금 신청·선정·지급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조회에 관한 사항

<p>제공, 조회 대상 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각호 등에 따른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행정기관(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과 교육청 등 그 산하기관) ▶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포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업무위탁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업체 : DM 발송업체, 조사전문업체, 멘토링 캠프(콘서트) 수행업체 및 관련 운영을 위한 보험업체, 장학증서 수여식 수행(대행)업체 및 관련 운영을 위한 보험업체, 연구용역수행자 등 ▶ 재단은 위탁업체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p>제공, 조회의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자금 신청자 및 가구원(부,모)의 자격을 파악하여 학자금 지원(계속적 학자금지원 포함)을 위한 심사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 장학재단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장학재단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 사업관리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기타 장학재단법 제16조, 제50조의2, 제50조의4 업무 수행
<p>제공, 조회 및 요청할 개인 정보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식별)정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 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학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정보, 자격정보, 주민등록정보 등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동법 시행령 제33조의7 및 기타 자격 확인을 위한 정보 가구원 확인 :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자격정보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장애인정보 등, 차상위자격(자활, 장애인, 한부모, 본인 부담경감대상, 우선돌봄) 정보,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등 학사정보 등 : 학자금 신청인(중고교생)의 초·중·고등교육기관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학생기록부 정보(내신정보, 학생부정보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
<p>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p>	<p>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장학재단법 제16조,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재단의 리스크 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p>
<p>제공,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p>	<p>재단의 조회 결과 신청인의 학자금지원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학자금 지원 종료까지 또는 신청인이 장학재단법 제3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졸업할 때까지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p>
<p>제공, 조회 동의 여부</p>	<p>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p>고유 식별정보 동의여부</p>	<p>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포함)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p>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p>	<p>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학자금지원 등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학자금 신청·선정·지급에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3. 행정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

- 본인은 학자금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다음과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만약 행정정보 이용에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에 근거하여 본인의 행정정보를 활용한 신청인의 장학재단법 제3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 포함)을 위한 매학기 신청, 변동정보의 관리 등의 업무처리 시에도 본인의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별도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 행정정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국내거소사실증명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외이주신고증명서, 해외이주신고증명서, 병적증명서, 건축물대장(총괄) 일반·집합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소득금액증명, 휴·폐업사실증명원, 고용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출입국정보 등

▶ 행정정보 이용의 목적 및 이용범위:

-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분석,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 장학재단법 제50조의4(자료 요구 및 질문)

▶ 이용기관의 명칭: 한국장학재단

행정정보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

[선택적 동의사항]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위해 귀 재단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행정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학자금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행정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귀 재단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약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행정정보 제공·이용에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행정정보: 주민등록 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차상위 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등록정보 포함), 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등

* 위 사항은 선택적 동의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 동의로 인한 관련 서비스는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4. 학부모 동의서

■ 학부모로서의 의무(준수)에 관한 서약

본인은 신청자의 학부모(또는 보호자, 후견인, 법정대리인)로서 장학생으로 선발 시 학업을 수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원하겠으며, 장학생이 받은 장학금은 장학생의 학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만약 장학금으로 사회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음주, 흡연, 마약, 사기, 도박 등) 등에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학부모 개인 용도로 유용할 경우 장학생 자격 박탈 및 지원받은 장학금의 환수까지 이어질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행정정보의 이용, 학부모 동의서 상의 모든 내용에 대하여 전부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4년 월 일

동의자(부)	주민등록번호		성 명		(서명)
	주소(자택)		가족관계	*부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 입력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E-mail		
동의자(모)	주민등록번호		성 명		(서명)
	주소(자택)		가족관계	*모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 입력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E-mail		

서식4

(꿈장학금) 나의 꿈 도전 계획서(학업계획서) 표지

나의 꿈 도전계획서(학업계획서)

□ 학생 기본정보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성별	남, 여
소속 학교	(시/도)	(시/군/구)	학교		
학년	반				
장래희망	특이사항(해당시)		(예시: 탈북, 한부모가족 등 기타 특이사항 기재)		

평가 안내 및 유의사항

1. 블라인드 평가

- 평가과정의 공정성을 강화를 위해 신청자의 개인정보(성명, 지역, 소속 학교명 등)를 사전에 블라인드 처리하여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차단하고 신청자의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 꿈 평가단(교원, 복지·인재개발전문가, 입학사정관 등)이 평가를 하며, 각 평가 항목에 대해 신청자가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역량, 잠재력 및 발전가능성,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2. 신청자 유의사항

- 신청자는 블라인드 평가임을 유의하시어, 「나의 꿈 도전계획서(학업계획서)」 작성 시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성명, 지역, 소속 학교명 등)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을 밝히는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의 꿈 도전계획서(학업계획서)」는 **총 2페이지 이내로 반드시 장학금 신청자 본인(학생)이 직접 작성**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허위 또는 과장 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재 사항에 문제가 있는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학년별(중학교 1학년, 중학교 2~3학년, 고등학교) 「나의 꿈 도전계획서(학업계획서)」 평가 문항이 다르므로,** 신청자 본인의 학년에 맞는 「나의 꿈 도전계획서(학업계획서)」 양식을 명확히 확인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중 1: **서식6**, 중 2~3: **서식7**, 고: **서식8**)

부정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선발 이후라도 장학생 자격이 박탈되며, 향후 장학생 신청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공공재정환수법 등에 따라 지급된 장학금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 등 법적 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5

(다문화 장학금) 나의 꿈 도전 계획서(학업계획서) 표지

나의 꿈 도전계획서(학업계획서)

□ 학생 기본정보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성별	남, 여
소속 학교	(시/도)	(시/군/구)	학교		
학년	반				
장래희망	다문화가족 해당 여부		여/부		

위 학생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학생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평가 안내 및 유의사항

1. 블라인드 평가

- 평가과정의 공정성을 강화를 위해 신청자의 개인정보(성명, 지역, 소속 학교명 등)를 사전에 블라인드 처리하여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차단하고 신청자의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 다문화 평가단(교원, 복지·인재개발전문가, 입학사정관 등)이 평가를 하며, 각 평가 항목에 대해 신청자가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역량, 잠재력 및 발전가능성,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2. 신청자 유의사항

- 학교장 직인은 필수사항**이며 누락 시에는 서류 심사단계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출 전 날인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는 블라인드 평가임을 유의하시어, 「나의 꿈 도전계획서(학업계획서)」 작성 시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성명, 지역, 소속 학교명 등)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을 밝히는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의 꿈 도전계획서(학업계획서)」는 **총 2페이지 이내로 반드시 장학금 신청자 본인(학생)이 직접 작성**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허위 또는 과장 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재 사항에 문제가 있는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학년별(중학교 1학년, 중학교 2~3학년, 고등학교) 「나의 꿈 도전계획서(학업계획서)」 평가 문항이 다르므로,** 신청자 본인의 학년에 맞는 「나의 꿈 도전계획서(학업계획서)」 양식을 명확히 확인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 1: **서식 6**, 중 2~3: **서식 7**, 고: **서식 8**)

부정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선발 이후라도 장학생 자격이 박탈되며, 향후 장학생 신청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공공재정환수법 등에 따라 지급된 장학금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 등 법적 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6

중학교 1학년용 _ (꿈·다문화 장학금) 나의 꿈 도전 계획서(학업계획서)

- ※ 총 2쪽 이내로 작성하며, 문항별 작성 분량은 제한 없음
- ※ 소속 학교명 및 학생 이름 등 신청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절대 작성하지 마시기 바람 (위반 시 감점과 탈락 사유가 됨)
- ※ 평가위원의 가독성을 위하여 계획서는 컴퓨터(한글 HWP)로 작성을 권고(불가시 자필 작성도 가능)

1-1. 자신이 도전하고 싶은 일이나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컴퓨터로 작성 시) 11 point로 작성하며, 줄 간격은 조정 가능(작성 시 설명 문구는 삭제 요망)

1-2.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2-1. 어려운 이웃(친구)에게 배려를 실천한 경험과 느낀점을 작성해 주세요.

2-2. 친구들과 협력하여 과제를 완성했었던 경험과 느낀 점을 작성해 주세요.

3-1. 장학금을 신청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3-2. 자신의 꿈과 학업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작성해 주세요.

서식7

중학교 2~3학년용 _[꿈·다문화 장학금] 나의 꿈 도전 계획서 (학업계획서)

- ※ 총 2쪽 이내로 작성하며, 문항별 작성 분량은 제한 없음
- ※ 소속 학교명 및 학생 이름 등 신청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절대 작성하지 마시기 바람 (위반 시 감점과 탈락 사유가 됨)
- ※ 평가위원의 가독성을 위하여 계획서는 컴퓨터(한글 HWP)로 작성을 권고(불가시 자필 작성도 가능)

1. 장래희망에 대해 쓰고, 향후 장학생으로서 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컴퓨터로 작성 시) 11 point로 작성하며, 줄 간격은 조정 가능(작성 시 설명 문구는 삭제 요망)

2. 배려, 나눔, 협력 등을 실천한 경험을 쓰고, 그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장학금을 신청한 이유를 쓰고, 자신의 꿈을 키우기 위해 장학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8

고등학교용 _ (꿈·다문화 장학금) 나의 꿈 도전 계획서 (학업계획서)

- ※ 총 2쪽 이내로 작성하며, 문항별 작성 분량은 제한 없음
- ※ 소속 학교명 및 학생 이름 등 신청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절대 작성하지 마시기 바람 (위반 시 감점과 탈락 사유가 됨)
- ※ 평가위원의 가독성을 위하여 계획서는 컴퓨터(한글 HWP)로 작성을 권고(불가시 자필 작성도 가능)

1. 장래희망에 대해 쓰고, 그동안 장래 희망을 달성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과 함께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해 향후 장학생으로서의 학업계획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컴퓨터로 작성 시) 11 point로 작성하며, 줄 간격은 조정 가능(작성 시 설명 문구는 삭제 요망)

2. 배려, 나눔, 협력 등을 실천한 경험을 쓰고, 그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장학금을 신청한 이유를 쓰고, 자신의 꿈을 키우기 위해 장학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9

멘토링 활동 계획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정보공개동의서(멘토용)

2024학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꿈·다문화 장학금 지원자용

멘토링 활동 계획서

학생	성명		학교	
멘토	성명		소속기관	직위
	휴대전화	() -	이메일	
	학생과의 관계			
	학생과의 교류기간	년	개월 (년 월 ~ 년 월)

멘토 신청 동기

- ※ 작성요령 (작성 시 설명 문구는 삭제 요망)
- 이하 본문내용은 11 point로 작성하며, 줄 간격은 조정 가능
 - 멘토링 활동 계획서는 총 1쪽 이내로 작성

멘토링 활동 계획

<장학생 확인란> 본인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으로 멘토링 활동에 성실히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장학생 성명 _____(서명 또는 인)

<멘토 확인란> 본인은 위 학생이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으로 활동 시 우수인재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멘토링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멘토 성명 _____(서명 또는 인)

<학교장 확인란> 본인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멘토링 활동에 참여하는 멘토의 자격 조건에 결격사유가 없음과 위 계획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학 교 장 _____ (직 인)

2024년 월 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멘토링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정보공개 동의서(멘토용)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장학재단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선발·운영 및 사후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더불어, 동 목적을 위해 멘토링에 필요한 정보를 재단 홈페이지, 멘토링 매뉴얼 등을 통해 공개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 집 및 이 용 목 적	재단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의 선발·운영 및 사후관리를 위해 사용됩니다. 본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멘토링 활동 점검, 수여식 행사, 홍보 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개 인 정 보 항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사항(사진, 성명, 성별, 나이, 주민등록번호, 소속, 주소, 은행계좌정보 등), 경력사항, 연락처(이메일, 전화번호), 기타 멘토링 사업 참여를 위해 본인이 작성한 관련 정보
보유 및 이용 기 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사업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종료 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재단의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장학생 선발 제한,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제한 및 각종 지원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위탁에 대한 별도 동의

제 공 목 적	재단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의 운영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한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공 받 는 관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업체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수여식, 멘토링 캠프 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사후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업체 및 관련 운영을 위한 보험업체 연구용역수행자 등 국세청(기타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개 인 정 보 항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사항(사진, 성명, 성별, 나이, 주민등록번호, 소속, 주소, 은행계좌정보 등), 경력사항, 연락처(이메일, 전화번호), 기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멘토링 사업 참여를 위해 본인이 작성한 관련 정보
보유 및 이용 기 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사업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종료 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위탁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단의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장학생 선발 제한,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제한 및 각종 지원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위탁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3. 정보공개에 대한 동의

공 개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 및 경력사항(사진, 이름, 성별, 소속) ■ 멘토링 운영계획서 및 그와 관련된 정보(활동내용, 주제 등)
정 보 공 개 의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활동 사례 안내 시 멘토 정보 제공(홈페이지, 책자 등)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멘토 소개(멘토링 매뉴얼 등)

※ 귀하는 위의 정보공개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단의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정보공개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정보공개에 대해 동의합니다.

2024. . .

성명 : (서명)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11

중학교 1학년용 _ (SOS 장학금) SOS 장학금 신청서

- ※ 총 2쪽 이내로 작성하며, 문항별 작성 분량은 제한 없음
- ※ 소속 학교명 및 학생 이름 등 신청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절대 작성하지 마시기 바람 (위반 시 감점과 탈락 사유가 됨)
- ※ 평가위원의 가독성을 위하여 계획서는 컴퓨터(한글 HWP)로 작성을 권고(불가시 자필 작성도 가능)

1-1. [학생 본인 작성] 자신이 도전하고 싶은 일이나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컴퓨터로 작성 시) 11 point로 작성하며, 줄 간격은 조정 가능(작성 시 설명 문구는 삭제 요망)

1-2. [학생 본인 작성]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2-1. [학생 본인 작성] 어려운 이웃(친구)에게 배려를 실천한 경험과 느낀 점을 작성해 주세요.

2-2. [학생 본인 작성] 친구들과 협력하여 과제를 완성했었던 경험과 느낀 점을 작성해 주세요.

3-1. [학생 본인 작성] 장학금을 신청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3-2. [학생 본인 작성] 자신의 꿈과 학업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작성해 주세요.

4. [보호자 작성]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과 해당 학생이 장학금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설명은 삭제하신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본 문항은 학생의 보호자(교사, 부모 등)가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3번 문항(학생 작성 부분)이 완료된 이후 작성하시기 바라며, 만약 본 문항 이외에 다른 문항(1~3번)을 보호자가 대리 작성한 경우가 확인될 시에는 최저점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12

중학교 2~3학년용 _ (SOS 장학금) SOS 장학금 신청서

- ※ 총 2쪽 이내로 작성하며, 문항별 작성 분량은 제한 없음
- ※ 소속 학교명 및 학생 이름 등 신청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절대 작성하지 마시기 바람 (위반 시 감점과 탈락 사유가 됨)
- ※ 평가위원의 가독성을 위하여 계획서는 컴퓨터(한글 HWP)로 작성을 권고(불가시 자필 작성도 가능)

1. **[학생 본인 작성]** 장래희망에 대해 쓰고, 향후 장학생으로서 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컴퓨터로 작성 시) 11 point로 작성하며, 줄 간격은 조정 가능(작성 시 설명 문구는 삭제 요망)

2. **[학생 본인 작성]** 배려, 나눔, 협력 등을 실천한 경험을 쓰고, 그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학생 본인 작성]** 장학금을 신청한 이유를 쓰고, 자신의 꿈을 키우기 위해 장학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보호자 작성]**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과 해당 학생이 장학금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설명은 삭제하신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본 문항은 학생의 보호자(교사, 부모 등)가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3번 문항(학생 작성 부분)이 완료된 이후 작성하시기 바라며, 만약 본 문항 이외에 다른 문항(1~3번)을 보호자가 대리 작성한 경우가 확인될 시에는 최저점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13

고등학교용 _ (SOS 장학금) SOS 장학금 신청서

- ※ 총 2쪽 이내로 작성하며, 문항별 작성 분량은 제한 없음
- ※ 소속 학교명 및 학생 이름 등 신청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절대 작성하지 마시기 바람 (위반 시 감점과 탈락 사유가 됨)
- ※ 평가위원의 가독성을 위하여 계획서는 컴퓨터(한글 HWP)로 작성을 권고(불가시 자필 작성도 가능)

1. **[학생 본인 작성]** 장래희망에 대해 쓰고, 그동안 장래 희망을 달성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과 함께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해 향후 장학생으로서의 학업계획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컴퓨터로 작성 시) 11 point로 작성하며, 줄 간격은 조정 가능(작성 시 설명 문구는 삭제 요망)

2. **[학생 본인 작성]** 배려, 나눔, 협력 등을 실천한 경험을 쓰고, 그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학생 본인 작성]** 장학금을 신청한 이유를 쓰고, 자신의 꿈을 키우기 위해 장학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보호자 작성]**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과 해당 학생이 장학금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설명은 삭제하신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본 문항은 학생의 보호자(교사, 부모 등)가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3번 문항(학생 작성 부분)이 완료된 이후 작성하시기 바라며, 만약 본 문항 이외에 다른 문항(1~3번)을 보호자가 대리 작성한 경우가 확인될 시에는 최저점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II. 장학생 계속 지원 및 사후관리

1. 계속 지원 및 사후관리 개요	76
2. 장학생 계속 지원 심사	77
2.1. 정기심사	77
2.2. 보완심사	86
3. 계속 장학생 장학금 지원	87
4. 장학생 및 멘토 준수·유의사항	88
5. 장학생 사후관리	89
[별첨] 참고 및 신청 관련 서식	93
[참고1] 복꿈 성장 멘토링(1:1멘토링) 관련사항	93
[참고2] 복지자격 서류 목록(수급자격 전산확인 불가자용) ·	95
[참고3]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96
[참고4]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양식	97
[참고5] 학적변동 휴학 시 장학금 지급관리 방법 ...	100
[서식1] 나의 성장 기록(학업보고서)	101
[서식2] 멘토링 활동 결과보고서	103
[서식3] 멘토링 미활동 소명서	105
[서식4] 학적변경 신청서	106
[서식5] 장학생 포기 확인서(중·고교생)	107
[서식6] 장학생 포기 확인서(대학생)	108

장학생 계속 지원 및 사후관리

1 계속 지원 및 사후관리 개요

1. 추진목적 및 대상

□ 추진목적

- 장학생의 학업의지를 유지하고 장학금 수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장학생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점검

□ 관리대상

- '19~'24년 선발된 꿈사다리 장학생(SOS 장학생 제외) 중 심사일 기준 계속 지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장학생

※ SOS 장학생은 한시적 장학금 지원 대상으로 심사에서 제외하나, 학업중단·학년 미진학 등 지원 제한 사유 확인 시 장학금 지원중단 등 후속 조치 실행

2. 주요내용 및 시기

□ 장학생 계속 지원 심사 ⇨ 상세내용은 <2 장학생 계속 지원 심사> 참고

- 정기심사(3월) : 차년도 장학금 계속 지원을 위한 기본요건(소득 및 성적기준(고등학생 및 대학생) 등) 및 학적, 필수보고서 제출 여부 등을 종합 점검
- 보완심사(8월) : 2학기 장학금 계속 지원을 위한 기본요건(소득 및 성적기준(대학생) 등) 및 학적 등 중간 점검

□ 장학생 사후관리 ⇨ 상세내용은 <5 장학생 사후관리> 참고

- 지원제한 사유 점검(상시) : 학교폭력, 징계 등 장학금 지원 제한 사유 해당 여부
- 후속조치(상시) : 지원 제한 사유별 장학생 자격중단 및 장학금 반환 등 조치 실행

2 장학생 계속 지원 심사

1. 정기심사

□ 목적

- 장학생의 지원 자격 및 멘토링 활동 여부 등 장학생 준수사항 종합 점검을 통한 차년도 계속 지원 장학생 선발

□ 심사 대상

- 꿈사다리 장학생 중 정기심사일 기준 계속 지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 ※ SOS 장학생은 한시적 장학금 지원 대상으로 심사에서 제외하나, 학업 중단 및 학년 미진학 등 지원 제한 사유 확인 시 장학금 지원중단

□ 신청 일정

- 2024. 12. ~ 2025. 03.(※심사 결과는 '25. 3월 중 발표)

□ 신청 절차

- ① 장학생 : 학적, 필수보고서 작성 등 차년도 계속장학금 신청
- ② 멘토 : 장학생이 제출한 멘토링 활동 결과보고서 점검 및 종합 의견 작성 등 차년도 계속장학금 신청을 위한 점검 이행
- ③ 재단 : 차년도 계속장학생 심사 · 선발

구분	계속장학금 신청	멘토 점검	심사 및 선발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장학금 신청 • 필수보고서 작성 • 기타 증빙서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멘토링 활동 점검 및 의견 작성 • 멘토 서약서 갱신 • 장학생 자격기준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생 신청자격 점검 • 보고서 제출 점검 • 의무사항 이행여부 점검 ↳ 최종 장학생 선발
주체	장학생	멘토	재단
일정	`24. 12월 ~ `25. 3월	`24. 12월 ~ `25. 3월	~ `25. 3월 중

※ 상세내용은 [p.78-계속장학금 신청 및 멘토 점검 방법(정기심사)] 참고

[계속장학금 신청 및 멘토 점검 방법(정기심사)]

① (장학생·멘토) 서비스 이용자 등록(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s://www.kosaf.go.kr>)

- 장학생 및 멘토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서비스 이용자 등록**
 -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https://www.kosaf.go.kr>)
 - ② 서비스 이용자 등록 클릭 → 약관동의, 실명확인, 기타 정보 입력 후 서비스 이용자 등록 완료

※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계속장학금 신청 가능(※학자금지원시스템을 통한 멘토 권한 부여자 포함)

② (장학생) 계속장학금 신청

- 장학생은 계속장학금 신청을 위한 기본정보(학적 포함) 입력 및 필수보고서 작성·제출
 - ①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 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메뉴 선택 > ‘계속장학금 신청’ > ‘장학금신청(학생)’ 선택
 - ▶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장학금 > 국가우수 장학금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 계속장학금 신청 > 장학금신청(학생)
 - ② **신청정보** 입력(학적정보, 연락처 등), **필수보고서**(나의 성장 기록, 멘토링 활동 결과보고서 등) 작성 및 **기타 서류**(학적변경 신청서 등) 제출 후 신청 완료
 - ※ 계속장학금 「신청 매뉴얼」은 추후 별도 게시 예정(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 ※ 전산상 수급 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장학생은 계속장학금 신청 기간 내 발급한 수급 자격 소명 서류를 별도로 재단에 제출(대상자 개별 안내 예정)

③ (멘토) 멘토링 활동 점검 등(중1~고3(예비 대학생 및 재수예정자))

- 멘토는 장학생이 작성한 멘토링 활동 결과보고서 및 장학생 자격기준 점검, 멘토 서약서 갱신 진행
 - ①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 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메뉴 선택 > ‘계속장학금 선택’ > ‘멘토점검(멘토)’ 선택
 - ▶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장학금 > 국가우수 장학금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 계속장학금 선택 > 멘토점검(멘토)
 - ② 장학생 조회 후 **멘토링 활동 결과보고서 점검**(학기별 활동 횟수, 활동 내용 등) 및 **멘토 의견 작성**
 - ③ **멘토서약서 동의 및 장학생의 자격 기준 점검**
 - ※ 「멘토점검 매뉴얼」은 정기심사 기간 도래 시 안내 예정(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 사항)

□ 점검사항(계속 지원 기준)

✓ 계속장학생 유의사항 ✓

※ 학제·학년별 계속 지원 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대내외 상황에 따라 지원수준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 정책 결정에 따라 계속 지원 장학생에 대한 자격 기준 요구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꿈사다리 장학생(SOS 장학생 제외) 계속 지원 기준 >

구분		중1~중2	중3~고2	고3('25년 대학 입학 및 미진학자)	대학교 재학생
기본요건		• (공통)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국내 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 / 연령은 무관			
학적		• 소속학교 학년 진급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 예정인 자 ※ 단, 당해연도 고교 졸업예정자 중 재수생 및 학업 관련 선행 과정으로 대학교에 미진학하는 경우 예외 적용(상세내용은 p.82 참고)			
소득		• 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교과	성적	-	• 직전학년 평균 7등급 이내 또는 C등급 이상 ※ 직전학년 2회 이상 기준 미달 시 자격중단	-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백분위 80점 이상 ※ 직전학기 2회 이상 기준 미달 시 자격중단
비교과	출결	• 직전 학년 미인정 결석 10일 미만			-
	사회공헌	-			• ①재단 지정 프로그램 참여 또는 ②봉사활동 30시간 중 택1
	기타	• 학교폭력, 징계 등 소속학교 재학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자			
멘토링 활동		• 학기별 2회, 연 4회 이상 의무 활동 - (1학기) 3~8월, (2학기) 9~12월			-
필수보고서 제출		• 나의 성장 기록(학업보고서) • 멘토링 활동결과 보고서			• 나의성장기록(학업보고서)* * 졸업 예정자의 경우, 정규 졸업 학기 종료 2개월 전 先 제출
이중수혜		①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②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으로 특정되는 경우이며, 보편적 복지 성격은 제외 ③ 단순 생활비성 장학금(식비, 기숙사, 생활비 무상보조 등),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의 경우 이중수혜 판단 대상에서 제외 ④ 단순 1회성 장학금이 아닌 특정 기간 정기적으로 지속 지원(2회 이상)받는 장학금을 수혜받는 경우를 의미 ※ ①+②+③+④의 요건을 모두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이중수혜로 간주			

※ 한시적 지원 대상인 SOS 장학생은 계속 지원 심사에서 제외(단, 지원 제한 사유 발생 시 자격중단)

2. 정기심사 세부 기준

① 중학교 1학년 ~ 중학교 2학년 재학생

① (학적 상태) 중학교* 학년 진급 예정인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학교

②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

* 가구원(본인, 부모, 배우자) 중 1인 이상 수급자격 보유(조손가정의 경우 학생 및 조부모 중 1인 이상 수급자격 보유 시 인정)

* 수급자격 전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명자료 제출 필요(대상자 개별 통보 예정)

③ (비교과 기준) 직전 학년 출결 및 사회적 물의 여부 등 점검

대상	내용
출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전 학년 미인정 결석 10일 미만 ※ 미인정 지각·조퇴·결과 합산 3회당 결석 1일로 간주함 ※ 장학생 소속 학교에서 자격점검을 통해 미인정 결석 여부를 확인하고 출결 미달 사유 확인 시 한국장학재단으로 자격변동 신고
사회적 물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폭력, 징계 등 소속 학교 재학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자 ※ 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자격중단 처리

* ①정학·퇴학 등 징계받은 자, ②형사처벌(처분)을 받은 자, ③「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6호, 제8~9호에 해당하는 자

④ (멘토링 활동) 학기별 2회, 연간 4회 이상 멘토링 활동 필수

⑤ (필수보고서) ①멘토링 활동 결과보고서 및 ②나의 성장 기록(학업보고서) 제출

구분	작성 내용
멘토링 활동 결과보고서	장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기별 2회, 연간 4회 이상 실시한 멘토와의 활동 내용 작성 ※ (1학기) 3~8월, (2학기) 9~12월 ※ '24년 7월 선발된 꿈·다문화 장학생은 2학기에 총 2회 이상 활동 필수
	멘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멘토링 활동 점검(횟수, 활동 내용 등) 멘토 서약서 갱신 장학생 자격 기준 점검(직전 학년 출결, 사회적 물의 여부)
나의 성장 기록 (학업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학생 진로 개발 활동, 학업 현황 등을 작성

※ 필수보고서는 장학생 작성이 원칙이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작성·제출

②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① (학적 상태) 고등학교* 진학 또는 고등학교* 학년 진급 예정인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학교(단, 2023년 장학생선발관리위원회 및 2024년 1학기 정기심사에 따라 기존 승인받은 장학생은 졸업시까지 계속지원)

②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

* 가구원(본인, 부모, 배우자) 중 1인 이상 수급자격 보유(조손가정의 경우 학생 및 조부모 중 1인 이상 수급자격 보유 시 인정)

* 수급자격 전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명자료 제출 필요(대상자 개별 통보 예정)

③ (교과 기준) 직전학년 성적에 대한 최소 자격요건 충족

- 직전 학년 성적기준을 2회 이상 미충족 시 자격중단 처리

대상	최소 교과기준	성적 산출 기준
중3	직전 학년 평균 C등급 이상	직전 학년(학기 구분 없음) 이수 과목 중 총 6개 과목*을 선택하여 성적 입력하고, 그 평균이 C등급 이상 *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역사 포함), 도덕, 기술·가정, 정보 중에서 과목 선택 ※ 단, 직전 학년이 자유학년(기)제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학년(기)가 PASS일 경우 인정(전 과목 PASS)
고1~고2	직전 학년 평균 7등급 이내 또는 C등급 이상	직전 학년(학기 구분 없음)의 7등급 이내 또는 C등급* 이상인 12단위(학점) 이상 과목**을 선택하여 성적 입력(최대 12과목까지 입력 가능) * 3단계 성취도(A~C) 과목은 B등급 이상 **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한국사, 사회, 제2외국어, 과학계열(전문교과Ⅰ), 외국어계열(전문교과Ⅰ) 전문교과Ⅱ 중에서 과목 선택 ※ 석차등급과 성취도가 모두 산출되는 과목은 석차등급을 기준으로 성적 입력

④ (비교과 기준) 직전 학년 출결 및 사회적 물의 여부 등 점검

대상	내용
출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전 학년 미인정 결석 10일 미만 ※ 미인정 지각·조퇴·결과 합산 3회당 결석 1일로 간주함 ※ 장학생 소속 학교에서 자격점검을 통해 미인정 결석 여부를 확인하고 출결 미달 사유 확인 시 한국장학재단으로 자격변동 신고
사회적 물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폭력, 징계 등 소속 학교 재학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자 ※ 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자격중단 처리

* ①정학·퇴학 등 징계받은 자, ②형사처벌(처분)을 받은 자, ③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6호, 제8~9호에 해당하는 자

⑤ (멘토링 활동) 학기별 2회, 연간 4회 이상 멘토링 활동 필수

⑥ (필수보고서) ①멘토링 활동 결과보고서 및 ②나의 성장기록(학업보고서) 제출

구분		작성 내용
멘토링 활동 결과보고서	장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기별 2회, 연간 4회 이상 실시한 멘토와의 활동 내용 작성 ※ (1학기) 3~8월, (2학기) 9~12월 ※ '24년 7월 선발된 꿈·다문화 장학생은 2학기에 총 2회 이상 활동 필수
	멘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멘토링 활동 점검(횟수, 활동 내용 등) • 멘토 서약서 갱신 • 장학생 자격 기준 점검(직전 학년 출결, 사회적 물의 여부)
나의 성장 기록 (학업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생 진로 개발 활동, 학업 현황 등을 작성

※ 필수보고서는 장학생 작성이 원칙이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작성·제출

③ 고등학교 3학년('25년 대학 입학 및 미진학자)

① (학적 상태) 대학교 진학 예정 및 대학교 미진학자

- 단, 대학교 미진학자*는 고등학교 졸업 당해 연도에 한하여 계속 지원 장학금 신청 및 심사 승인 시 1년간 자격유예**

* (미진학자) 재수생 및 사관학교 훈련, 실습과정 수료 등 대학 입학 관련 선행 과정 수료 필요자

** (유예기간) 고등학교 졸업 당해연도 3월부터 차년도 신입학 확정 시(2월)까지

※ 자격 유예는 1회만 가능하며 차년도 계속 지원 장학금 신청 필수(나의 성장 기록 필수 제출)

<지원 가능한 대학>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대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대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②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

- * 가구원(본인, 부모, 배우자) 중 1인 이상 수급자격 보유(조손가정의 경우 학생 및 조부모 중 1인 이상 수급자격 보유 시 인정)
- * 수급자격 전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명자료 제출 필요(대상자 개별 통보 예정)

③ (비교과 기준) 직전 학년 출결 및 사회적 물의 여부 등 점검

대상	내용
출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 학년 미인정 결석 10일 미만 ※ 미인정 지각·조퇴·결과 합산 3회당 결석 1일로 간주함 ※ 장학생 소속 학교에서 자격점검을 통해 미인정 결석 여부를 확인하고 출결 미달 사유 확인 시 한국장학재단으로 자격변동 신고
사회적 물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징계 등 소속 학교 재학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자 ※ 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자격중단 처리

- * ①정학·퇴학 등 징계받은 자, ②형사처벌(처분)을 받은 자, ③「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6호, 제8~9호에 해당하는 자

④ (멘토링 활동) 학기별 2회, 연간 4회 이상 멘토링 활동 필수

⑤ (필수보고서) ①멘토링 활동 결과보고서, ②나의 성장 기록(학업보고서) 제출

구분	작성 내용
멘토링 활동 결과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기별 2회, 연간 4회 이상 실시한 멘토와의 활동 내용 작성 ※ (1학기) 3~8월, (2학기) 9~12월 ※ '24년 7월 선발된 꿈·다문화 장학생은 2학기에 총 2회 이상 활동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멘토링 활동 점검(횟수, 활동내용 등) • 멘토서약서 갱신 • 장학생 자격 기준 점검(직전 학년 출결, 사회적 물의 여부)
나의 성장 기록 (학업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생 진로개발 활동, 학업 현황 등을 작성

※ 필수보고서는 장학생 작성이 원칙이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작성·제출

4 대학교 재학생

① (학적 상태) 지원 가능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 재입학, (타학교)신입학, 편입, 전공심화 과정에 진학 예정인 자 포함

②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

* 가구원(본인, 부모, 배우자) 중 1인 이상 수급자격 보유(조손가정의 경우 학생 및 조부모 중 1인 이상 수급자격 보유 시 인정)

* 수급자격 전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명자료 제출 필요(대상자 개별 통보 예정)

③ (교과 기준) 최소 이수학점 및 성적기준 적용

- 직전 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기준을 2회 이상* 미충족 시 자격중단 처리

* 재입학·(타학교)신입학·편입·전공심화과정의 경우에도 종전 학교에서의 성적 기준 미충족 이력은 누적 적용

대상	최소 이수학점	성적기준
대학 재학생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¹⁾	백분위 80점 이상 ²⁾
대학 신입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입학·(타학교)신입학 ·편입·전공심화과정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단, 직전학기 성적은 반드시 존재(p.87 참고)	

※ 대학생 성적기준 미충족 2회는 고등학생 성적기준 미충족 횟수를 누적 적용하지 않음

¹⁾ 소속 대학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 대학의 학사 규정에 의함

²⁾ 백분위 점수 산출은 「2024년 국가장학금 시행계획」의 성적 산출기준을 따르며, 이 외의 사항은 대학 학칙을 준용

④ (비교과 기준) 사회공헌활동 여부 및 사회적 물의 여부 점검

대상	내용			
사회 공헌 활동	대상 및 기간	① 사회공헌활동은 대학교 입학 이후의 활동기간부터 인정		
		② 사회공헌활동 필수 수료 학기에 미수료 상태로 휴학하는 경우 복학하는 학기의 학기개시일 전까지 자격유예 상태로 장학생 자격 유지 인정		
		구분	학제	수료 기한
		'20년 대학 입학자*	2년제 3~6년제	대학 재학 기간
	'21년 이후 대학 입학자	2년제 3~6년제	2번째 정규학기 종료 전까지** 4번째 정규학기 종료 전까지**	
* '21년 이후 편입·재입학·신입학 등을 한 경우 '21년 이후 기준 적용				
** 학기 종료 전의 기준은 다음 학기 개시 전까지를 의미				

<p>활동 내용 (택 1)</p>	<p>① 재단 지정 프로그램 1개 이상 활동 수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꿈 나눔 멘토링 멘토로 참여한 경우 - 한국장학재단 수기공모전에서 당선된 경우(중·고교 재학 중 당선작 인정) - 한국장학재단에서 주최하는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 다문화·탈북 멘토링, 대학생 재능봉사 캠프사업 등 <p>② 사회봉사활동 30시간 이상(2년제의 경우 15시간 이상): 증명서*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및 산하기관, 각 시·도별에서 주최하는 활동 중 자원봉사 포털(1365, VMS, 두볼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활동 등 ※ 사회공헌활동 수료 시간은 30분 단위로 인정
<p>사회적 물의 여부*</p>	<p>소속 학교 재학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자격중단 처리

* ①정학·퇴학 등 징계받은 자, ②형사처벌(처분)을 받은 자

⑤ **(필수보고서) 나의 성장 기록(학업보고서) 제출**

- 장학생 진로개발 활동, 학업 현황 등을 작성

※ 필수보고서는 장학생 작성이 원칙이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작성·제출

〈 졸업생 유의사항 〉

구분	제출서류	제출기한
‘24년 8월 졸업 예정	① 나의 성장 기록(학업보고서)	‘24년 6월 말
‘25년 2월 졸업 예정	② 학적변경 신청서	‘24년 12월 말

- ① 제출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2개월 간 장학생 자격유예를 적용하여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며, 학적변경 신청서 및 학업보고서 제출을 통해 유예사유 해소 가능
- ② 졸업예정자가 재입학, 타학교 신입학, 편입, 전공심화 과정 진학으로 졸업하지 않는 경우 계속 장학생 자격 인정(단, 신규 대학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기 수혜 횟수를 차감한 잔여 횟수가 있는 경우에 한함)
- ③ 졸업예정자가 ②와 같은 사유로 졸업하지 않는 경우 제출기한 내 학적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하여 학적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2개월 간 장학생 자격유예

〈 제출경로(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장학금 > 국가 우수 장학금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 학적정보 변경 신청(대학생)

3. 보완심사

□ 목적

- 장학생의 지원 자격(소득 및 성적기준(대학생)) 및 학적 등의 중간 점검을 통한 2학기 계속 지원 장학생 선발

□ 심사 대상

- 꿈사다리 장학생 중 보완심사일 기준 계속 지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 ※ SOS 장학생은 한시적 장학금 지원 대상으로 심사에서 제외하나, 학업 중단 및 학년 미진학 등 지원 제한 사유 확인 시 장학금 지원중단

□ 신청 절차

- 장학생 및 멘토의 **별도 신청 절차 없음**(한국장학재단 자체 심사)

구분	자격 점검	선발
주요	① 공통 : 수급 자격 충족 여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산 확인	2학기 계속장학생 선발 ※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요청 가능
내용	② 대학생 : 성적 및 사회공헌활동 충족 여부, 2학기 학적 확인	
주체	한국장학재단	
일정	`24년 7월 ~ 8월(※심사결과는 8~9월 중 발표)	

※ 심사 일정 및 점검 사항은 추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한 안내 예정

□ 점검사항

① (공통)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

* 가구원(본인, 부모, 배우자) 중 1인 이상 수급자격 보유(조손가정의 경우 학생 및 조부모 중 1인 이상 수급자격 보유 시 인정)

* 수급자격 전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명자료 제출 필요(대상자 개별 통보 예정)

② (대학생)교과기준*: 1학기 성적(백분위 80점, 12학점 이상) 충족 여부

* 직전 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 기준을 2회 이상 미충족 시 자격 중단 처리

③ (대학생)사회공헌활동: 대학생 사회공헌활동 이수 여부

④ (대학생)2학기 학적: 조기졸업 등 학업 중단 여부

⇒ ①은 공통(중·고등학생+대학생), ② ~ ④는 대학생에게만 해당

※ 교과 기준 및 대학생 사회공헌활동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p.80 ~ p.85 참고

3 계속 장학생 장학금 지원

□ 지원 기간

- 계속 지원 정기·보완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장학생을 대상으로
진급·진학 시 장학금 지원 예정
- 대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의 학제별 정규학기* 내에서만 지원 가능**
 - * (예시) 2년제 전문대 → 2년 지원, 4년제 → 4년 지원, 6년제 → 6년 지원
 - ** 초과 학기 및 대학원 등은 지원 불가

< (대학생)학적 변동 사유별 장학금 지원 여부 >

구분		지원 여부
1	재입학, (타학교)신입학, 편입(상급학교 진학 포함), 전공심화과정 진학	• 신규 진학한 대학 학제의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기 수혜 횟수를 차감한 잔여 횟수를 한도로 장학금 지원 ⇨ 단, 직전 학기 성적이 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계속 지원이 가능하며, 직전 학기 중퇴 후 재입학 등은 학업 중단에 해당되어 '지원중단' 으로 처리됨
2	휴학	• 휴학 시 장학금 지원중단(자격유예) ⇨ 학기 중 휴학 시 복학 시점까지 장학금 지원이 유예 ① 휴학 학기 미이수한 경우 : 선차감 방식으로 관리 ② 휴학 학기 이수한 경우 : 선지급 방식으로 관리 ※ 상세 내용은 [참고5] 참조
3	교환학생	• 소속학교 학제별 정규학기 내에서 장학금이 지원되며 장학금(카드)은 국내에서만 이용 가능

※ 학적변동 신고 지연 등으로 인한 장학금 초과 수혜 발생 시 최대 지원 횟수 차감 또는 장학금 반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소속학교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중·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 졸업
일자와 관계없이 차년도 2월*까지 지원 가능
- * (예시) 차년도 1월 졸업자 → 차년도 2월까지 지원

□ 지원방식: 장학금 카드(장학금 지원액만큼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

- (사용기준) 장학금은 매월 5일 지급되며, 현금 지급 및 인출 불가
 -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장학금은 차년도 2월 말까지 사용 가능
(미사용 잔액은 차년도 3월부터 사용 불가)
 - ※ 매월 장학금 지급일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계속 지원 정기·보완
심사 기간에는 5일 이후 지급 가능
 - 지원종료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종료일 기준 해당 월말까지 사용기간 보장
 - * 졸업, SOS지원 기간 종료(종료일 다음 날부터 산정) 등 정상 종료자를 의미
 - ※ 자격박탈, 자격중단 등 비정상 종료자의 장학금 사용기간 관련 상세 내용은
「지원 제한 유형별 사유 및 조치사항」(p.91) 참조

4 장학생 및 멘토 준수·유의사항

□ 준수사항

1. 장학생은 학업 기간 중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
2. 장학생은 재단에서 제시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3. 장학생은 연락처, 주소 등 인적 사항 변경 시 재단에 즉시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의 귀책 사유는 장학생에게 있음(※문자 수신 비동의 포함)
4. 장학생은 계속장학금 신청 시 기본(학적)정보,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 장학생 기재 사항을 스스로 작성하고, 필요시 기타 서류 등을 직접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제출해야 함
5. 장학생은 계속장학금 신청 후 수정사항(필수보고서 등) 발생 여부를 재단에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수정사항 미보완으로 인한 자격중단 시 귀책 사유는 장학생에게 있음
6. 장학생은 재단이 매년 실시하는 장학생 성장도 측정조사 및 졸업 이후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진로 추적조사(상급학교 진학 또는 취업 등의 진로정보 조사 등)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함
7. 장학생은 장학금을 생활비 목적이 아닌 학업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카드의 부정 사용이나 목적 외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함
8. 장학생은 국가장학생으로서 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함
9. 장학생 및 멘토는 재단에서 요청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따라야 함
10. 멘토는 장학생에 대한 올바른 장학금 카드사용 지도와 함께 멘토링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11. 장학생·멘토는 학적 변동 및 장학생의 자격 유지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재단에 신고해야 하며, 필수 서류 등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제출해야 함

□ 유의 사항(상세내용은 p.90 참고)

- 정기·보완 심사 기간 외 지원 제한 사유 발생자의 경우, 자격종료일 까지의 활동 내역을 포함한 아래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구분		제출 대상
1	나의 성장 기록(학업 보고서)	공통
2	멘토링 활동 결과보고서	중·고생
3	장학생 포기확인서	이중수혜 해당자, 자진포기자 등
4	학적변경 신청서	휴학자, 졸업자 등

5 장학생 사후관리

1. 지원 제한 사유 점검 · 조치 개요

□ 목적

- 학교폭력, 징계 등 장학생 자격 유지 결격사유를 점검하여 장학생 사후관리 추진

□ 지원 제한 사유 및 후속 조치

- 한국장학재단은 정기·보완 심사, 멘토 및 장학생의 상시 신고 접수 등을 통해 장학생의 지원 제한 사유를 확인하여 후속 조치 실행

- (자격박탈) 장학생 자격 유지에 심각한 결격사유 발생

- 향후 신규 장학생 신청 불가, 장학금 카드 미사용 잔액 환수, 장학금 반환(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및 제재부가금 별도) 등

- (자격중단) 학년 미진급¹⁾, 상급학교 미진학(재수생 예외), 타 장학금 선택²⁾, 장학생 포기 등 장학생으로서 요구되는 최소 자격 기준에 미달

- 향후 신규 장학생 참여 가능, 장학금 카드 미사용 잔액 환수 등

¹⁾ 단,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학년 미진급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

²⁾ 이중 수혜 기준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선택하고, 꿈사다리 장학금을 포기하는 경우(※타 장학금과 이중 수혜 시 자격박탈)

- (자격유예) 부득이한 사유로 장학생 자격 유지가 어려운 상황

- 유예기간 동안 장학금 지원중단, 사유 해소 시 장학생 자격복구

※ 자격유예 기간 동안 지급 중단된 장학금은 이월 또는 소급 지급 불가, 자격유예 사유 해소 시 자격복구 시점의 익월부터 장학금 지급 재개

2. 점검방법 및 상세내용

□ 중 · 고등학생

- 장학생의 멘토 및 소속학교를 통해 지원 자격 결격사유를 점검하고, 지원 제한 사유 대상자가 있는 학교는 재단으로 즉시 신고

지원 제한 사유		제출서류	제출방법
유형	주요 내용		
① 자격박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계(정학, 퇴학 등) · 형사처벌(처분) 및 학교 폭력 등 · 소속 학교 판단 시 국가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경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나의 성장 기록(학업보고서) ② 멘토링 활동 결과보고서 ③ 징계 관련 서류 (징계심의회 회의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자) 멘토 · (제출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장학금 이중수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나의 성장 기록(학업보고서) ② 멘토링 활동 결과보고서 	
② 자격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학업 중단 ↳ 자퇴, 휴학, 학년 미진급 등 	<p><공통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나의 성장 기록(학업보고서) ② 멘토링 활동 결과보고서 <p><추가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학) 학적변경 신청서 · (자퇴) 제적증명서 · (자진포기) 장학생 포기 확인서 	<p><제출경로></p> <p>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 장학금 > 국가 우수 장학금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 학적정보변경신청(중·고교생)</p> <p>※ 멘토가 소속학교 교사가 아닌 경우, 증빙서류를 학교에 요청하여 공문으로 제출</p>
③ 자격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생이 질병 등으로 학업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등 	<p><공통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나의 성장 기록(학업보고서) ② 멘토링 활동 결과보고서 ③ 학적변경 신청서 <p><추가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휴학) 진단서 등 	
④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학교 변경(전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적변경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멘토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 접속 후 변경 신청 <p><제출경로></p> <p>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 (https://eduman.kosaf.go.kr) > 장학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 장학생 정보관리 > 학교정보관리(중·고)</p>

※ (준수사항) 장학생 · 멘토 · 소속 학교는 장학생의 지원자격 결격사유 발생 시 상기 내용을 확인하여 관련 서류를 재단에 즉시 제출해야 함

□ **대학생**

- 장학생은 학적 변경 사유 발생 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 ① 학적변경 신청서 및 ② 나의 성장 기록(학업보고서)을 즉시 제출
- 단, 계속장학생 정기심사 기간 내 학적 상태 변경 사유 발생 시에는 계속장학금 신청 절차를 통해 해당 서류를 제출

〈 제출경로(재단 홈페이지)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장학금 > 국가우수 장학금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 학적정보변경신청(대학생)

□ **지원 제한 유형별 사유 및 조치사항(공통)**

유형	사유	조치내용
자격 박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고의에 의한 허위로 판명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신규장학생 신청 불가 장학금 지원중단(즉시 사용중단) 허위청구 시점부터 수혜받은 장학금(이자·제재부가금 별도) 및 미사용 잔액 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정학·퇴학 등 징계를 받은 자, ②형사처벌(처분)을 받은 자, ③소속 학교 판단 하에 국가장학생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신규장학생 신청 불가 장학금 지원중단(즉시 사용중단) 미사용 잔액 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학금의 장학생 외의 자(학부모 포함)가 개인 용도로 유용한 경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신규장학생 신청 불가 장학금 지원중단(즉시 사용중단) 기 지원받은 장학금 중 부정사용 금액(이자·제재부가금 별도) 및 미사용 잔액 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학생이 수혜기간 중 타 장학금을 신청하여 이중수혜 받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신규장학생 신청 불가 장학금 지원중단(즉시 사용중단) 이중수혜 금액 및 미사용 잔액 환수
자격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보완심사시 소득기준 확인 결과, 자격유예(최대 3개월) 후에도 수급자격이 미충족하는 경우 장학금 부적정 사용횟수가 연 누적 3회인 자 (중·고생) 자퇴, 휴학, 학년 미진급 등 자격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학업 중단 (대학생) 자퇴, 제적 등 자격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학업 중단 (고등학생) 직전 학년 성적 기준에 2회 이상 미달한 자 (대학생) 직전 학기 이수학점·성적 기준에 2회 이상 미달한 자 자격유예 불성실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해당 유예기간이 소멸한 자 계속장학생 정기심사 미신청자 및 심사탈락자 멘토링 활동 결과보고서 미제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신규장학생 신청 가능 ※ 장학생 선발과 기존 수혜 여부는 무관 장학금 지원중단 미사용 잔액 환수(단, 지원종료일 기준 당월 말까지 사용 가능) 계속장학생 정기심사 미신청자 및 심사탈락자, SOS장학생 대학교 미진학자의 경우 당해연도 4월 말까지 미사용 잔액 사용 가능

유형	사유	조치내용							
자격 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재지변, 전시, 사변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되어 일시적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 장학생 본인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 (대학생) 휴학으로 인한 학업 중단(군입대 포함) • (고교 졸업생) 고등학교를 졸업한 당해연도의 대학 미진학자로 계속장학생 정기심사를 통과한 자 ※ 유예기간은 졸업 당해연도 3월부터 차년도 신입학 확정 시(2월)까지로 1회에 한하여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예기간 동안 장학금 지원중단 • 미사용 잔액은 장학금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 가능 • 사유 해소 시 자격복구 ※ 단, 유예기간 중 발생한 미지급 장학금은 소급 지원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지원 심사(정기·보완) 시 소득기준 자격 미충족 시 최대 3개월 자격유예 및 수급자격 재점검 • 매년 장학생의 활동 점검 결과, 활동 내용이 불성실한 경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불성실 기준</td> <td>장학생 연락 두절*</td> <td style="text-align: center;">3개월</td> </tr> <tr> <td>장학금 부정사용 소명 불응</td> <td style="text-align: center;">3개월</td> </tr> <tr> <td>대학졸업자 보고서 미제출</td> <td style="text-align: center;">2개월</td> </tr> <tr> <td>사회공헌활동 의무 불이행</td> <td style="text-align: center;">3개월</td> </tr> </table> <p>* 재단 최초 연락일부터 90일 기준</p>		불성실 기준	장학생 연락 두절*	3개월	장학금 부정사용 소명 불응	3개월	대학졸업자 보고서 미제출	2개월
불성실 기준	장학생 연락 두절*	3개월							
	장학금 부정사용 소명 불응	3개월							
	대학졸업자 보고서 미제출	2개월							
	사회공헌활동 의무 불이행	3개월							

- ※ 상기 지원 제한 사유 및 조치내용은 예시(안)으로 구체적인 사유 발생 시 이에 준하여 판단하되 학생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내용 결정
- ※ 공공재정의 부정청구에 관한 일체 내용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20.1.1.시행) 및 동법 시행령과 한국장학재단 「공공재정환수 업무처리기준」에 따름

< 이중수혜 기준 >

- ❶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 ❷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으로 특정되는 경우이며, 보편적 복지 성격은 제외
- ❸ 단순 생활비성 장학금(식비, 기숙사, 생활비 무상보조 등),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의 경우 이중수혜 판단 대상에서 제외
- ❹ 단순 1회성 장학금이 아닌 특정 기간 정기적으로 지속 지원(2회 이상)받는 장학금을 수혜받는 경우를 의미

⇒ ❶ + ❷ + ❸ + ❹의 요건을 모두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를 이중수혜로 간주하며, 이중수혜로 판단하는 기준일은 타 장학금 최종 선발일을 기준으로 함

별첨

참고 및 신청 관련 서식

참고1

복꿈 성장 멘토링(1:1멘토링) 관련 사항

□ 복꿈 성장 멘토링(교직원 등 교육 현장의 전문가와의 1:1멘토링)

[교육목표] 장학생에게 정서적 지지 제공으로 안정적 성장 도모

- (교육대상) 중·고 꿈 장학생 의무 참여
- (교육일정) 연중(학기별 2회 이상, 연간 4회 이상 필수)
- (교육내용) 멘토와 다양한 멘토링 활동(문화활동, 진로·진학 상담, 개인상담 등)

〈 복꿈 성장(1:1) 멘토링 관련 유의사항 〉

- (멘토 지정) 장학생 선발 전, 학생과 상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멘토링 지원이 가능한 멘토의 정보를 입력(필수기입 정보)

※ 장학생 선발 전 ①멘토링 활동 계획서 및 멘토 ②멘토 개인정보동의서, ③계좌정보 제출 필수

- (자격요건) 멘토는 장학생의 소속학교 교직원을 원칙으로 하며, 신규 장학생 신청 시 신청 교사 역할을 병행

⇒ 장학생의 성장 지도가 가능하며, 결격사유 없는 자*를 멘토로 지정 (학교장 확인 필수) 「복꿈 성장(1:1) 멘토링·멘토 자격 결격 사유」 참고

- (멘토 변경) 멘토는 학년 단위로 변경 가능*

⇒ 멘토 변경 시에는 ①멘토링 활동 계획서 및 멘토 ②개인정보동의서 ③계좌정보 제출 필수

질병·사고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불성실 활동 등의 자격제한 사유 발생에 한하여 소속학교 교직원으로 멘토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장학생**(또는 멘토)은 **재단에 즉시 연락**하여야 함

※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 소속외 담당자로 멘토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재단 승인 필요

- (멘토 지원) 멘토링 활동 지원비*(회차별 10만 원**), 멘토 위촉장(교육부장관 명의) 멘토링 가이드북 등 제공

* 학기별 2회(연간 총 4회) 멘토 개인 계좌로 지급

** 장학생의 진학(중→고) 후에도 활동을 지속하는 경우 활동비 10만 원 추가 지급

- (활동 점검) 장학생과의 멘토링 활동은 정기 심사 시 멘토링 활동 결과 보고서를 통해 점검

〈 복꿈 성장(1:1) 멘토링·멘토 자격 결격 사유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현재 정치활동 중이거나 멘토링 활동 기간 중 정치활동 예정 중인 자
- 특정 이념에 치우친 활동을 진행했거나, 예정 중인 자
- 멘토링 활동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소 권장 멘토링 활동 횟수 미만의 활동을 하였거나, 중도 포기 등 적극적인 활동 의지가 없는 경우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그 밖에 학교장 및 한국장학재단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참고2 복지자격 서류 목록(수급자격 전산확인 불가자용)

◇ 복지자격 서류(복지자격 전산정보 불일치 대상에 한하여 제출)

【복지자격(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범위】

(인정 범위)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장학금 신청일 기준 아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계층으로 판정

* 조손 가정의 경우 학생 및 조부모 중 1인 이상 수급 자격 보유 시 인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권자(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차상위로 분류)

구분	자격명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¹⁾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주거/교육)
차상위계층 ²⁾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 모든 서류는 계속장학금 신청기간 내 발급한 서류에 한하여 인정

1) 지자체별 조례에 따른 차상위선정자 및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자격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류 제출 필요

2) [참고3,4] 참조: 법정차상위계층 증빙서류 및 양식

참고3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증명서	명의	발급기관	비고
1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본인 또는 가구원* 명의 * 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	행정 복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 장애인연금수급자는 '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만 차상위 인정
2 자활근로자 확인서		행정 복지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 자
3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 복지센터	만 18세 미만 발급 (취학 중일 경우 만 22세 미만)
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부양 요건)을 모두 갖춘자
5 차상위 계층 확인서		행정 복지센터	-
6 수급자 증명서		행정 복지센터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참고4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양식

1.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처리기간
			즉시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세대주성명 (시설명)	세대주와의 관계		
용도			
제출처			
수급자 구분	주장애등급/유형		부장애등급/유형
	<input type="checkbox"/> 1급 <input type="checkbox"/> 2급 <input type="checkbox"/> 3급 <input type="checkbox"/> 4급 <input type="checkbox"/> 5급 <input type="checkbox"/> 6급		<input type="checkbox"/> 1급 <input type="checkbox"/> 2급 <input type="checkbox"/> 3급 <input type="checkbox"/> 4급 <input type="checkbox"/> 5급 <input type="checkbox"/> 6급
	<input type="checkbox"/> 지체 <input type="checkbox"/> 시각 <input type="checkbox"/> 청각 <input type="checkbox"/> 언어 <input type="checkbox"/> 지적 <input type="checkbox"/> 뇌병변 <input type="checkbox"/> 정신 <input type="checkbox"/> 지체성 <input type="checkbox"/> 신장 <input type="checkbox"/> 신장 <input type="checkbox"/> 호흡기 <input type="checkbox"/> 간 <input type="checkbox"/> 안면 <input type="checkbox"/> 장루요루 <input type="checkbox"/> 뇌전증		<input type="checkbox"/> 지체 <input type="checkbox"/> 시각 <input type="checkbox"/> 청각 <input type="checkbox"/> 언어 <input type="checkbox"/> 지적 <input type="checkbox"/> 뇌병변 <input type="checkbox"/> 정신 <input type="checkbox"/> 지체성 <input type="checkbox"/> 신장 <input type="checkbox"/> 신장 <input type="checkbox"/> 호흡기 <input type="checkbox"/> 간 <input type="checkbox"/> 안면 <input type="checkbox"/> 장루요루 <input type="checkbox"/> 뇌전증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연금(<input type="checkbox"/> 기초부가급여 <input type="checkbox"/> 차상위부가급여 <input type="checkbox"/> 차상위초과부가급여) <input type="checkbox"/> 장애수당(<input type="checkbox"/> 기초 <input type="checkbox"/> 차상위) <input type="checkbox"/> 장애아동수당(<input type="checkbox"/> 기초 <input type="checkbox"/> 차상위) * 기초: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 차상위계층 * 차상위초과: 기초 또는 차상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 차상위 및 차상위부가급여 대상자만 차상위계층으로 인정
- ※ 기초 및 기초부가급여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
- ※ 차상위초과부가급여 대상자의 경우 기초 또는 차상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정 불가

2. 자활근로자 확인서

[자활서식 23호] 자활근로자 확인서

자 활 근 로 자 확 인 서			처리기간
			즉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7자리 (외국인등록번호)	000000-0
주소 (소재지)			
세대주성명 (시설명)	세대주와의 관계		
참여구분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 차상위 자활 / 기타()		
사업내용			
용도			
제출처			

3. 한부모 가족증명서

제 호

한부모가족증명서

1. 성명: _____
(생년월일: _____)

2. 세대주 성명(시설명): _____
(세대주와의 관계: _____)

3. 주소(소재지): _____

4. 제출용도:
(용 도)
(제출처)

5. 선정일자: _____

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서식 7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증번호		발급번호	
차 상 위 경 감 대 상 자 확 인 내 역 서				
연번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경감유형	
1				

5. 차상위 계층 확인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 7호서식] <신설 2015.4.20.>

차상위계층 확인서			처리기간
			즉시
성명 (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소재지)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용도			
제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6. 수급자 확인서

제 호

수급자 증명서

1. 성명: (생년월일:)

2. 세대주 성명(시설명): (세대주와의 관계:)

3. 주소(소재지):

4. 수급자 구분:

<input type="checkbox"/>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의료급여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주거급여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교육급여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보장시설 수급자

5. 제출용도:

(용도)

(제출처)

※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만 차상위계층으로 인정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

참고5

학적변동 휴학 시 장학금 지급관리 방법(선지급, 선차감)

□ 학적변동 휴학 시 장학금 지급관리 방법

- 휴학 학기에 성적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미이수한 경우는 선차감 방식, 이수한 경우는 선지급 방식으로 상황별 맞춤형 관리방안 적용
 - ▶ (선차감) 휴학 학기에 장학금을 수혜한 경우 복학 시 수혜 횟수만큼 우선 차감 후 지급
 - ▶ (선지급) 휴학 학기에 장학금을 수혜한 경우 당해학기에 수혜 가능한 남은 횟수만큼 총 수혜 횟수에서 차감하여 관리

【 ① 선차감 사례 (휴·복학 학기 동일) 】

〈 1학년 1학기 휴학 〉						〈 1학년 1학기 복학 〉					
휴학						복학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지급	지급	지급 제외	지급 제외	지급 제외	지급 제외	선차감	선차감	지급	지급	지급	지급

【 ② 선지급 사례 (휴·복학 학기 상이) 】

〈 1학년 1학기 휴학 〉						〈 1학년 2학기 복학 〉					
휴학						복학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차년도 1월	차년도 2월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횟수 차감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 1학기당 6회를 기준으로 장학금 지급 (1학기: 3월~8월, 2학기: 9월~차년도 2월)

서식1 나의 성장 기록(학업보고서)

나의 성장 기록(학업보고서)

선정연도	년도	법정생년월일	년 월 일
성명		연락처	
학교		학년	

이번 연도 학업 결과보고서(년 월 ~ 월)

진로 탐색

[중학생 대상]

○ 진학 예정인 고등학교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일반고 ② 과학고 ③ 외국어고 ④ 특성화고 ⑤ 예체능고 ⑥ 대안학교 ⑦ 검정고시 ⑧ 기타

[고교생 대상]

○ 졸업 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 ① 상급학교(전문대학, 대학 등) 진학 ② 취업 ③ 창업 ④ 군입대 ⑤ 시험준비(공무원, 자격증 등) ⑥ 미정 ⑦ 기타

○ 대학 진학하시는 경우 전공 분야는 무엇입니까?

- ① 공학계열 ② 교육계열 ③ 사회계열 ④ 예체능계열 ⑤ 의약계열 ⑥ 인문계열 ⑦ 자연계열 ⑧ 기타

[대학생 대상]

○ 졸업 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 ① 상급학교(전공심화, 대학원) 진학 ② 취업 ③ 창업 ④ 군입대 ⑤ 시험준비(공무원, 자격증 등) ⑥ 미정 ⑦ 기타

[공통]

○ 꿈사다리 장학생 진로역량 개발 컨설팅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⑥ 이용한 적 없음

학업 성취도

○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학교 생활에 만족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불만족 사유는 무엇입니까?

서식2

멘토링 활동 결과보고서

멘토링 활동 결과보고서

선정연도	년도	법정생년월일	년 월 일
장학생 성명		장학생 연락처	
학교		학년	
멘토 성명		멘토 연락처	

□ (장학생) 멘토링 활동내용(※ 학기별 2회 이상 활동 필수 실시)

※ (1학기) 3~8월, (2학기) 9~12월

활동 시기		활동 내용	
학기	월	유형	상세 내용
1학기	00월	친밀감형성	① 일상생활 나누기 ② 생일 챙겨주기 ③ 연락주고 받기 ④ 보드게임하기 ⑤ 함께 식사하기 ⑥ 기타()
1학기	00월	진로지도	① 계획세우기 ② 경험담 나눔 ③ 진로탐색 ④ 희망직업 실무자와 만남 ⑤ 기타()
2학기	00월	문화체험	① 박물관 관람 ② 영화연극관람 ③ 미술전 관람 ④ 대학축제방문 ⑤ 명소 방문 ⑥ 기타()
2학기	00월	견학/ 탐방	① 희망대학방문 ② 기업탐방 ③ 기타()

서식3

멘토링 미활동 소명서

멘토링 미활동 소명서

선정연도	년도	장학생 구분	<input type="checkbox"/> 중학생 <input type="checkbox"/> 고등학생
성명		법정생년월일	년 월 일
소속 학교명		학년	
멘토링 미활동 소명 내용			
소명 내용	예시) 질병 휴학으로 인한 멘토링 활동 제한		
멘토 의견	예시) 질병 휴학으로 인한 멘토링 활동 제한		

본인은 소명 요청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멘토링 미활동 사유를 보고드리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장학생)

(서명 또는 인)

장학생 멘토

(서명 또는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4

학적변경 신청서

학적변경 신청서

▶ 장학생 기본정보			
입학년도	년	장학생 구분	<input type="checkbox"/> 중학생 <input type="checkbox"/> 고등학생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학생
학교명		성명	
연락처		학적변경 신청일	2000. 00. 00.
당해학기 이수 여부 (대학생 휴학 시)	<input type="checkbox"/> 이수 / <input type="checkbox"/> 미이수	졸업 여부 (대학생 졸업 시)	<input type="checkbox"/> 졸업 / <input type="checkbox"/> 미졸업
▶ 장학생 학적변동사항			
학적변동 시작일	2000. 00. 00.	학적변동 종료일	2000. 00. 00.
학적상태(현재)	예시 : 재학	학적상태(변경)	예시 : 복학
학적변동 사유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으로 상기와 같이 학적변동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p>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p>			

※ 학적변동 시 계속 지원 여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장학금 지급중단 및 기 수혜한 장학금에 대한 반환 등 추가 조치가 발생 할 수 있음 (사전 문의를 통해 확인하거나 사유 발생 시 즉시 신고 바람)

서식5

장학생 포기확인서 (중·고교생)

장학생 포기확인서

선정년도	년	장학생 구분	<input type="checkbox"/> 중학생 <input type="checkbox"/> 고등학생
성명		연락처	
학교명		학년	
포기 사유			
멘토 의견			

본인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으나 위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장학생)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학부모)

(서명 또는 인)

장학생 멘토

(서명 또는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 멘토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멘토는 재단 홈페이지에 제출) ※

서식6

장학생 포기확인서 (대학생)

장학생 포기확인서

선정년도	년	성명	
대학명		학과명	
학년		연락처	
포기 사유			

본인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으나 위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장학생)

(서명 또는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IV. 장학금 지급·사용 및 모니터링

1. 장학금 지급 대상 및 방법	109
2. 장학금 사용 방법 및 사용기간	110
3. 장학금 카드 사용 모니터링	111
[별첨] 참고 및 신청 관련 서식	113

[참고1] 장학금 카드 사용 가능 범위 안내	113
[참고2] 장학금 카드 사용 불가 범위 안내	116
[참고3] 장학금 사용 가능/불가 범위 전체 안내 ·	119
[서식] 장학금 사용 소명서	123

VI 장학금 지급 · 사용 및 모니터링

1. 장학금 지급 대상 및 방법

□ 장학금 지급 대상

- 매월 말 기준 재학 중이며, 그다음 월에도 학업을 지속하는 장학생을 대상으로 함

□ 장학금 지급 방법

- 장학금은 장학생이 발급받은 장학금 카드에 장학금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되며, 월 배정액은 장학금 유형 및 학제별 기준에 따름
- 장학생은 재단 협약금융사*를 통해 장학금 카드를 발급받아야 함

* 「하나카드」에서만 발급 가능(협약금융사 변경 시에는 별도 공지 예정)

※ 만 14세 미만('10년 이후 출생자 및 '10년생 중 생일 미도래자) 장학생의 경우 카드 발급 시 반드시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구분	꿈·다문화 장학금			SOS 장학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금액	월 25만 원	월 35만 원	월 45만 원	월 30만 원 (최대 10개월, 한시적 지원)

< 협약금융사(하나카드) 방문 시 필수 지참서류 >

- **만 14세 미만 장학생** : 법정대리인 필수 방문
- (법정대리인) 학생 명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분증
- **만 14세 이상 장학생** : 학생 본인 or 법정대리인 중 1인 방문
- (학생) 주민등록초본/등본 각 1부 + 학생증
- (법정대리인) 학생 명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분증
- **만 18세 이상 장학생** : 학생 본인 방문
- 주민등록초본/등본 각 1부 + 학생증/주민등록증 중 선택

- 장학금 포인트는 매월 5일에 장학생의 카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장학금 포인트의 1포인트는 현금 1원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며,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는 불가능함
- 신규장학생 선발 및 계속장학생 심사 시기에는 지급일 변경 가능

2. 장학금 사용 방법 및 사용기간

□ 장학금 사용 방법

- 장학생 본인이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국내에서만 사용 가능함
- 장학금은 생활비가 아닌 학업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주의 필요
- ① **교육 학습 및 진로역량 개발 지원**: 교육비, 서적, 문구, 학원비 등
- ② **진로·적성 탐색기회 지원**(체험학습, 취미·레저 포함): 문화·취미 등
- ③ **학업 환경 조성 지원**: 일반음식, 음료, 식품, 안경 등

〈 장학금 카드사용 유의사항 〉

- [온라인 사용 우선소명 유의] 온라인 카드사용은 재단의 정기 모니터링에서 우선 소명 대상이 됨을 참고하여 신중한 카드사용 필요
- [장학금 카드사용 불가 업종] 가정·차량 관련 용품 구입, 금융·공과금 관련 지출, 상품권 구매, 숙박, OTT, 목욕·미용·안마 등 생활서비스 일체 등의 **가계 생활비 용도에 해당하는 카드사용은 절대 불가**
- ※ 실질적으로 사용에 제한되는 가맹점(ex. OO포차)인데, 가맹점의 업종 등록만 허용 업종(ex. 일반음식점)으로 한 경우, 개별 사업장 단위로 사용 제한 가능

※ 카드사용 소명 불가 시 향후 지급될 장학금에서 해당 사용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등의 조치 가능

※ 장학금 카드 세부 사용 업종은 [참고1~3]_장학금 카드사용 범위 안내 참조

□ 장학금 사용기간

- 장학금은 장학생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사용 가능
 - 단, 자격박탈, 자격중단 및 지급유예 등 사유 발생 시 사유별 조치내용 적용
- 장학금은 지급연도 말(매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는 것을 원칙
 - 단, 연초 학업준비를 위해 12월 말 기준 미사용잔액이 이월되어 차기년도 2월 말까지 사용 가능함
 - ※ 이월 포인트 중 미사용 잔액 포인트는 사용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소멸됨
- 지원종료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종료일 기준 해당 월말까지 사용기간 보장

* 졸업, SOS 지원기간 종료 등 정상 종료자를 의미

※ (ex) 3/5: 지원종료일 → 3/31까지 잔액 사용기간(이후 사용불가)

※ 자격박탈, 자격중단 등 비정상 종료자의 장학금 사용기간 관련 상세 내용은 「지원 제한 유형별 사유 및 조치사항」(p.91) 참조

< 장학금 카드 거래 취소 시 유의사항 >

- **카드거래 취소는 환급까지 평균 10일 내외 기간이 소요되므로 거래 취소 시 유의**
 - ① 연말 카드거래 취소 건 중 연내 환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 ② 연말 카드거래 매입 건 중 차년도 매입취소하는 경우
 - ☞ 차년도 장학금 이월한도 미포함, 이월 한도 복원 및 사용이 불가함
 - ③ 이월된 장학금의 사용기간(차년도 1~2월)동안 거래 취소 건이 환급 처리되지 않을 경우
 - ☞ 3월 이후에는 한도 복원 및 이월된 장학금 사용이 불가함
- ※ **카드거래 취소·환급은 카드사용처(가맹점)별 상이하므로, 취소 시에는 장학생 본인이 카드사에 직접 확인 필요**

3. 장학금 카드사용 모니터링

□ 목적

- 장학생의 올바른 학업장려비 사용 유도를 위해 장학금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장학금 카드 사용방법에 대한 인식 제고

□ 점검대상

- 모니터링 실시 기간 중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 ※ 장학생 자격박탈 및 자격중단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외

□ 점검횟수

- 연 4회 이상(1월, 4월, 7월, 10월)
 - ※ 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SOS 장학생은 한시적 지원기간을 고려하여 지원기간 내 2회 이상 점검

□ 점검방법[서식_장학금 사용 소명서 참조]

- 장학생의 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아래 3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점검 하며, 필요시 추가 점검 방법 적용 가능
- (사용제한 업종 사용여부) 카드 사용 가능 업종 범위 외 사용 여부
 - ※ (사용 가능 업종) '24년: 78개 업종(p.113 참조)

❖ (장학금 카드사용 우선소명 대상) 인터넷 상점, PG 등 장학금 카드포인트의 사용 내역이 불분명한 온라인 결제 사용

구분	인터넷 상거래	PG*	오픈마켓**
주요 가맹점명	네○버파이낸셜(주) 네○버페이 등	이니○스, TOSS, 쿠○(○페이), 카○페이, NO○한국사이버결제(KCP), 모빌리○ 등	11번○, G마○, 옥○ 등

* PG(Payment Gateway): 전자지급결제대행, 가맹점 등과 계약을 통해 결제 및 지불을 대행하는 서비스 업체

** 오픈마켓(Open Market):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모두 열려있는 인터넷 중개물

- (키워드명 검색) 학업 목적 외 사용이 의심되는 키워드 적용
 - ※ (예시) (사용 불가 항목) OTT 구독 및 게임 등 서비스 결제, 상품권 및 환금성 결제 등, (주점 사용) ○○포차, ○○호프 등, (가계 생활비 사용 의심 키워드) ○○백화점, ○○홈쇼핑 등
- (고액결제) 불명확한 거래건 중 단일거래 또는 특정 가맹점에서 반복 결제 총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내역 점검

□ 점검절차

- 한국장학재단은 장학생의 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 후 소명이 필요한 장학생을 대상으로 소명 요청

< 장학금 카드사용 점검 관리 기본절차 >

1단계	모니터링	2단계	소명대상 등록	3단계	소명대상 안내	4단계	후속 조치
장학생별 장학금 카드 사용내역 수신 및 사용내역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부정적 사용 의심을 소명대상으로 등록	소명 대상 장학생에게 소명 방법 등 안내 (문자 발송)	소명 대상 장학생이 제출한 소명 자료 검토 및 후속 조치	카드사↔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장학생	장학생↔한국장학재단

※ 장학금 카드사용 모니터링 관련 상세내용은 별도 계획에 따름

□ 후속조치

- 모니터링 소명 부적정 대상자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원 제한 조치
 - 기간 내 소명 불응 시 장학생 자격유예 및 소명 불충분 시 해당 금액 정산*
 - * 차기 월 장학금에서 차감 후 장학금 지급(필요시 별도 반환 조치)
 - 분기별 모니터링 결과, 연 누적 3회 이상 장학금 부정적 사용 대상자로 확인될 시 장학생 자격중단 등의 조치 가능

< 장학금 카드 지원 제한 조치사항 >

구분	지원 제한 사유	사후조치
장학금 유용	• 장학생 외(학부모 포함) 개인용으로 유용한 경우 등 부정 사용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자격박탈 (부정 사용금액 및 미사용 잔액 환수)
소명자료 미제출	• 소명요구 불성실 대응(미제출 등)	자격유예 (사유 해소 시 까지 적용하며, 유예기간(최대 3개월)동안 지급받지 못한 장학금은 소급지원 불가)
소명 불충분 및 카드 오결제 등	• 소명자료 제출하였으나 사용 불가 기준에 해당하는 결제 내역 확인 시 • 카드 오결제 등 기타사항으로 결정	자격유지 및 결제 금액 반환 비교육적 사용 확인 후 결제 금액 차감하여 장학금 지급 (필요시 오결제 금액 반환)

별첨 참고 및 신청관련 서식

참고1 장학금 카드 사용 가능 범위 안내

용도 1. 교육 학습 및 진로 역량 개발 지원: 총 15개 허용

구분	업종	상세 안내
교육 및 교육지원	교복	
	초중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 등 공납금
	입시학원, 보습학원	
	외국어학원	
	자동차운전학원	
	예체능 계열 학원	음악, 미술, 무용, 연기, 예술학원
	무술도장	학원과 유사한 수련시설
	기술, 직업훈련학원	통신교육, 통신기술 학원, 자동차정비 학원, 미용학원, 직업훈련원 등
서적 문구	기타 교육, 교습, 학원	컴퓨터학원, 개인교습소, 전화 및 인터넷온라인교육, 학교 및 시민단체부설 평생교육원 등 (독서실, 고시원 포함)
	스터디카페	
가전 전자 컴퓨터	서적	서적, 잡지, 출판 (신문, 정기 간행물 등)
	교육 및 교구	학습지 및 학습교구
	문구, 사무용품	문구용구, 필기용구와 회화용구, 사무용품 포함
	통신기기	핸드폰, 전화기 등
	컴퓨터 및 주변기기	컴퓨터 주변기기 (프린트기, 마우스 등) 포함

용도 2. 진로·적성 탐색 기회 지원(체험학습, 취미레저 포함): 총 20개 허용

구분	업종	상세 안내
여객 화물 운송	고속, 시외버스	
	철도	고속철도 포함
	여객선	
	택시	
	지하철	
	시내버스	※ 후불교통기능(지하철, 시내버스)은 만 18세 이상 고객에게 발급 가능하며, 카드발급 시 교통기능을 선택하는 경우에만 해당
여행 오락 휴식	기타 승객운송업	관광버스, 학교버스, 셔틀버스 등
	테마파크	놀이시설, 놀이공원, 유원지, 관람 목적 수족관 등 (단 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는 휴양림 등의 공공요금은 결제 불가할 수 있음)
취미 레저 스포츠	기타 문화시설	천문관, 과학관, 미술관, 역사박물관, 사적지 등
	헬스클럽	
	영화, 공연장	연주홀, 뮤지컬, 오페라, 연극전용관, 스포츠관람등
	기타 취미, 레저	기원, 수영장, 볼링장 등
	종합 스포츠용품점	스포츠의류, 운동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매하는 브랜드 매장
	전문 스포츠용품점	등산, 낚시, 골프, 헬스 용품 등
	악기 판매점	현악기, 건반악기, 타악기 등 각종 악기 판매
	비디오, 음반	DVD 판매점 포함
	화방, 표구점	화랑 등 (단, 예술품, 골동품은 사용 불가)
기타	기타 레저 용품	어항, 수족관, 체육사 (취미용품포함) 등
	미용재료	
	카메라, 캠코더	사진용 화학물, 사진필름, 사진 장비

용도 3. 학업 환경 조성 지원: 총 43개 허용

구분	업종	상세 안내	
식음료	제과, 제빵	떡집, 방앗간, 자판기 판매 등	
	기타 식음료품		
유통 판매	슈퍼마켓, 마트	*정기 모니터링 시 우선 소명 대상	
	편의점		
	소비조합(구내매점)		
	기타 종합소매점		
	연쇄점		
	(온라인)PG(일반)		
	(온라인)공공서비스		
	(온라인)PG(오픈마켓)		
	(온라인)PG(기타)		
(온라인)인터넷상거래			
음식점	일반음식점	*단, 상호명이나 간판에 맥주, 호프, 와인, 주점 등 확인되는 경우 사용 불가	
	중식전문점		
	일식전문점		
	서양식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치킨전문점		
	커피전문점		
	아이스크림전문점		
기타 음식점			
의류 잡화 등	일반의류	*단 아동복 및 유아복은 결제 불가할 수 있음	
	내의류	런닝, 팬티, 브래지어, 잠옷 등	
	구두, 신발	구두, 운동화 등 각종 신발류	
	안경, 광학제품	콘택트렌즈, 선글라스를 포함한 각종 안경 등	
가구	가구판매점	목재 가구, 주방용 가구 등 각종 가구 판매	
가구	가구	가구 전문점	
보건의료	종합병원, 일반병원	건강검진기관 전문기관, 보건소 등	
	일반병원		
	기타 전문병원, 의료업		
	한의원		
	치과		
	안과		
	내과		
	외과		
	정형외과		
	피부과		비뇨기과
	소아과		청소년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신경정신과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과
약국, 한약방	한약국 포함		
한약방			

유의 사항. **카드 사용 모니터링 안내**

- ※ 장학생의 올바른 학업장려비 사용 유도를 위해 **장학금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이 진행됩니다.
- ※ **온라인 카드사용은 정기 모니터링 시 우선 소명 대상**이 됩니다.
- ※ 사용 제한 업종 및 품목에서 결제 이력이 확인될 경우, 모니터링 소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교육적 목적의 장학금 사용이 확인될 경우, 장학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명자료 미제출 시 장학생 지급중단 및 자격유예 적용
 - 소명 불충분 시 향후 지급될 장학금에서 해당 사용금액을 차감하여 지원
 - 장학금 부정 사용 횟수가 연 누적 3회 발생 시 장학생 자격중단 등 조치 가능

참고2 장학금 카드 사용 불가 범위 안내

아래 품목에 대해서는 장학금 카드사용이 불가합니다.

- ① OTT 및 미디어 구독 서비스 요금
- ② 게임 관련 결제
- ③ 가정용품: 침구, 커튼, 수예품, 정수기, 비데, 주방용품, 보일러 등
- ④ 차량 관련 용품: 자동차(오토바이, 자전거 포함) 관련 수리, 부속 용품 등
- ⑤ 숙박 관련 비용: 호텔, 콘도, 펜션, 모텔 등
- ⑥ 금융 및 공과금: 은행 예치, 보험 지출, 세금·관리비·통신요금 등
- ⑦ 생활 서비스 이용: 목욕, 미용, 피부관리, 안마, 세탁, 사진 촬영, 광고 및 인쇄, 운전 대행, 각종 렌트, 가례, 부동산 임대비 및 중개 수수료 등
- ⑧ 사치품 및 귀중품: 특급 호텔, 모피, 무스탕, 시계, 귀금속, 유흥, 사치품목
- ⑨ 기타: 기부금(정치자금), 각종 단체회비, 상품권류 구매 등

※ 결제가 완료되더라도 정기 모니터링 시 소명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품목으로 비교육적 목적 사용이 확인된 경우 장학금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용 가능 가맹점 확인] 장학금 사용이 허용된 품목이더라도 가맹점 계약 시 등록된 업종 분류에 따라 일부 가게에서 결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결제처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시어, 사용 가능한 가맹점인지 하나카드사(1800-1111)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불가 항목 상세 안내

구분	업종	상세 안내
숙박업	호텔	일반호텔, 관광호텔
	레저용 숙박업소	콘도, 펜션, 민박, 유스호스텔, 야영장
	기타 숙박업소	여관, 모텔, 여인숙 등
여객/화물/운송	항공사	
	택배, 화물운송업	퀵서비스, 항공소포배달, 이사짐센터 등
여행/오락/휴식	여행사 등	여행사, 유학, 이민 대행사 등
	오락시설	노래방, 카지노, 성인오락실, PC방, DVD방, 휴게텔, 보드카페, 당구장 등
취미/레저/스포츠	골프장	골프장, 골프연습장 등
	회원, 화초	
	예술품, 골동품	골동품, 미술품, 예술품 등
	수집품, 기념품	우표, 지폐, 기념주화 등
	민예품, 공예품	종교 관련 전문물품점(서적 제외)
	애완동물, 용품	
음식점/주점	총포류	총포사
	뷔페, 출장연회	출장요리
	주점	일반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구분	업종	상세 안내
유통업	농·수·축협직판장 및 농협식품전문점	농·축협, 수협직영매장, 농협중앙회 회원의 하나로마트, 농산물 등
	백화점, 면세점, 기타 아울렛	
	대형 할인점	매장면적 3,000㎡ 이상 & 주된 취급 품목없이 각종 유형의 상품을 종합적으로 판매하는 형태
	PG(소득공제 제외)	* 안심클릭 필수/ 세금, 공과금,과태료,원서접수,초중고수업료,입학금,공납금 등
	PG대학등록금	* 안심클릭 필수/ 원서접수,대학등록금
	홈쇼핑	
	통신, 방문판매	카탈로그, 우편, 전화 판매, 방문판매 등
	기타 무점포	기타 일정한 매장없이 유형의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다단계판매 등
식음료	인삼 전문점	
	한국인삼공사	
	농산물, 청과물	
	수산물, 건어물	
	축산물, 정육점	
	건강보조식품	알로에, 녹즙, 생식, 건강원, 벌꿀 등
	주류 전문점	
의류/잡화	아동, 유아복	아동, 유아 용품 (출산용품) 포함
	모피, 무스탕	
	양복점, 한복점	
	가방, 핸드백	지갑, 여행용 트렁크 판매 포함
	가발	
	기타 잡화	
가구/가정용품	침구 및 수예품	침구류(베게,이불), 수예품(뜨개실 포함)
	커튼, 카펫, 수건	
	정수기, 비데	
	기타 가정용품	비전기식 기타 가정용품(거울, 액자 등), 주방용품 등
	조명기구, 전기	
	보일러, 펌프, 샷시	
	실내장식	인테리어 등
	기타 건축자재	
가전/전자/컴퓨터	가전제품	전기식 가정용품(영상, 음향, 전열기기 등)
	기타 전자제품	노래방기계, 앰프, 에어컨 업소용 전자제품 등
운송수단 관련	자동차	자동차(중고품), 관련 부품 등
	오토바이, 자전거	
	기타 운송기구	
	주유소, 연료 등	
기타 상품	비료, 사료, 종자	농약 포함, 가축사료포함
	화장품	
	선물용품점	
	중고품 판매점	
	시계, 귀금속	시계, 금은 세공품, 반지, 귀걸이 등
	유희, 사치용품	성인용품점 등
	기타 상품 판매점	이벤트, 파티 안전용품 소방기구, 합성수지 공구류가 아닌 기계장비 등

구분	업종	상세 안내
교육	유치원	어린이집 포함
	대학교, 대학원	
서적/문구/사무용품	완구	인형, 게임기 및 게임팩, 조립완구 소매
	기타 사무용 기기	금전등록기, 팩시밀리 등
보건의료	의약품판매	동물약품 포함, 제약회사 등
	기타 약품, 의료기기	가정용 방충제, 뜸치료기, 수지침 등
	요양병원, 한방병원	
	한방병원	
	성형외과	
	산후조리원	
각종 요금	요양, 보육, 복지시설	놀이방, 탁아시설, 요양시설 등
	세금, 공공요금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비영리단체로서 공공시설, 휴양림, 수련원 이용 서비스 요금 등 포함
	아파트 관리비	
금융업	서비스 요금	우편, 전화요금, 유선 및 위성방송 요금 등
	보험 관련 비용	
서비스 관련	기타 금융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투자자문업 등
	목욕탕 등	사우나, 대중 목욕탕, 찜질방, 황토방 등
	미용실	
	피부, 체형 관리	피부미용, 네일아트, 메이크업 전문점 등
	이발소	
	기타 대인서비스	안마시술소, 마사지, 안마원 등
	세탁업	빨래방, 운동화 세탁전문점 등 포함
	사진관, 현상소	
	판촉물, 인쇄, 복사	
	광고기획, 대행업	
	경비업	경호서비스, 경비시스템 제공 및 관리 등
	대리운전	대리운전
	차량 서비스	주차장, 폐차장, 견인, 정비 등
	가례 서비스 등	예식장, 웨딩서비스, 장례식장, 납골당 등
	전문 서비스	변호 서비스, 법무 서비스 등
	부동산 중개	부동산 중개
	기타 서비스	청소서비스 등
	점술업	역술원, 점성술, 관상, 작명원, 철학관 등
	기타 장비임대	정수기, 비데, 가전제품, 가구 임대 등
	창고보관업	일반 창고, 창고 사용료 및 보관료 등
기타	수리 수선 전문	가전제품, 악기 등 각종 수리 전문점
	기부금 및 각종 단체 회비	기부금, 각종 단체 회비, 상품권, 사금융, 고속도로 통행카드 등
	식음료(기타)	식음료(농수축산물포함) 제품을 제조, 가공하는 형태
	의류관련(기타)	의류 관련 제품을 제조, 가공하는 형태
	기계.장비(기타)	각종 기계 및 장비류를 제조, 가공하는 형태

참고3

장학금 사용 가능/불가 범위 전체 안내

업종구분	세부구분	상세안내	사용 가능여부	
숙박업	호텔	일반호텔, 관광호텔	불가	
	레저용 숙박업소	콘도, 펜션, 민박, 유스호스텔, 야영장	불가	
	기타 숙박업소	여관, 모텔, 여인숙 등	불가	
여객/화물/운송	항공사		불가	
	고속, 시외버스		허용	
	철도	고속철도 포함	허용	
	여객선		허용	
	택시		허용	
	지하철		허용	
	시내버스		허용	
	기타 승객운송업	관광버스, 학교버스, 셔틀버스 등	허용	
여행/오락/휴식	택배, 화물운송업	퀵서비스, 항공소포배달, 이사집센터 등	불가	
	여행사 등	여행사, 유학, 이민 대행사 등	불가	
	테마파크	놀이시설, 놀이공원, 유원지 등	허용	
	오락시설	노래방, 카지노, 성인오락실, PC방, DVD방, 휴게텔, 보드카페, 당구장 등	불가	
취미/레저/스포츠	기타 문화시설	천문관, 과학관, 미술관, 역사 박물관 등	허용	
	골프장	골프장, 골프연습장 등	불가	
	헬스클럽		허용	
	영화, 공연장	연주홀, 뮤지컬, 스포츠관람 등	허용	
	기타 취미,레저	기원, 수영장, 볼링장 등	허용	
	종합 스포츠용품점	스포츠의류, 운동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매하는 브랜드 매장	허용	
	전문 스포츠용품점	등산, 낚시, 골프, 헬스 용품 등 특정 분야의 용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	허용	
	악기 판매점	현악기, 건반악기, 타악기, 관악기 및 전통악기 등 각종 악기 판매	허용	
	비디오, 음반	DVD 판매점 포함	허용	
	화원, 화초		불가	
	예술품, 골동품	골동품, 미술품, 예술품 등	불가	
	수집품, 기념품	우표, 지폐, 기념주화 등	불가	
	화방, 표구점		허용	
	민예품, 공예품	종교 관련 전문물품점(서적 제외)	불가	
	애완동물, 용품		불가	
	총포류	총포사	불가	
	기타 레저 용품	어항, 수족관, 체육사(취미용품포함) 등	허용	
	음식점/주점	일반음식점	단, 상호 및 간판에 맥주, 호프, 와인, 주점 등 확인되는 경우 사용 불가	허용
		중식전문점		허용
일식전문점		허용		
서양식전문점		허용		
패스트푸드점		허용		
치킨전문점		허용		
뷔페, 출장연회		출장요리	불가	
커피전문점			허용	
아이스크림전문점			허용	
기타 음식점		단체급식, 구내식당 등	허용	
주점		일반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불가	
유통업	슈퍼마켓, 마트	매장면적 3,000㎡ 이하 & 음식료품 위주로 하면서 각종 생활잡화를 함께 취급하는 형태	허용	
	편의점		허용	

업종구분	세부구분	상세안내	사용가능여부
	농·수·축협직판장 및 농협식품전문점	농·축협, 수협직영매장, 농협중앙회 회원의 하나로마트, 농산물 등	불가
	소비조합(구내매점)	소비조합, 공공기관 및 회사 구내매점 등	허용
	기타 종합소매점	고속도로 휴게소 매점, 영화관 내 매점 등	허용
	백화점, 면세점, 기타 아울렛		불가
	대형 할인점	매장면적 3,000㎡ 이상 & 주된 취급 품목없이 각종 유형의 상품을 종합적으로 판매하는 형태	불가
	연쇄점		허용
	PG	* 안심클릭 필수	허용
	PG(공공서비스)	* 안심클릭 필수 / 택시, 관광버스, 학교, 셔틀버스 등	허용
	PG(Open Market)	* 안심클릭 필수/ 온라인상 시장을 오픈하여 일반 상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이트를 운영 및 결제대행 업체	허용
	PG(소득공제 제외)	* 안심클릭 필수/ 세금, 공과금, 과태료, 원서접수, 초중고수업료, 입학금, 공납금 등	불가
	PG대학등록금	* 안심클릭 필수/ 원서접수, 대학등록금	불가
	기타 PG		허용
	인터넷상거래		허용
	홈쇼핑		불가
	통신, 방문판매	카탈로그, 우편, 전화 판매, 방문판매 등	불가
기타 무점포	기타 일정한 매장없이 유형의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다단계판매 등	불가	
식음료	인삼 전문점		불가
	한국인삼공사		불가
	제과, 제빵		허용
	농산물, 청과물		불가
	수산물, 건어물		불가
	축산물, 정육점		불가
	건강보조식품	알로에, 녹즙, 생식, 건강원, 벌꿀 등	불가
	주류 전문점		불가
	기타 식음료품	떡집, 방앗간, 자판기에 의한 판매 등	허용
의류/잡화	일반의류		허용
	아동, 유아복	아동, 유아 용품 (출산용품) 포함	불가
	내의류	런닝, 팬티, 브래지어, 잠옷 등	허용
	모피, 무스탕		불가
	교복		허용
	양복점, 한복점		불가
	가방, 핸드백	지갑, 여행용 트렁크 판매 포함	불가
	구두, 신발	구두, 운동화 등 각종 신발류	허용
	가발		불가
	기타 잡화		불가
가구/가정용품	가구	사무가구, 가구전문점	허용
	가구판매점	목재 가구 등 각종 가구 판매	허용
	침구 및 수예품	침구류(베게,이불), 수예품(뜨개질 포함)	불가
	커튼, 카펫, 수건		불가
	정수기, 비데		불가
	기타 가정용품	비전기식 기타 가정용품(거울, 액자 등), 주방용품 등	불가
	조명기구, 전기		불가
	보일러, 펌프, 샷시		불가
	실내장식	인테리어 등	불가
기타 건축자재		불가	

업종구분	세부구분	상세안내	사용가능여부
가전/전자/컴퓨터	가전제품	전기식 가정용품(영상, 음향, 전열기기 등)	불가
	통신기기	핸드폰, 전화기 등	허용
	컴퓨터 및 주변기기	컴퓨터 주변기기(프린트기, 마우스 등) 포함	허용
	기타 전자제품	노래방기계, 앰프, 에어컨 업소용 전자제품 등	불가
운송수단 관련	자동차	자동차(중고품), 관련 부품 등	불가
	오토바이, 자전거		불가
	기타 운송기구		불가
	주유소, 연료 등		불가
기타 상품	비료, 사료, 종자	농약 포함, 가축사료포함	불가
	화장품		불가
	선물용품점		불가
	중고품 판매점		불가
	시계, 귀금속	시계, 금은 세공품, 반지, 귀걸이 등	불가
	유희, 사치용품	성인용품점 등	불가
	기타 상품 판매점	이벤트, 파티, 안전용품, 소방기구, 합성수지, 공구류가 아닌 기계/장비 등	불가
교육	유치원	어린이집 포함	불가
	초중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등 공납금	허용
	대학교, 대학원		불가
	입시학원, 보습학원		허용
	외국어학원		허용
	자동차운전학원		허용
	예체능 계열 학원	음악, 미술, 무용, 연기, 예술학원, 체육학원	허용
	무술도장	수련시설(태권도장, 합기도장 등)	허용
	기술, 직업훈련학원	통신교육, 통신기술 학원, 자동차정비 학원, 미용 학원, 직업훈련원 등	허용
	기타 교육, 교습, 학원	컴퓨터학원, 개인교습소, 독서실 등	허용
서적/문구/사무용품	서적	서적, 잡지, 출판	허용
	교육 및 교구	학습지, 학습교구 등	허용
	문구, 사무용품	문구용구, 필기용구, 회화용구, 사무용품 포함	허용
	완구	인형, 게임기 및 게임팩, 조립완구 소매	불가
	기타 사무용 기기	금전등록기, 팩시밀리 등	불가
광학	카메라, 캠코더	사진용 화학물, 사진필름, 사진 장비, CCTV	허용
	안경, 광학제품	콘택트렌즈, 선글라스를 포함한 각종 안경 등	허용
보건의료	의약품판매	동물약품 포함, 제약회사 등	불가
	기타 약품, 의료기기	가정용 방충제, 뜸치료기, 수지침 등	불가
	종합병원, 일반병원		허용
	일반병원		허용
	요양병원, 한방병원		불가
	한방병원		불가
	기타 전문병원, 의료업	건강검진기관 전문기관, 보건소 등	허용
	한의원		허용
	치과		허용
	안과		허용
	내과		허용
	외과		허용
	정형외과		허용
	피부과	비뇨기과	허용
소아과	청소년과	허용	
산부인과		허용	

업종구분	세부구분	상세안내	사용가능여부	
	이비인후과		허용	
	신경정신과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과	허용	
	성형외과		불가	
	산후조리원		불가	
	약국, 한약방		허용	
	한약방	한약국 포함	허용	
	동물병원		불가	
	요양, 보육, 복지시설	놀이방, 탁아시설, 요양시설 등	불가	
각종 요금	세금, 공공요금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비영리단체로서, 공공시설, 휴양림, 수련원 이용 서비스 요금 등 포함	불가	
	아파트 관리비		불가	
	서비스 요금	우편, 전화요금, 유선 및 위성방송 요금 등	불가	
금융업	보험 관련 비용		불가	
	기타 금융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투자자문업 등	불가	
서비스 관련	목욕탕 등	사우나, 대중 목욕탕, 찜질방, 황토방 등	불가	
	미용실		불가	
	피부, 체형 관리	피부미용, 네일아트, 메이크업 전문점 등	불가	
	이발소		불가	
	기타 대인서비스	안마시술소, 마사지, 안마원 등	불가	
	세탁업	빨래방, 운동화 세탁전문점 등 포함	불가	
	사진관, 현상소		불가	
	판촉물, 인쇄, 복사		불가	
	광고기획, 대행업		불가	
	경비업	경호서비스, 경비시스템 제공 및 관리 등	불가	
	대리운전	대리운전	불가	
	차량 서비스	주차장, 폐차장, 견인, 정비 등	불가	
	가례 서비스 등	예식장, 웨딩서비스, 장례식장, 납골당 등	불가	
	전문 서비스	변호 서비스, 법무 서비스 등	불가	
	스터디카페 등	스터디카페	허용	
	부동산 중개	부동산 중개	불가	
	기타 서비스	청소서비스 등	불가	
	점술업	역술원, 점성술, 관상, 작명원, 철학관 등	불가	
	기타 장비임대	정수기, 비데, 가전제품, 가구 임대 등	불가	
	창고보관업	일반 창고, 창고 사용료 및 보관료 등	불가	
	수리 수선 전문	가전제품, 악기 등 각종 수리 전문점	불가	
	기타	기부금 및 각종 단체 회비	기부금, 각종 단체 회비, 상품권, 사금융, 고속도로 통행카드 등	불가
		식음료(기타)	식음료(농수축산물포함) 제품을 제조, 가공하는 형태	불가
의류관련(기타)		의류 관련 제품을 제조, 가공하는 형태	불가	
기계.장비(기타)		각종 기계 및 장비류를 제조, 가공하는 형태(전자부품 등)	불가	

서식

장학금 사용 소명서

장학금 사용 소명서

선정연도	년도	장학생 구분	<input type="checkbox"/> 중학생 <input type="checkbox"/> 고등학생 <input type="checkbox"/> 대학생				
성명		법정생년월일	년	월	일	성별	남, 여
소속 학교명		학년					

장학금 사용 소명내역

※ 소명 필요 거래 내역을 모두 기입(필요 시 별지 서식을 활용하여 증빙자료 제출)

사용처(거래처)	거래금액	거래일시	사용목적(소명내용)

본인은 소명 요청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장학금 사용내역을 보고드리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V. 장학금 반환 관리

1. 개요	124
2. 장학금 지원 중지 및 조치사항	127
3. 처리절차	128
4. 장학금 반환 부담 경감제도	133
5. 기타사항	135
[별첨] 관련 서식	136

[서식1]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반환대상자 지정 통지서 ·	136
[서식2] 장학금 반환 감면 · 유예 신청서	138
[서식3]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일시반환 약정서	139
[서식4]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분할반환 약정서	140
[서식5] 장학금 반환 유예 · 감면대상자 성실반환 이행 약속서 ·	141
[서식6] 독촉장	142
[서식7] 최고장	143
[서식8] 이의신청서	144

V 장학금 반환 관리

1. 개요

□ 추진 목적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의 반환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장학금 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

□ 추진 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등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조(국가의 책무) 등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주요 정의

- (반환관리) 부적정 지급 장학금 회수 조치 등
- (지원제한사유) 장학생 자격중단 및 장학금 계속지원 제한 사유
- (불성실 반환대상) 장학금 반환 미이행 또는 고의적 연락 두절 등
- (공공재정)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 등
- (부정이익) 부정청구 등으로 공공재정에서 얻거나 사용한 금품

□ 적용 대상

- 장학생 사후관리에 따라 자격변동 및 반환금이 발생한 자
 - ① (사후관리에 따른 반환대상) 사후적인 수혜자의 변동사항(학적변동 등)으로 반환금이 발생한 자
 - ② (부정이익 환수 대상)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6호에 해당하는 자

< 장학금 반환 · 공공재정환수 대상의 구분 >

구분	사유
<p>① 사후관리에 따른 반환 대상</p>	<p>①정학·퇴학 등 징계를 받은 자 ②형사처벌(처분)을 받은 자 ③「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4~6호, 제8~9호에 해당하는 자, ④소속학교 판단 하의 국가장학생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경우</p> <hr/> <p>자퇴·제적, 학년 미진학 등 학업 중단 시(휴학 제외)</p> <hr/> <p>장학생이 활동 기간 중 타 장학금을 신청하여 이중수혜를 받는 경우 ※ 발생 시점에 따라 사후변동에 따른 반환절차와 부정이익 환수절차로 구분하여 적용 판단</p> <hr/> <p>’19.12.31. 이전 발생한 부정청구 ※ 공공재정환수법 이전 발생한 부정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규정 등 업무처리기준 적용</p>
<p>② 부정이익 환수 대상 (공공재정 환수대상자)</p>	<p>(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p> <hr/> <p>(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p> <hr/> <p>(목적외사용)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p> <hr/> <p>(오지급)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p>

□ 장학금 지원 중지 및 회수 조치

- 자격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장학금 지원중단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장학금 지원 중지 및 후속조치 실시

* 장학금 지원제한 상세 사유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장학생 계속 지원 및 사후·반환관리 업무처리기준>장학생 사후관리>지원제한 유형별 사유(조치사항) 참고」

□ 추진 체계

계획 수립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수립	
사후관리	· 사후관리(장학생 자격 점검 및 장학금 카드사용 모니터링 등) · 장학금 지원의 중지(장학금 지원 중단 처리, 반환금 발생 여부 확인 등)	
반환관리	반환대상자	
	사후변동에 따른 반환 대상 (반환개시) 자발적 반환	공공재정환수 대상 부정이익조사대상자 지정·관리
	Y: 반환약정 및 반환, 반환 면제·유예신청 N: 불성실반환 대상자 지정·통보(반환 독촉 및 최고)	· 정기조사 · 조사결과 통보 · 사전처분 통지
	Y: 불성실반환대상자 지정 해제 및 반환 N: 강제환수(법적조치 등)	환수처분통지
반환종료	반환관리 종료	미반환대상자 자격중단 및 장학금 지원 중지
		정상종료
		Y: 환수 완료 N: 독촉 및 납부 최고
		Y: 환수 완료 N: 재산조사 및 체납처분 (공공재정환수 총괄부서로 이관)

□ 업무처리절차

- 장학생의 자격변동 등의 제한사유에 따라 부적정 지급 또는 수혜 가능 횟수를 초과하여 지급된 장학금에 대한 반환관리 실시

< 장학금 반환관리 처리 절차 >

기 지급된 장학금의 반환 필요 사유 발생 시 장학금 반환 실시

① 사후관리에 따른 반환 대상자 반환 절차

반환사유 통지 반환사유 발생 즉시 재단으로 반환사유 통지 반환대상자 → 재단	반환금액 산정* 반환사유 인지 즉시 사유발생일 및 반환대상금액 확인 재단	반환 결정·통지 사유발생일 이후 지급한 장학금에 대한 반환금 결정·통지 재단 → 학생·학부모	장학금 반환 재단이 반환을 통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일시반환 또는 분할반환 약정 체결 학생·학부모 → 재단
---	---	--	--

* 장학금 반환액 산정 시점에 반환대상자의 장학금 미사용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 차감하여 반환금 산정

② 부정이익 환수 대상자 환수 절차(공공재정환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진행)

부정이익조사대상자 지정·관리 부정이익 조사 대상자 환수 필요 여부 확인 재단 → 반환대상자	정기조사 계획 수립 정기조사 계획 수립 및 사전 안내 재단	정기조사 실시 및 조사 종결 부정청구 확인, 조사결과 통보, 처분의 사전 통지(의견제출) 재단 → 학생·학부모	부정이익환수대상자 지정·관리 환수처분통지 (납부고지) 재단 → 환수대상자
---	---	--	---

2. 장학금 지원 중지 및 조치사항(자격유예, 자격중단, 자격박탈)

□ 장학생의 자격 유지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장학금 지원을 중단하고 아래에 따라 조치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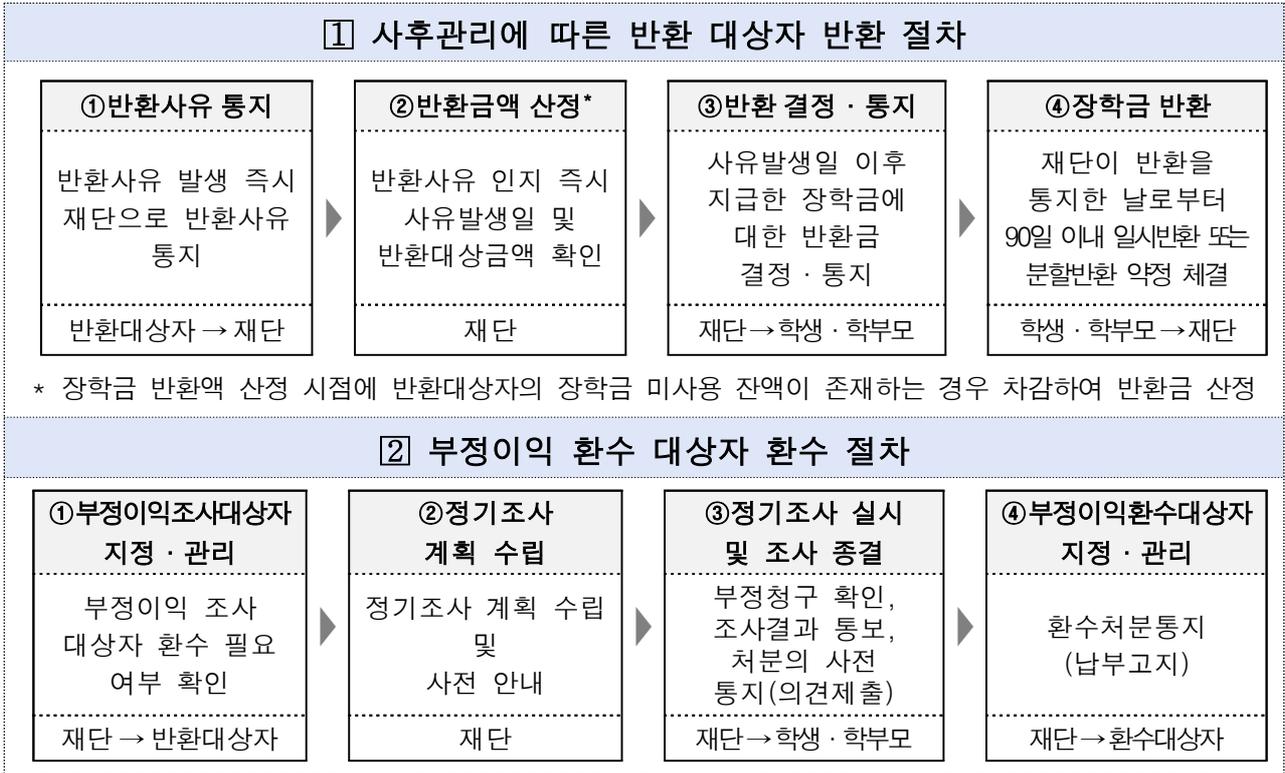
〈지원제한 유형별 상세 조치사항〉

지원제한 유형 및 지원제한 사유	장학금 지원 중단	기수해 장학금 환수	미사용 잔액 환수	신규 장학생 신청	적용대상 구분
자 격 유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재지변, 전시, 사변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되어 일시적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 장학생 본인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 (대학생) 휴학으로 인한 학업 중단(군입대 포함) • (고교 졸업생(재수예정자)) 고등학교 졸업 후 당해연도의 대학 미진학자로 정기 계속심사를 통과한 자 ※ 유예기간은 졸업 당해연도 3월부터 차년도 신입학 확정 시 까지로 1회에 한하여 적용 • 계속심사(정기·보완) 시 소득기준 자격 미충족(최대 3개월) 및 기타 장학생 활동 내용이 불성실한 경우 등 	△*	X	○	○	-
자 격 중 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보완심사시 소득기준 확인 결과, 자격유예(최대 3개월) 후에도 수급자격이 미충족하는 경우 • 장학금 부적정 사용횟수가 연 누적 3회인 자 • 자퇴, 휴학, 학년 미진급, 제적 등 자격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학업 중단 • (고등학생) 직전 학년 성적 기준에 2회 이상 미달한 자 • (대학생) 직전 학기 이수학점·성적 기준에 2회 이상 미달한 자 • 자격유예 불성실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해당 유예기간이 소멸한 자 • 계속장학생 정기심사 미신청자 및 심사탈락자 • 멘토링 활동 결과보고서 미제출자 	○	X	○	○	사후변동
자 격 박 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정학·퇴학 등 징계를 받은 자, ②형사처벌(처분)을 받은 자, ③「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6호, 제8~9호에 해당하는 자, ④소속학교 판단 하의 국가 장학생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경우 • 장학금 신청 및 지급 시점에 타 장학금과 이중수혜 하는 경우 • 장학생 이외의 자가 개인 용도로 유용한 경우 •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고의에 의한 허위로 판명 시 	○	X	○	X	사후변동
	○	○	○	X	부정이의, 사후변동**
	○	○	○	X	부정이의
	○	○	○	X	부정이의

* △: 자격유예 종료 후, 자격유지 또는 자격중단에 따라 장학금 지원중단 여부 결정

** 이중수혜의 경우 발생 시점에 따라 사후변동에 따른 반환절차와 부정이의 환수절차로 구분하여 적용함

3. 처리절차



① 사후관리에 따른 반환 대상자의 반환 절차

- ① **반환사유 통지**(장학생 · 멘토, 소속 학교 → 한국장학재단)
 - 장학생 · 멘토 및 소속학교는 장학생 지원제한사유 발생 즉시 재단으로 보고
 - 재단은 신고된 지원제한사유를 확인하여 사유별 후속 조치 실행
- ② **반환금액 산정**
 - 지원제한 사유별 해당 사유 발생일(확정일) 이후* 지급된 장학금 전체
 - 사유 발생일 이후 지급된 장학금에 대해서는 전체 반환 대상이나 미사용 카드 포인트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미사용 잔액을 선 차감 후 실제 반환금액 산정
 - *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월에 1일 이상 장학생 자격을 유지한 경우 차기 월 지급된 장학금부터 반환금 산정

▶ **반환금액: 사유발생일(확정일) 이후 지급된 장학금 - 미사용 카드 포인트 잔액**

③ 반환 결정·통지

- 자격중단 및 장학금 지원중단에 따라 반환금이 발생하는 경우 반환대상자로 지정함
- 반환대상자 지정일은 사유발생일 해당 월의 마지막 날로 정하며, 재단은 반환방법 및 반환금액 등을 반환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재단은 반환대상자가 반환사유, 반환방법, 반환기한 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유선) 후 반환대상자 지정 통지서 발송
 ⇨ (통지방법) 전화, 문자, 우편, E-mail을 통해 장학금 반환 통보

④ 장학금 반환

- 반환대상자는 약정 일자를 기준으로 반납기한 내에 반환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재단은 회수된 반환금에 대하여 귀속 연도에 맞게 수입 처리함
- (유형1) 자발적 반환대상자의 반환관리
 - 반환대상자는 지정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일시 반환 또는 분할 반환 약정 신청을 해야 하며,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반환이 어려운 경우 유예·면제 신청 가능
 - ⇨ (일시반환) 반환대상자는 일시반환약정서를 제출하고 지정된 반환일에 반환금액을 일시에 전액 반환해야 함
 - ⇨ (분할반환) 반환대상자는 분할반환약정서를 제출하고 매월 지정된 납입일에 균등 분할 반환해야 함

< 참고. 분할반환약정 세부 운영 기준 >

반환대상금액	분할약정 기간
100만원 이하일 경우	12개월 이내에서 매월 균등 분할 반환 가능
1,000만원 이하일 경우	24개월 이내에서 매월 균등 분할 반환 가능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48개월 이내에서 매월 균등 분할 반환 가능

- ※ 단, 반환대상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분할반환은 불가하며, 분할반환 약정은 매월 납부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 약정체결 불가
- ※ 약정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납입일부터 매 1개월마다 지정된 납입일에 균등 분할 반환해야 함
- ※ (중도반환) 반환기간 중 반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할 수 있으며, 전액 반환하는 경우 분할반환이 중단됨
- ※ 약정 시 체결한 분할반환금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하며 지정 납부일이 아니더라도 입금 가능
- ※ 분할약정 기간은 이에 준하여 판단하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장기 상환이 필요한 경우 학생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반환 감면·유예 신청) 반환대상자는 반환대상자 지정 및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반환을 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타 불가피한 상황으로 즉시 반환이 어려운 경우 반환 감면·유예 신청 가능 (상세내용은 <장학금 반환 부담 경감제도> p.133 참고)

○ (유형2) 불성실 반환대상자 반환관리

- (불성실 반환대상자 지정) 반환대상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불성실 반환대상자로 지정

- 반환대상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환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반환일에 약정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 분할반환 약정 후 납입일로부터 90일* 이상 반환하지 않은 경우
* 누적 미납일이 아닌, 최근 연속 90일(미납 3회) 이상인 경우
- 전화, 문자, 우편, E-mail을 통해 최대 10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미응답 또는 고의적 연락 두절 상태인 경우

- (불성실 반환대상자 지정 및 통보) 한국장학재단은 불성실 반환대상자에게 반환방법, 반환금액, 불성실 반환대상자 지정 시 발생 가능한 제한사항 등을 통보

- (독촉장 발송대상자 지정 및 통보) 불성실 반환대상자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약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은 반환 방법 및 반환금액 등을 독촉장 발송대상자에게 통보

- (최고장 발송대상자 지정 및 통보) 환수대상자는 독촉장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환금을 상환해야하며, 한국장학재단은 반환하지 않은 경우 30일내 환수 최고

- (강제환수) 반환 최고에도 불구하고 반환대상자가 30일 이내에 반환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에 의한 민사 소송(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 지급명령) 등의 강제적 환수 절차 진행

- (불성실 반환대상자의 제한) 불성실 반환대상자로 지정되는 경우 대상자 지정 해제 시까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제한 가능

- (불성실 반환대상자 지정 해제) 불성실 반환대상자로 지정된 자 중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불성실 반환대상자 지정을 해제함

- 일시반환 약정을 한 대상자가 전액 상환을 하거나 분할반환 약정을 하는 경우
- 불성실 반환대상자가 지정일까지 미납된 분할반환금을 전부 반환하는 경우

□ 기타사항

- 반환대상자 및 법정대리인의 행방이 불명한 경우 최장 5년간 사후관리(행방조사 등) 실시하며, 소송 등 법적절차 진행은 소멸시효관리 등 채권관리상 필요에 따라 진행
-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재단이 반환대상자에게 5년 동안 장학금 반환 환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

② 부정이익 환수대상자(공공재정환수법 적용대상) 환수 절차

① 부정이익 조사대상자 지정 · 관리

- (부정이익 조사대상자 지정) 환수대상자 중 신청 및 지급 시점에 부정 청구에 해당하여 환수가 필요한 자로 한정하며, 수혜자의 사후적인 변동사항으로 반환되어야 할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미적용

② 정기조사 계획 수립

- 조사의 종류, 공동조사 실시계획, 조사의 근거, 목적, 범위, 조사 기간 및 시기 등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

③ 정기조사 실시 및 조사 종결

- 환수대상자의 부정 청구 발생 여부 및 발생 원인 등을 조사
 - (조사시기) 장학금 부정이익의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 ※ 단, 업무 일정에 따라 조사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조사방법)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출석·진술 요구 가능

- (사전안내) 조사개시 7일 전까지 부정이익조사대상자와 조사대상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안내
 - (조사결과통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 결과를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조사결과통지서'를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발송
 - (처분사전통지)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에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
- ⇒ 의견제출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정하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④ 부정이익 환수대상자 지정·관리

- (대상) 부정이익 조사 대상자 중 부정청구가 확인되어 환수처분을 받은 자
- (환수처분통지) 사전 처분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여 환수대상자를 지정하고 환수금액을 산정하여 환수처분 후 관리
 - ※ 재산조사 및 체납처분 대상자는 재단의 공공재정환수 업무 총괄부서로 이관하여 통합관리
- (이의신청) 공공재정 환수처분을 받은 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독촉) 부정 수익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 금액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 독촉 안내문 발송 총 3회 실시
 - ※ 독촉은 납부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최소 1회 이상은 반드시 실시
- (납부최고) 3차례의 독촉 안내문에도 불구하고 납부 금액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 독촉장 발송이 끝난 다음 달 10일 이내 납부최고서 발송

□ 기타사항

- 정기조사 업무 외 환수에 관한 일체 사항은 공공재정환수법 및 동법 시행령과 한국장학재단 「공공재정환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처리
- 부정이익환수대상자 중 재산조사 및 체납처분 대상자는 재단의 공공재정환수 업무 총괄부서로 이관하여 통합관리

4. 장학금 반환 부담 경감제도

□ 목적

- 경제적·신체적 및 기타 조건으로 인하여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장학금 반환 이행 확보를 목적으로 함(관련: 헌법 제34조제5항)

□ 반환 면제·감면 및 유예 대상

- 장학금 반환 대상자의 사망 및 중증장애인 판정, 소년소녀 가장 등 반환이 곤란하거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즉시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자(※공공재정 환수대상자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
 - 단, 반환 사유 발생일 기준 1년 이내 발생한 경우에 한함

< 1. 장학금 반환 면제·감면 유형 >

구분	유형	사유	면제비율 및 제출서류						
면제 및 감면	[유형1] 사망	• 장학생 본인 사망 시	• 반환금 전액(100%) 면제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유형2]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가정 및 시설에 위탁 중인 경우 - 대리양육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 가정위탁 : 친인척에 의한 양육(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 - 일반 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 소득자격 요건에 따라 총 반환액의 70~100% 감면 - 수급자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h>구분</th> <th>감면비율</th> </tr> <tr> <td>법정차상위계층</td> <td>70%</td> </tr> <tr> <td>기초생활수급자</td> <td>90%</td> </tr> </table> * 감면 신청일 기준 나이를 적용하며, 만 14세 미만은 100% 감면 적용	구분	감면비율	법정차상위계층	70%	기초생활수급자	90%
	구분	감면비율							
	법정차상위계층	70%							
기초생활수급자	90%								
[유형3] 장애판정	• 장학생 본인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중증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소득자격 요건에 따라 총반환액의 70~90% 감면 - 진단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h>구분</th> <th>감면비율</th> </tr> <tr> <td>법정차상위계층</td> <td>70%</td> </tr> <tr> <td>기초생활수급자</td> <td>90%</td> </tr> </table>	구분	감면비율	법정차상위계층	70%	기초생활수급자	90%	
구분	감면비율								
법정차상위계층	70%								
기초생활수급자	90%								
[유형4] 중증질환	• 장학생 본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의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이에 준하는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소득자격 요건에 따라 총반환액의 70~90% 감면 - 진단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h>구분</th> <th>감면비율</th> </tr> <tr> <td>법정차상위계층</td> <td>70%</td> </tr> <tr> <td>기초생활수급자</td> <td>90%</td> </tr> </table>	구분	감면비율	법정차상위계층	70%	기초생활수급자	90%	
구분	감면비율								
법정차상위계층	70%								
기초생활수급자	90%								

< 2. 장학금 반환 유예 유형 >

구분	기준	유형	사유	면제비율 및 제출서류
유예	나이 무관	[유형1]	• 학생 본인의 출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신고서
		[유형2]	• 군복무(예정)자	• 입영통지서 • 군복무 입증 서류 일체* * 병적증명서 등
		[유형3]	• 학생 본인이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증명서
	만19세 미만 학생 한정	[유형4]	• 부 또는 모의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유형5]	• 부 또는 모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수급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유형6]	• 부 또는 모의 파산/면책, 개인회생 결정	•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관련 법원결정문
		[유형7]	• 부 또는 모가 중증질병* 발병 시 * 암,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백혈병, 폐결핵, 심부전증, 상해,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 단, 상해의 경우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12주 이상에 한함	• 부/모 확인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기타	[유형8]	• (예외적 사유) 기타 등의 사유로 반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공적 서류 또는 의견서

※ 장학금 반환유예 유형(감면 사유)에 중복 해당하는 경우 감면 비율 높은 유형으로 우선시하여 적용

□ 신청방법 및 대상자 결정

- 반환대상자는 재단의 반환대상자 지정 통보 후 90일 이내 반환 감면·유예 신청서(서식2)를 작성하여 한국장학재단으로 신청
- 재단은 장학생 선발·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반환금 면제 및 유예 여부 결정

□ 기타 유의사항

- 반환금이 30만 원 미만일 경우 반환유예 신청 불가
- 반환 유예 신청은 반환약정을 체결한 자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반환 유예 신청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최종 결정은 장학생선발 관리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짐

※ 단, 유예기간(3년) 종료 후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에는 장학생선발관리위원회에서 유예기간 연장 결정 가능

- 반환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반환대상자는 그 다음날부터 반환대상자로 재지정되며 반환약정을 재체결해야 함
- 장학금 반환 부담 경감제도의 적용은 기 선발된 장학생을 포함

5. 기타사항

□ 이의신청

- 장학생은 장학금 반환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이의신청 가능

- 반환대상자의 지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반환 면제·유예신청이 기각된 경우
- 그 밖에 반환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 한국장학재단은 이의신청 건은 장학생 선발·관리 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함

□ 업무처리기준의 해석

- 본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 이외의 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한국장학재단의 유권해석에 따름

※ 그 외 업무처리기준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 그 밖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장학생 선발·관리 위원회에서 정함

【서식목록】

- (서식1)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반환대상자 지정 통지서
- (서식2) 장학금 반환 감면·유예 신청서
- (서식3)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일시반환 약정서
- (서식4)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분할반환 약정서
- (서식5) 장학금 반환 유예·감면대상자 성실반환 이행 협약서
- (서식6) 독촉장
- (서식7) 최고장
- (서식8) 이의신청서

※ 업무처리기준 변경 등에 따라 서식 보완 가능

별첨 관련 서식

서식1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반환대상자 지정 통지서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반환대상자 지정 통지서

성 명		소속학교		학년	
최초선정연도		법정생년월일		성별	
연 락 처		주 소			

장학금 지급현황	최초 선발 이후 총 수혜 기간(수혜 횟수)	총 ()개월(회)
	최초 선발 이후 총 수혜금액	원

장학금 반환 통지 내용	반환 대상자 지정 사유			
	반환사유 발생월	년 월	반환금액	원
	반환기한	년 월 일	반환방법	일시반환 또는 분할반환*
	반환금 입금계좌 (일시반환시)	우리은행 1005-904-286290 <한국장학재단>		

※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 시 장학생 개별 안내 예정

상기 내용과 같이 장학금 반환대상자로 지정됨을 통지합니다.
반환대상자는 재단이 통보한 반환기한까지 위 반환금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다만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재단으로 분할반환약정 신청을 통해 분할반환*(동봉 서식 작성 후 재단으로 우편 제출) 가능합니다.

※ 단, 반환대상금액이 5만 원 미만인 경우 분할반환은 불가하며, 분할반환 약정은 매월 납부액이 3만 원 미만인 경우 약정체결 불가

- 반환 대상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12개월 이내에서 매월 균등 분할 반환 가능
- 반환 대상금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24개월 이내에서 매월 균등 분할 반환 가능
- 반환 대상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8개월 이내에서 매월 균등 분할 반환 가능

년 월 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인)

장학금 반환 관련 상세 내역 안내(대상자: ○○○○)

1) 장학금 반환 금액 산정 내역

장학금 반환 금액 원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월	년 월
	장학금 반환 사유	
	사유 발생월 이후 수혜금액 <A>	원 (월 만 원 × 총 회)
	장학금 카드 사용 중단월	년 월
	중단시점 기준 미사용 카드포인트 잔액 	원
	장학금 반환 금액 산정 <A - B>	원 (원 - 원)

2) 분할 반환기간별 월별 납부액 예시 안내

※ 매월 납입 금액을 3만 원 이상으로 하여, 최대 48개월까지 분할 반환 가능

분할 반환기간	분할 반환금액 (매월 납부액)	분할 반환기간 마지막 달 반환금액
1개월(일시 반환)	원	-
12개월	원	원
24개월	원	원
48개월	원	원

※ 상기 예시와 같은 월별 반환금액은 개인별 설정 요구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서식3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일시반환 약정서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일시반환 약정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1.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의 반환대상자로서 다음 사항들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모든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본 약정서를 통해 체결된 거래 조건을 포함한 관련 내용들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음을 확약합니다.
3. 약정서에 제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발생하게 될 모든 불이익 및 법적 조치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승인합니다.

성 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e-mail	
주 소			

제1조 (거래 조건)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반환대상금액의 일시반환약정 거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환금액	()원 (재단에서 통지한 반환대상금액)
반환 방법	일시 반환
반환일	일 (약정일로부터 90일 이내)
반환 계좌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904-286290 <한국장학재단> (장학생 명의로 입금)

제2조 (반환 의무) 본인은 제1조의 반환일에 일시반환금을 성실히 입금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3조 (불성실 반환자 지정) 본인은 약정일자를 기준으로 반납기한 내에 일시반환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본 약정을 통해 승인된 일시반환약정이 중지되고 불성실 반환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확약합니다. 또한 불성실 반환자로 지정될 경우 향후 이와 관련된 일체의 법적 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약합니다.

제4조 (납부방법 변경) 본인은 이 일시반환약정에 의한 반환기간 내에서 납부방법을 변경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제5조 (기타) 기타 본 약정서의 내용을 포함한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내 장학금 반환 관련 전반에 대한 내용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재단의 「공공재정환수 업무처리기준」 관련 일체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성 명: (서명)

서식4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분할반환 약정서

장학금 반환 관련 분할반환약정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1.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의 반환대상자로서 다음 사항들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모든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본 약정서를 통해 체결된 거래 조건을 포함한 관련 내용들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음을 확약합니다.			
3. 약정서에 제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발생하게 될 모든 불이익 및 법적 조치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승인합니다.			
성 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e-mail	
주 소			

제1조 (거래 조건)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반환대상금액의 분할반환약정 거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환금액	()원 (재단에서 통지한 반환대상금액)
분할반환기간	()개월 (2개월 ~ 최대 개월 수 내에서 선택) - 반환대상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12개월 이내 - 반환대상금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24개월 이내 - 반환대상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8개월 이내
분할반환금	()원 반환 (반환대상금액을 분할반환기간으로 나눈 금액)
반환 방법 ※약정체결 이후 변경 불가	납입일: 매월 ()일 - 분할반환약정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납입일부터 매 1개월마다 균등 분할 반환
반환계좌(분할반환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904-286290 <한국장학재단> (장학생 명의로 입금)

제2조 (반환 의무) 본인은 제1조의 반환일에 분할약정금을 성실히 입금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3조 (불성실 반환자 지정) 본인은 90일 이상 분할반환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본 약정을 통해 승인된 분할반환약정이 중지되고 불성실 반환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확약합니다. 또한 불성실 반환자로 지정될 경우 향후 이와 관련된 일체의 법적 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약합니다.

제4조 (중도반환) 본인은 이 분할반환약정에 의한 반환기간 중 반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할 수 있으며, 전액 반환하는 경우 분할반환이 중단됨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제5조 (기타) 기타 본 약정서의 내용을 포함한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내 장학금 반환 관련 전반에 대한 내용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재단의 「공공재정환수 업무처리기준」 관련 일체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성 명: (서명)

서식6

독촉장

독 촉 장

성명		소속학교		학년	
최초선정연도		법정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반환금액	원				

독촉 사항	독촉장 발송사유			
	환수금액 (미수금)	()원		
	반환기한	우체국 소인일로부터 90일 이내		
	은행명		계좌번호	

상기의 내용과 같이 환수 금액을 기한 내 재단에 반환할 것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인)

통보자 확인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촉장을 받은 통보자는 기한 내 해당 금액을 재단에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후 상환의무 인지 단계인 최고장이 발송될 예정이며 최고장 발송 이후에도 반환대상자가 30일 이내 반환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 경우 강제징수 등 법적 절차가 착수됨을 알려드리오니 상환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상환이 어려운 경우 분할상환약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통해 법적 절차 진행이 유보되어 착수비용 부담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

서식7

최고장

최 고 장

성 명		소속학교		학년	
최초선정연도		법정생년월일		성별	
연 락 처		주 소			
반환금액	원				

최고 사항	최고장 발송사유				
	환수금액 (미수금)	()원			
	반환기한	우체국 소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은행명		계좌번호		

상기의 내용과 같이 환수 금액을 기한 내 재단에 반환할 것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인)

통보자 확인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고장을 받은 통보자는 기한 내 해당 금액을 재단에 상환해야 합니다. 최고장 발송 이후에도 반환대상자가 30일 이내 반환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 경우 강제징수 등 법적 절차가 착수됨을 알려드리오니 상환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일시상황이 어려운 경우 분할상환약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통해 법적 절차 진행이 유보되어 착수비용 부담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

서식8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성 명		소속학교	
최초 선정연도		법정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이의신청 사항	신청 구분	① 반환대상자 지정	<input type="checkbox"/>
		② 반환 유예 신청	<input type="checkbox"/>
		③ 반환 감면·면제 신청	<input type="checkbox"/>
		④ 기타 반환 관련	<input type="checkbox"/>
	신청 내용		

상기의 내용과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귀하